

2003년도 농림부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친환경 농산물 민간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Strategical Approach for the Improvement of Private Certification System  
for Agricultural Goods Produced by Environmentally Sound Farming

손 상 목

단국대학교 유기농업연구소

# 제 출 문

농림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03년도 농림부 정책과제  
“친환경 농산물 민간인증제도 활성화 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년 11월

단국대학교 유기농업연구소<sup>1)</sup> 손상목

---

1) 주소: 330-714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29, 단국대학교 유기농업연구소.  
연락처: 전화: (041) 550-3633, 팩스: (041) 568-3633, E-mail : [smsohn@dku.edu](mailto:smsohn@dku.edu)  
홈페이지: <http://www.rioa.or.kr>

빈 면

## 참여연구원

손 상 목

김 은 정

김 영 호

김 종 문

곽 혜 신

Dr.Martin Kuecke

Dr.Alexander Daniel

Shinji Hashimoto

단국대학교 유기농업연구소

## 요 약

○ 현행 인증체계는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향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즉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저농약, 무농약의 2종류로, 유기농산물의 인증은 유기재배, 전환기의 2종류로 하되 각각 별도의 법률에 의해 인증기준이 설정되고 별개의 로고로 지정 운영하는 것이 소비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음

->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유기농업육성법”이라는 별도의 근거 즉, 2개의 각기 다른 법률제정이 요구됨

-> 별도의 전혀 상이한 로고를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막아야 유기농산물(유기식품)의 생산/ 유통이 크게 신장할 것임

○ 또한 인증담당기관도 현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담당 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인증담당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즉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가공식품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농협조합장의 책임하에 인증토록 하고,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은 민간인증기관이 인증토록하며, 국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는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인증관련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친환경농업육성법과 별도로 유기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인증을 민간인증기관에 전부 이양하는 것이 적절함.

->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농림부 소관으로 업무분장을 되찾아 오는 것이 향후 일관성 있는 인증업무 구축을 위해 바람직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기농산물과 가공품의 인증과 관련된 관리 감독은 농림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민간인증기관에는 분석실과 관련한 시설기준이 필요 없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함. 다른 나라에는 민간인증기관에 분석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아웃소싱으로 처리함.

-> 분석이 필요한 농가 시료의 경우 분석업무는 아웃소싱으로 대학, 연구소 또는 전문분석기관에 의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잔류농약검사와 중금속 분석을 위한 토양검사, 수질검사 등의 비용은 인증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받도록 조치하고, 인증수수료는 인증위원 수당, 사무실 운영비, 사무원 급여, 조사관 출장비에 주로 충당하여야 조처하는 것이 적절함

○ 민간인증기관은 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작목반과 같은 그룹인증체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 인도 등에서는 내부조사제를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인증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내부조사자 제도를 통해 획일적인 매 농가에 대한 시료 채취 및 분석의 지양함으로써 인증수수료 비용 발생의 저감을 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세계 어느 나라에도 법률에 인증수수료 액수를 정해놓은 사례는 없음. 다만 이것이 정부정책으로 꼭 필요하다면 인증수수료의 상하한선을 제시하여 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물가변동,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인 인증단체간의 자유경쟁 보장, 인증 제품 구입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동시에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 인증수수료 허용범위인 최저 20만원 내지 최고 45만원내에서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유도함이 타당

->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더 신뢰성 있고 더 좋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인증단체가 성장하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 미국의 NOP규정, 독일의 인증수수료 규정 참조

->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민간인증기관이 그때 그때 최저의 인증수수료를 제시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

->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인증업무외에 향후 운송업자, 창고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등이 인증을 받게 될 경우 인증수수료 수입은 막대하게 커질 수 있으므로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인증수수료는 상하한선만 정해 놓고 민간인증기관이 상하한선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유기농가에도 유리하다고 판단됨

○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수수료는 최저 하한선과 최고 상한선을 정해 인상시킬 필요가 있음 (최저 20만원 내지 최고 상한선 45만원 -> 즉, 평균 33만원), 이와는 별도로 인증과 관련한 조사 및 출장비용으로 실비수준에서 10만원을 추가 부과토록 함으로서, 실제 비용발생원별로 인증신청농가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이 같은 조처를 통해 현재 후자에 허덕이는 민간인증기관의 심각한 재정적자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경제적 자립화를 이룩케 조처함으로서 민간인증기관 활성화의 기틀이 제공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의 전제조건으로는 1) 유럽, 미국, 캐나다와 같이 민간인증기관이 의무적으로 분석기기 및 설비를 갖추지 않도록 규정 개정, 2) 의심이 가는 분석비용은 해당 농가가 부담시키도록 조처, 3) 조사관이 인증기관의 상근고용직원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외부로부터 이해관계와 안면이 전혀 없는 조사관이 투입되도록 하는 조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는 인증농가가 추가 부담해야 되는 유기농산물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보조해 주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자체의 인증수수료 보조/지원에 대해 일부에서는 WTO에 위배됨으로 직접지원은 불가능하다든가 또는 직접지불제 외에 또 다른 이중지원이 된다고 하여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기우라고 판단됨.

-> 일례로 독일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직접 인증수수료를 인증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경우에 지자체는 직접지불지불제 외에 별도의 인증수수료 지원을 농가에게 주고 있는 것임.

-> 인증수수료 보조/지원은 인증건수별로 일정부분을 차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즉 종량제에 따른 인증수수료 차등부과가 적절

할 것임. 영세농업구조에서 농민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  
임.

○ 유기농산물의 경우 인증수수료는 유기농가 예상 출하액의 0.01%수준에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고, 유기가공품 등에 대한 인증수수료는 가공품 출하 판  
매액을 기준으로 0.1% 수준에서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음.

-> 가공품 인증수수료가 유럽과 미국 인증기관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즉 유기농민에게는 최소액을 부담시키고 있음

-> 인증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가공식품, 창고업자, 운  
송업자, 유통업자 등에 대한 새로운 인증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함.  
가공업자, 창고업자, 운송업자, 유통업자가 인증수수료를 매출액의

-> 0.1% 수준에서 부담할 경우 민간인증기관의 수입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을 것이므로 인증수수료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정부가 계속 인증업무를 지속해 나갈 경우 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  
를 크게 해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인증업무를 중단  
하고 인증기관(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농협, 유기농산물 인  
증을 담당하는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에 치중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됨.

-> 국가는 인증업무를 관리감독을 맡고 모든 인증업무는 민간단체가 실시  
하는 일본의 인증시스템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민간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해 농림부는 다음과 같은 년차별 단계별  
조치를 적절히 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1단계: 민간인증기관으로 현행의 인증업무를 전부 넘기는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 유기식품에 관련  
한 일체의 인증업무를 중단하고 민간인증기관에서 이를 담당하도록 함.



- >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업무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담당하도록 조치하고,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에서 담당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 할 것임.
- > 농관원의 인증업무 종료시점은 2006년 1월이 적당할 듯함. 농관원은 향후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관리, 감독에만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제도정비와 직원연수 등에 약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 역할의 재정립

년도별	추진단계	추진내용
2004년	○관련법 및 직제 개편안	○직제개편 방향 마련
2005년	○직원 자질향상	○담당직원 연수(국내 대학원 및 해외 감독관청, 독일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
2006년	○직제개편 ○인증업무 중단 ○관리감독 업무 개시	○인증기관 관리감독 체제 구축

◇ 2단계: 현행의 생산자단체 위주로 지정되어 있는 1차 민간인증기관을 제3차 민간인증기관화로 이행하는 단계. 이 과정은 물리적인 강압이나 제도적 장치에 의한 강제조치가 아니라 인증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의해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선택되어 자연적으로 이행되도록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할 듯.

- > 선진유럽에서는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인증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제1차 인증시대가 끝나고 제3차 인증시대로 넘어갔음에 유의하고, 농림부는 제3차 민간인증회사(단체, 기관, 연구소)가 탄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복수의 제3차 민간인증회사가 출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3단계: 제3차 민간인증회사(단체, 기관, 연구소)가 국제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제인증기관의 조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고급 기술자의 훈련에 농림부가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유기식품 국제품질인증기관 지정 획득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인증위원과 조사관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를 인증위원으로 선임하고, 유기농업기사 및 유기농업산업기사를 조사관으로 위촉하며, 인증위원과 조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함.

민간인증기관화 추진프로그램

년도별	추진단계	추진내용
2004년	○관련법 및 규정 개정안 (인센티브 제공 등)	○설립유도 홍보
2005년	○제3자 인증기관 설립 유도  ○인증수수료 현실화 조치	○인센티브 제공 ○조사관 자격 획득 교육프로그램의 정례 실시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의 참여 유도 ○농관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도록
2006년	제3자 인증기관 인증농산물 홍보	○포장지, 홈페이지, 전단지, 잡지, 방송 및 TV

○ 인증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경력 규정(학위, 경험, 전문분야 지정 등)을 충족하고, 인증 관련 국내법규와 국제규정(IFOAM기본규약, EU규정 및 Codex유기식품규격, NOP기준, JAS기준)의 세부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함. 이는 서류검사, 인터뷰 등으로 인증을 주고 있는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인증위원의 철저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를 소비자가 신뢰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일반관행농업을 전공하거나 연구하는데 종사한 학위소지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인증단체의 인증위원 선정과는 많은 대조를 보이고 있음. 향후 민간인증기관 인증위원의 선임시 고려할 최소학력 및 경력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 농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3년이상 경력자 또는 7편 이상의 유기농업 관련 논문을 발표 한 자
- > 농학계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운송, 저장, 유통, 교역, 연구, 교육, 홍보, 행정 분야에서의

최소한 10년 이상 경력자

- > 농과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 품질인증 업무 종사경력에 최소 13년 이상 종사한 자
- > 농과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 유기농업 생산, 유통, 가공, 지도, 소비 관련 업무 등에 최소 15년 이상 종사한 자

○ 조사관과 인증기관과의 독립적 관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인증기관에 조사관이 고용되지 않고 수시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고 인증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 이를 통해 조사관의 민간인증기관 고용에 따른 고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음
- > 엄격한 조사업무를 통해 신뢰받는 인증조사가 가능
- > 제3자 인증기관화에도 도움이 되는 진일보된 제도 개정이 될 것임

○ 국내 각 대학에 인증조사관 양성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거나 국가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인증조사관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 유기농업분야의 종사경력 3년 이상자로 농과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유기농업반을 수료한자에게 인증조사관 자격 부여하거나,
- > 농과계열 대학의 유기농업분야 전공자(부전공자 및 연계전공자 포함),
- >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자  
(2005부터 국가자격시험 실시 예정)
- > 농과대학 졸업자로 품질인증 관련 국내법규와 국제규정(IFOAM기본 규약, EU규정 및 Codex유기식품규격, NOP기준, JAS기준)의 세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 및 실기시험에 통과한자
- > 유기농업분야의 종사경력 3년 이상자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유기농업반 수료자

○ 현행의 민간인증기관은 제1자 인증기관으로 향후 제3자(The Third Party) 민간인증기관화 되어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하며, 우리나라 민간인증기관도 이제는 IFOAM의 인가를 획득하는 국제인증기관으로 발돋움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는 국제인증기관 신청에 적극 협력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일부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적극 인증기관으로 활동하도록 조처함이 적절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으나, 이는 민간인증시스템으로 이행하려는 정부의 기본 취지와 세계적 인증 동향인 제3자 민간인증체계에 어긋남으로 크게 잘못된 정책제시라고 판단됨.

○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업무 인가는 법개정을 통해 5년 단위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 할 듯

○ 인증대상 농산물을 소포장 할 경우에도 인증이 가능한 체제로 개선되어야 신청농민(또는 가공업자, 유통업자 등)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함

-> 유기가공업체도 인증을 획득하여야 향후에는 유기가공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처되어야 함

-> 운송업자, 창고업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등도 인증을 획득하도록 조처되어야 함

○ 정부는 인증업무를 중단하는 대신에 향후에는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에 대한 기술개발, 홍보 등에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직접지불제는 인증농가에 한해 지불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환경보전 기능을 수행하는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직불의 정당성이 회복됨. 즉 환경보전 기능을 수행하는 농가에 한해서 그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임.

-> 현행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에 지불하는 직접지불제는 모든 대상농가에 무차별적으로 조건없이 지불하는 현행규정은 직불의 근거와 정당성을

제공하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함

-> 환경보전기능을 검증하는 조치가 선행되어 토양보전기능을 확인하는 토양분석이 파종전과 수확후에 신청대상농가에 한해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현행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분야에 앞장서 참여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생산지원사업, 2차 가공식품 산업활동, 3차 유통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전개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함.

○ 인증을 신청하는 농가가 영농자료가 없거나 불성실 기록자일 경우 다음해에 인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는 “생산이력제”인 트레이스어빌리티 제도의 발전적 도입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선행 실시되어야 함.

○ 국가자격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에게는 관련 공무원(국가직 및 지방직)의 임용시에 가산점 부여가 실시되어 우수한 인력이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관련 분야에 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유기농업 관련 국가공무원 신규임용시 가산점 부여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지자체 친환경 유기농업 담당)

->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의 유기농업 업무담당

○ 유기농산물 인증은 민간인증단체에 넘기고, 지방자치단체(광역단체장 또는 기초단체장)는 친환경농산물 즉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우수농산물의 인증에 전념케 하는 인증시스템을 재정립하는 조치가 시대적으로 요청된다고 판단됨

-> 현행 일부 광역단체(경기도)는 이미 실시하고 있음. 전국의 지자체가

모두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수수료는 자자체가 무료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함.

# 차 례

I. 민간인증제도 활성화 목적 .....	21
II. 연구배경,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22
1. 연구배경 .....	22
2. 기대효과 .....	23
3. 활용방안 .....	23
III. 연구방법 및 내용 .....	25
1. 연구방법 .....	25
2. 연구내용 .....	25
1) 현황파악, 문제점 도출 및 대책수립을 위한 앙케이트 조사 .....	25
2) 민간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한 자료분석과 제안 .....	26
IV. 연구결과 .....	27
1. 인증의 개념, 목적, 종류 및 효과 .....	27
1) 인증의 개념 .....	27
2) 인증제도의 목적 .....	27
3) 인증제도의 종류 .....	27
4) 인증의 효과 .....	28
2.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추진경과 .....	29
3. 앙케이트조사 결과의 분석 .....	32
1) 현행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도 .....	32
2) 인증기관의 시설 및 인증업무 능력에 대한 의견 .....	33
3) 현행 민간인증제도에 대한 인증농가와 소비자의 만족도 및 문제점 파악 .....	34
4) 현행 민간인증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 .....	37
5) 민간인증기관의 숫자 .....	38
6) 적정 인증수수료 .....	39
7) 민간인증기관의 제3자 인증기관화에 대한 욕구 .....	42
8) 민간인증기관의 국제인증기관화에 대한 욕구 .....	43
9) 인증위원과 조사관의 재교육 .....	44

4. 국내인증제도와 외국인증제도의 분석 및 경쟁원리와	
국제화에 부응한 인증체계 제시 .....	47
1)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	47
(1) 인증방법 .....	47
(2) 인증신청 .....	47
(3) 인증기준 .....	48
(4) 농림산물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 .....	50
(5) 축산물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 .....	52
(6) 인증심사결과, 판정, 통보 및 재심사 신청 .....	53
(7)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	54
(8) 시판품 조사 .....	54
(9) 사후관리 .....	55
2) 국가인증기관과 민간인증기관 .....	56
5. 외국의 인증시스템 .....	57
1) 유럽 인증제도와와의 비교 .....	57
2) 미국의 인증제도와와의 비교 .....	67
3) 중국의 인증제도 .....	73
4) 일본의 인증제도 .....	85
5) 우리나라와 외국 인증시스템과의 비교 .....	111
6. 민간인증기관과 국가의 인증관련 업무의 역할과 한계 .....	116
7. 민간인증기관의 효율적인 육성방안 탐색 .....	118
8. 인증수수료 절감과 인증절차 간소화를 위한 “내부조사제 (Internal Inspection)”의 활용 .....	122
9. 국가의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의 범위 및 방법 .....	124
10. 인증조사관의 자질향상 및 인증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 .....	129
11. 민간인증기관의 국제인증기관화 육성방안 .....	132



12. 친환경가공식품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과 효율적 관리 방안 탐색 .....	145
1) 현황 및 문제점 .....	145
2)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	150
3) 친환경가공식품과 유기가공식품의 분리 인증체계 .....	155
13. 인증수수료 현실화 .....	157
1) 자국에서 생산되는 유기식품 .....	157
2) 외국에서 생산되는 유기식품 또는 수출용 유기농산물 .....	159
3) 지자체의 인증수수료 보조(자국생산 유기식품의 경우) .....	160
4) 추정 인증수수료 원가 및 현실화 방안 .....	161
(1) 민간인증기관이 제출한 추정 인증수수료 .....	161
(2) 인증수수료 현실화와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 .....	163
(3) 적정 인증수수료 인상액 .....	167
14.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인증업무 분리 .....	183
15. 인증의 범위확대 .....	184
16. 트레이서빌리티 도입에 의한 인증개선책 .....	185
1) 개념 및 유통네트워크 .....	185
2) 향후과제와 발전방안 .....	186
V. 참고문헌 .....	188
참고자료 1. Codex 유기식품규격의 부속서 .....	191
참고자료 2.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유통에 관한 Codex 가이드라인 .....	195
참고자료 3.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과정의 주요 관리사항 .....	204
참고자료 4.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종류 및 사용자재 .....	207
참고자료 5. 녹색식품 표준 (GFDC) .....	209
참고자료 6. 중국 녹색 식품 협회 장정 .....	218

참고자료 7. 중국 유기식품 표준 (OFDC) ..... 222  
참고자료 8.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 225

# 표 목 차

1. 한국인증제도와 유럽연합(EU)인증제도의 비교 .....	59
2. 중국유기식품, 녹색식품, 무공해농산물의 인증구조 .....	84
3. 일본에 있어서 유기생산자 인증조사의 항목 .....	98
4. 제조업자의 기술적 수준(JAS 시행규칙 제34조, JAS법 제15조) .....	99
5. 일본에 있어서 소포장 유통업자 인증조사의 항목 .....	99
6. 일본에 있어서 수입업자 인증조사의 항목 .....	100
7. 일본 인증제도의 개괄적 요약 .....	105
8. 품질인증 관리감독 국가기관과 품질인증 담당 민간단체의 역할 .....	126
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역할의 재정립 .....	143
10. 제3자 민간인증기관화 추진프로그램 .....	143
11. 국제인증기관화 추진프로그램 .....	144
12.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품에 대한 관리기준 비교 .....	146
13.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비교 .....	148
14. 유기가공식품의 국내수입현황 .....	150
15. 농산물 및 식품관리체계 .....	152
16. 스위스 인증수수료의 부과기준 .....	160
17. 인증수수료 원가계산서 .....	179

# 그림 목 차

1. 중국 친환경농업의 구분 .....	76
2. 중국정부의 인증관련업무 체계도 .....	76
3. 중국의 유기식품,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의 인증획득 체계도 .....	78
4. 일본 유기농산물, 유기식품 인증체계의 흐름도 .....	92
5. 일본 친환경농업의 구분 .....	93
6. 일본의 유기농산물 및 유기제품인증에 있어서의 신청, 조사, 판정 및 획득과정 .....	94
7. 일본에 있어서의 JAS 유기인증의 종류 .....	94
8.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와 관리감독업무의 분리(안) .....	125
9. 민간인증기관의 국제인증기관화 과정도 .....	132
10. IFOAM의 인증계획에 따라 인가된 국제인증기관의 수 .....	133
11. Bio-Inspecta의 외국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인증의 사례 .....	141

## I. 민간인증제도 활성화 목적

- 친환경농업육성법에는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증업무에 민간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임
- 인증업무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토양관리부터 재배 출하단계까지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영농지도까지 해야 하므로 민간기관에 의한 인증이 효율적임
- 2003년 9월 1일 현재 5개 민간인증기관이 지정되었으나 그 인증활동이 미미한 실정에 있으며, 일부 민간인증기관은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이를 위해 인증업무의 민간참여 확대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 방안 제시
- 정부가 인증업무를 중지하고 민간에 전체 이양할 경우,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국가의 품질인증업무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 범위와 구체적 관리감독 방법 제시
- 국내 생산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해외 수출을 도모하고 해외유기식품의 국내유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간인증기관”을 제3자 민간품질인증기관화 하고 더 나아가 “국제인증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로드맵 (Road map)과 구체적 방안 제시
- 인증제도의 확실한 발전방향 제시 및 정책적 수요 요구에 부합하는 대안 자료 제시
- 인증기관은 향후 국가기관의 강력한 지도/감독을 받아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인증수수료의 현실화, 제3자 인증기관화, 조사관의 자질향상(정예화), 인증위원의 자격 및 전문성 확보, 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 국제인증기관화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필요함

## II. 연구배경,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배경

○ 민간인증시대를 앞두고 지정을 받고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민간인증기관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조처할 것인가가 커다란 과제임

○ 현재의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는 ①제1차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업무의 적절성 미흡, ②투명한 인증업무 실시 미흡, ③철저한 농가조사 및 자료분석에 미진, ④너무 낮은 인증수수료의 수준, ⑤전문식견을 갖춘 인증위원의 확보가 어려움, ⑥불투명성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성의 미확보, 등이 현재의 심각한 쟁점이 되고 있음

○ 또한 향후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인증업무 전체를 현재와 같이 지정받은 민간인증기관에 모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분리시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시급한 실정임.

○ 한편 미국, 독일, 스위스, 영국 등에는 민간인증기관이 국내 인증기관으로 활동 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민간인증기관이 국제인증기관으로 IFOAM으로부터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음.

○ 이들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들은 전 세계로의 수출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임. 또한 유기농업 선진국들에서는 자국의 유기식품 수출과 세계시장 지배를 위해 국제인증기관의 설립을 막후에서 지원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유기식품의 해외수출 모색을 위해서는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이 필수적임. 그러나 외국의 국제인증기관의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거액의 인증수수료가 농민에게 부담이 돌아 갈 뿐만 아니라 영어로 모든 inspection 조사업무가 진행됨으로 어려움이 예상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민간품질인증기관이 하루속히 국제품질인증기관화 되어야 함

○ 또한 일반소비자들이 국제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입유기식품에 대해 더 신뢰를 보낼 수 있음으로 외국산 수입유기식품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민간인증기관이 국제인증기관으로 발돋움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2. 기대효과

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인증업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서 인증제도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 민간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인증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기능 제고
- 인증기관과 인증업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
- “내부조사제(Internal Inspection)”에 의한 인증수수료 절감과 인증 절차 간소화에 기여
- 한국토착유기농업의 과학화 및 국제화에 기여
- 한국토착유기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수행능력 회복에 기여

## 3. 활용방안

- 인증업무에 종사할 조사관(Inspector)교육체계의 제시
- 현재의 민간인증기관을 Codex유기식품규격에 적합한 “제3자 인증기관”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
- 민간인증기관을 “국제인증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증위원 양성을 위

## 해 위탁교육 및 보수교육의 방안 제시

- 국내 생산 유기농산물의 수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국제인증기관”으로 IFOAM의 인정획득 방안의 제시
- 능력이 있는 민간인증기관을 조기에 육성하고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인증업무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과 국내인증농가 여건에 맞는 인증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마련함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 방안 및 육성책의 제시
-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향후 유기농산물(유기식품) 인증 관리 감독업무에 대한 대안 제시



### III. 연구방법 및 내용

#### 1. 연구방법

- 현장기관 방문(외국의 국제인증기관, 유기농산물/유기식품 인증 전공교수) 인터뷰 및 수집자료 음미
- 현황파악과 대안제시를 위한 국내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앙케이트 방문조사
- 수집 외국자료의 음미, 분석 및 번역 작업
- 인터넷 통신수단(E-mail, Messenger, ICQ 등)을 이용하여 추가 정보 확인
- 적정수수료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
- 중간보고 및 전문가초청토론회를 통해 현실적 정책연구가 되도록 노력

#### 2. 연구내용

##### 1) 현황파악, 문제점 도출 및 대책수립을 위한 앙케이트 조사

- 앙케이트의 주요 설문내용:
  - > 현행 민간인증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며 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항을 인증 획득 유기농가와 유기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 > 인증단체의 시설 및 인증 실적 등에 관한 사항, 현행인증제도의 문제점 파악, 인증제도 개선대안의 파악, 적정 인증수수료, 제3자 품질인증기관화 욕구, 국제품질인증기관화 욕구, 품질인증위원의 재교육, 조사관의 양성 및 재교육, 현행인증제도에 대한 생산자의 만족도, 현행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인증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구체적 대안 등이

구체적 설문항목이었음

- 대상자: 인증기관 종사자, 소비자단체 친환경농산물 담당자, 학계 연구자  
생산농민
- 조사방법: 현지방문조사 및 전화면담을 병행

## 2) 민간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한 자료 분석과 제안

- 국내외 논문과 자료를 토대로 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미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은 분야와 측면에서 각각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  
로 몇가지 제안을 결론부문에서 제시하였다.
  - > 외국 인증제도와 인증시스템의 분석
  - > 민간인증기관의 육성방안
  - > 국제인증기관의 지정 획득
  - > 민간인증기관과 국가와의 인증관련 업무의 역할 분담
  - > 조사관의 자질향상과 인증위원의 전문성 확보
  - > 유기농식품 인증
  - > 인증수수료 현실화
  - > 내부조사제의 활용

## IV. 연구결과

### 1. 인증의 개념, 목적, 종류 및 효과

#### 1) 인증의 개념

○ 인증(Certification)이란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The 3rd party)이 제품<sup>2)</sup>의 품질 또는 시스템의 품질보증 능력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규정된 표준<sup>3)</sup>(또는 기준)과의 적합성 또는 그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

#### 2) 인증제도의 목적

○ 인증제도의 목적은 1)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제고하여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농산물 생산·공급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2)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종류별로 인증을 통한 안전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에 있음

#### 3) 인증제도의 종류

##### ○ 일반농산물

-> 농산물품질관리법

->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 품질인증(品) 마크: 맛있고, 보기 좋고, 안전하고, 규격을 지킨 명품

##### ○ 친환경농산물

---

2) “제품”이라 함은 생산과정과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표준”이라 함은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이나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단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성능·능력·동작·절차·방법·수속·책임·의무·사고방법 등에 대하여 정한 결정을 말함

3) “표준화”란 이러한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를 말한다. 농산물의 표준화는 농산물의 모양, 크기, 품질, 생산방법 등 광범위한 부분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및 거래의 공정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활용하는 하나의 수단

- > 친환경농업육성법
- > 유기(전환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등 친환경 마크: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

○ 전통식품

-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 > 고추장, 한과, 김치 등 전통식품임을 증명: 물레방아 마크

○ 특산물(유기가공품)

-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 >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가공품임을 증명, 품질인증(品)마크

4) 인증의 효과

○ 생산자 측면

- > 자기 제품을 타 제품과 뚜렷이 구분되게 함으로써 광고효과를 증진
- > 시장에서의 선택의 폭을 넓혀 수요를 확대
- >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으로 판매비용, 유통비용 절감, 안정판매 등
- ⇒ 소득증대 효과

○ 유통업자 측면

- > 인증품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어 통명거래 가능
- > 품질관리 용이, 유통비용 절감, 소비자 신뢰 제공
- ⇒ 영업이익 향상

○ 소비자 측면

- > 상품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 직접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항목에 대한 신뢰
- ⇒ 믿고 구매할 수 있음

## 2. 우리나라 인증제도의 추진경과

○ UR타결이후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및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하였는데, 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92. 7. 1부터 특산물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한 것이며, 이후 유기·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였음

○ 그러나 품질인증제는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라 인증을 원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등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었음.

○ 이에 1997년 3월 7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기농산물의 표시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 법률에 의한 유기농산물표시제는 농림부령으로 유기농산물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생산한 자는 당해 농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 유기농산물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 유기농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동 법률로 규정한 유기농산물표시제에서 사용한 유기농산물의 정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품질인증제에서 사용한 유기재배농산물이나, 또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기농산물의 정의 즉 협의의 개념과 차이가 있었음.

○ 또한 동 법률에 의한 표시제는 임의표시제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며, 기준에 알맞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표시할 수 있으므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음.

○ 이는 유기농산물이 생산과정에서부터 거래되는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까지 농장에서 인증받은 처음의 유기농산물 품질에 대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국제적인 기준과도 적합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었음.

○ 그리고 소비자 단체 등에서도 유기농산물에 대한 보다 명확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며,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시하고자 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중 유기농산물 표시제를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옮겨 규정하기로 하였으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으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의 유기농산물 표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였음.

○ 친환경농업육성법은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42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199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산물을 유기농산물 등 5종으로 분류하고, 이 중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을 생산하여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게 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는 친환경농산물의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기준을 위반한 농산물 등에 대해서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도 하지 못하게 하였음.

- 유기·무농약재배 농산물 품질인증제 도입('93. 12)
- 저농약재배농산물 품질인증제 도입('96. 3)
- 유기농산물의 표시제도 도입('97. 3)
-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제 실시('98. 11)
- 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 도입('98. 12)
  - 환경농업육성법 제정 (법률 제5442호 '97. 12. 13)
- 특산물 품질인증제 실시('92. 7)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2001. 1. 26)
  -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 의무화 및 신고제 폐지

○ 한편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은 그 가공품에 대하여도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

○ 유기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인증은 처음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의 일환으로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을 1998년 11월 6일 고시하여 운용하였으나, 1999년 1월 21일 동 법률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유기농산물가공품 품질인증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음.

○ 이로써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은 원료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품까지 일관된 과정을 거쳐 인증제, 표시관리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음.

○ 그러나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친환경농업”이 환경친화적 농업이라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와 품질인증제의 이원화로 생산자에게는 불편을 가져오고,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

도 없지 않았으며, 유통·가공·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며, 유기농산물 기준이 Codex 등 국제기준보다 다소 완화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문제가 발생 소지도 없지 않았음.

○ 이에 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개정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주요 내용은 표시신고제와 품질인증제를 통합하여 인증제도를 강제하였음. 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는 생산조건 구분 없이 일반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만을 실시하도록 하며, 유기·무농약·저농약 등 친환경농산물은 기준의 표시신고제를 폐지하고, 반드시 인증을 받아 표시하도록 하는 강제인증제를 도입하였음.

○ 다만, 기존 품질인증농가의 품질인증표시와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농가의 친환경농산물표시 2년간 유예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였음. 또한, 수입업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규정을 도입하였음.

### 3. 앙케이트 조사 결과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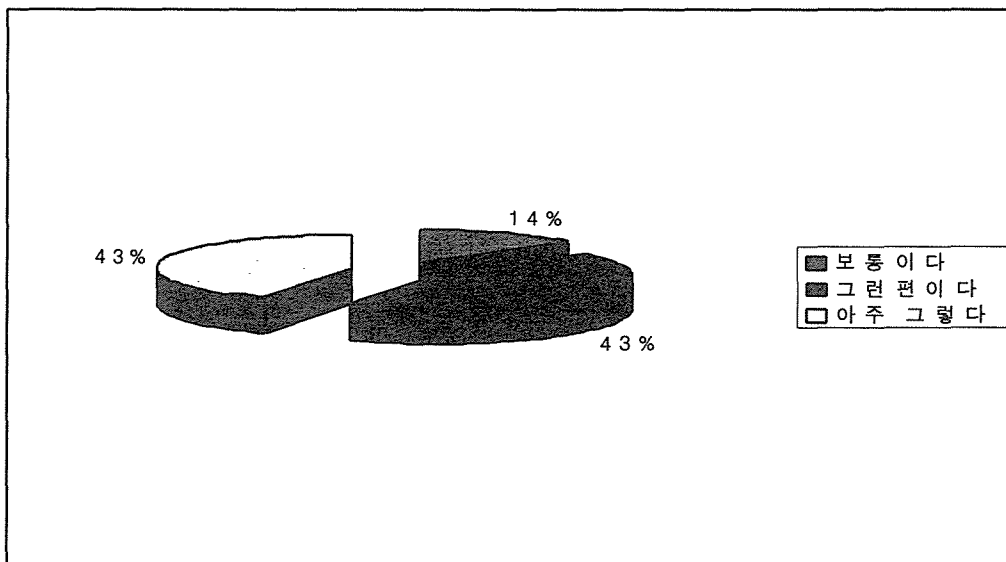
○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인증받은 인증농가 100농가와 유기농산물을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행 인증기관의 문제점, 개선 대안 및 향후 활성화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바 그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1) 현행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도

○ 현행 민간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대부분인 86%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향후 민간인증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와 신뢰받는 인증을 실시하고 그 인증수수료가 적정하다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및 유기농산물 생산농가가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업무를 신청할 환경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설문1. 귀하는 친환경농산물과 민간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증농가)





## 2) 인증기관의 시설 및 인증업무 능력에 대한 의견

○ 한편 민간인증기관이 충분한 인력과 분석시설 등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현행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능력과 그 실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기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7%로 나타나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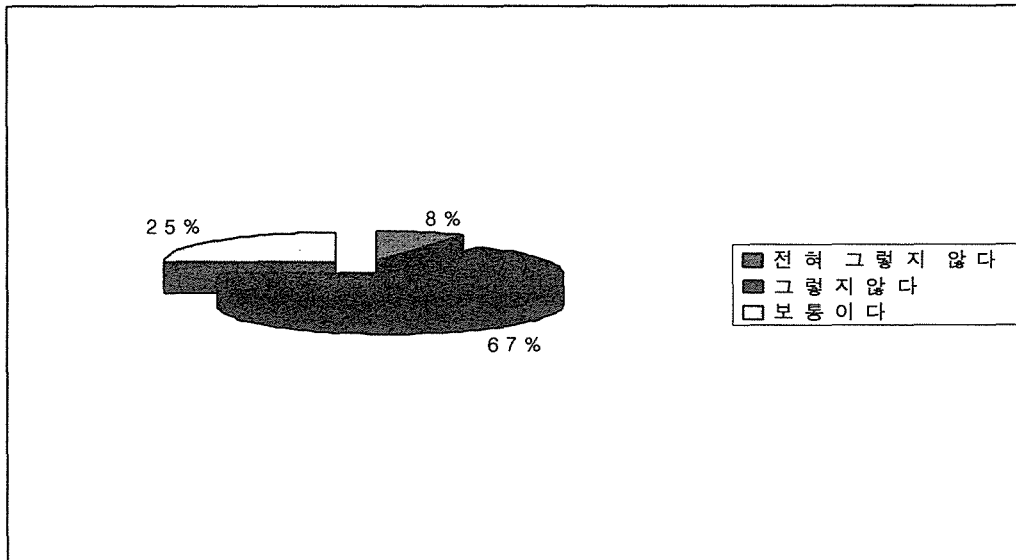
○ 소비자들이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업무에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신뢰성이 크게 낮다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짐.

○ 민간인증기관이 열악한 시설과 장비, 인력, 예산 규모에서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신도 크겠지만, 그보다는 이제까지의 국가인증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새로이 시작된 민간인증에 대한 신임이 기본적으로 아직은 그리 크게 성숙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자단체가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스스로 인증을 하는 현행 인증시스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음.

○ 이점에서는 유럽과 미국에서와 같이 생산자단체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인증기관의 출현이 앞당겨져 엄격한 인증업무시스템 실시를 통해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얻어 내는 것이 요구된다고 보여짐.

설문2. 민간인증기관이 충분한 인력과 분석시설 등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인증업무 능력과 실적 또한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증농산물 구매 소비자)



### 3) 현행 민간인증제도에 대한 인증농가와 소비자의 만족도와 문제점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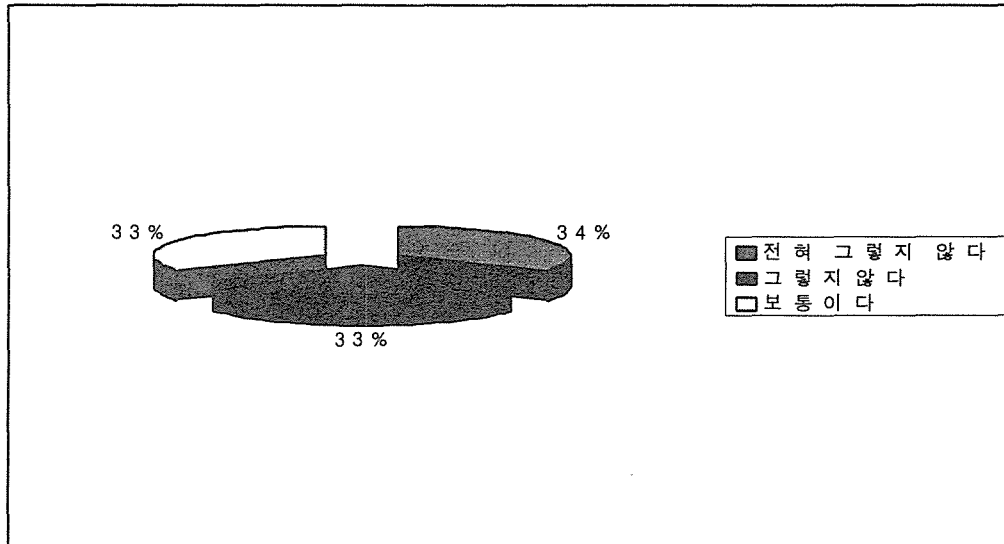
○ 현행 민간인증제도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유기농산물 인증농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4%,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3%로 약 67%에 달하는 다수의 인증농가가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3 참조). 따라서 현행 민간인증제도와 시스템은 크게 개선되어야 하고, 인증업무의 수요자인 인증농가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음.

○ 한편 소비자는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8%로 나타나, 만족스럽다는 응답 51%, 아주 만족스럽다는 응답 8% 등 현행 민간인증제도에 대해 대체로 59%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그림4). 따라서 인증제도의 개선은 인증업무의 수요자인 농민들이 크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 업무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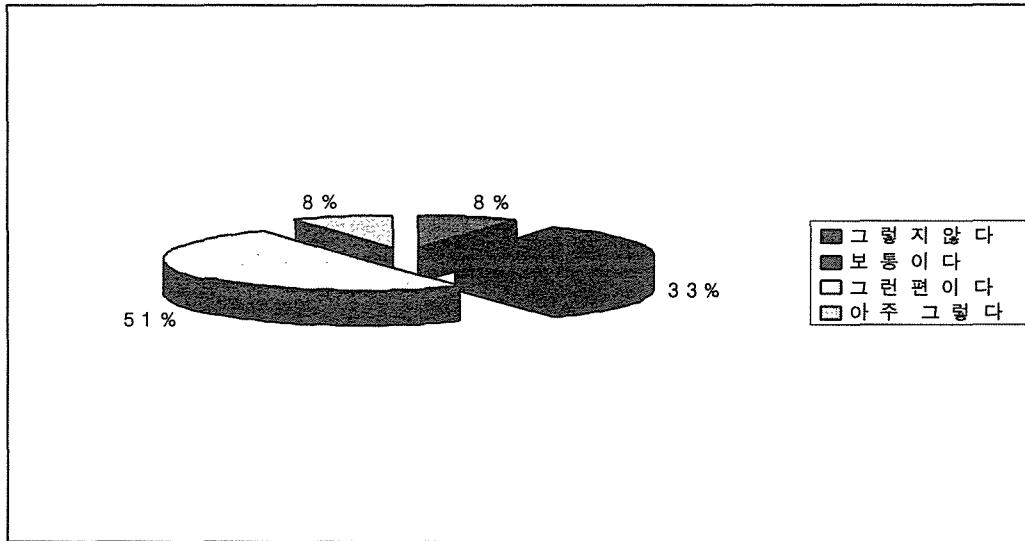
○ 한편 현행의 인증기준과 인증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림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증의 실수요자인 인증농가는 아주 그렇다는 응답이 14%, 그런 편이다 라는 응답이 43%로 부정적인 답변이 약 57%를 차지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응답은 14%에 불과해 다수의 인증농가가 인증기준과 엄격성, 복잡성과 까다로운 절차에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실수요자인 인증농가가 인증업무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요인이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었음(그림3 및 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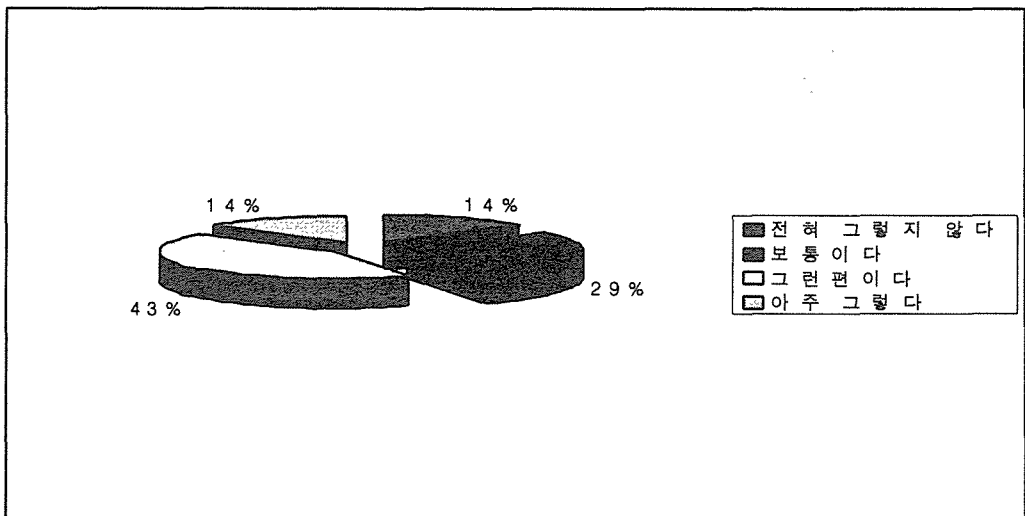
설문3. 현행 민간 인증제도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인증농가)



설문4. 현행의 민간 인증제도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귀하는 현행 민간인증시스템은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인증농산물 구매 소비자)



설문5. 인증기준 및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증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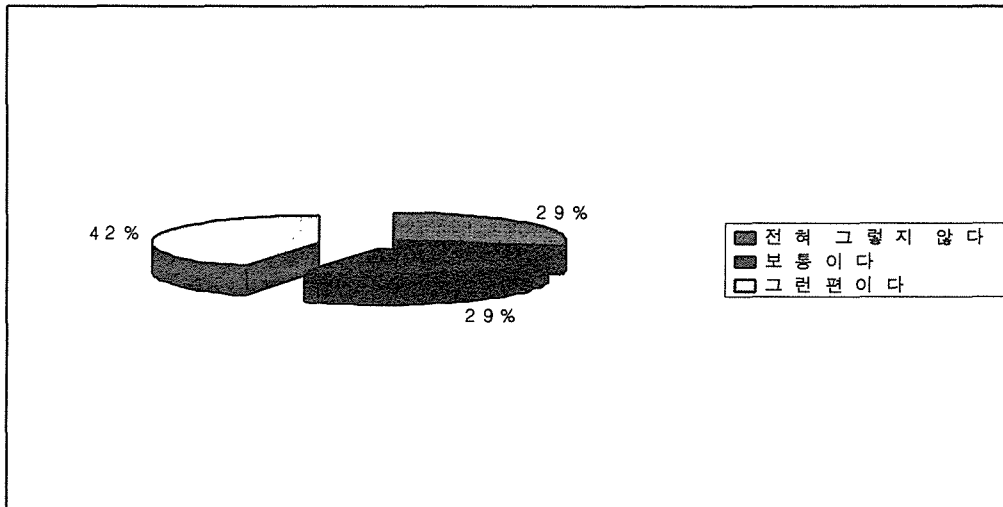


4) 현행 민간인증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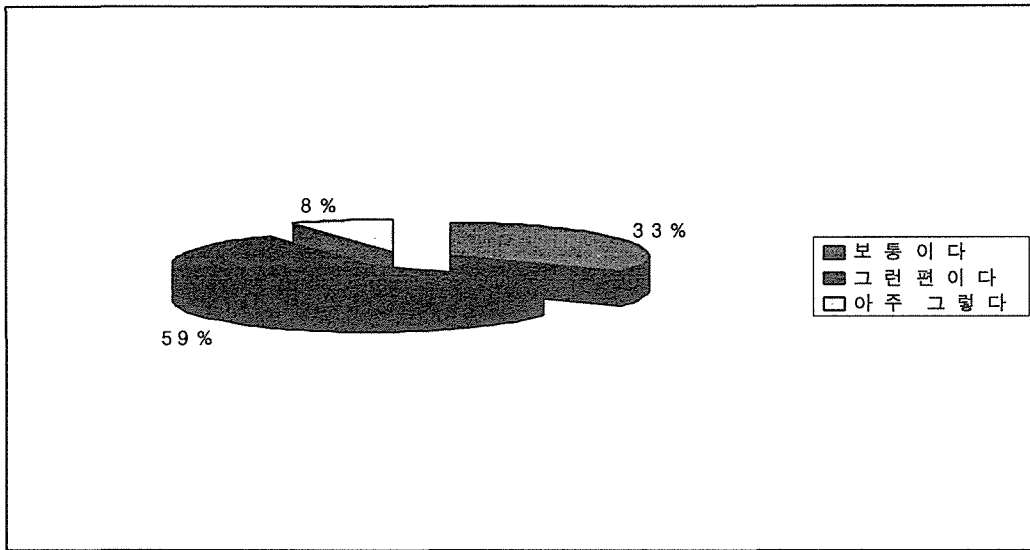
○ 현행 민간인증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개선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증 실수요자인 인증농가는 그렇다는 응답이 42%,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9%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음(그림6).

○ 이에 반해 유기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그렇다는 응답이 59%, 아주 그렇다는 응답이 8%로 앙케이트 응답자의 대다수인 67%가 인증기관이 향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그림7).

설문6. 현행 민간인증제도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향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증농가)



설문7. 현행 민간인증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증농산물 구매 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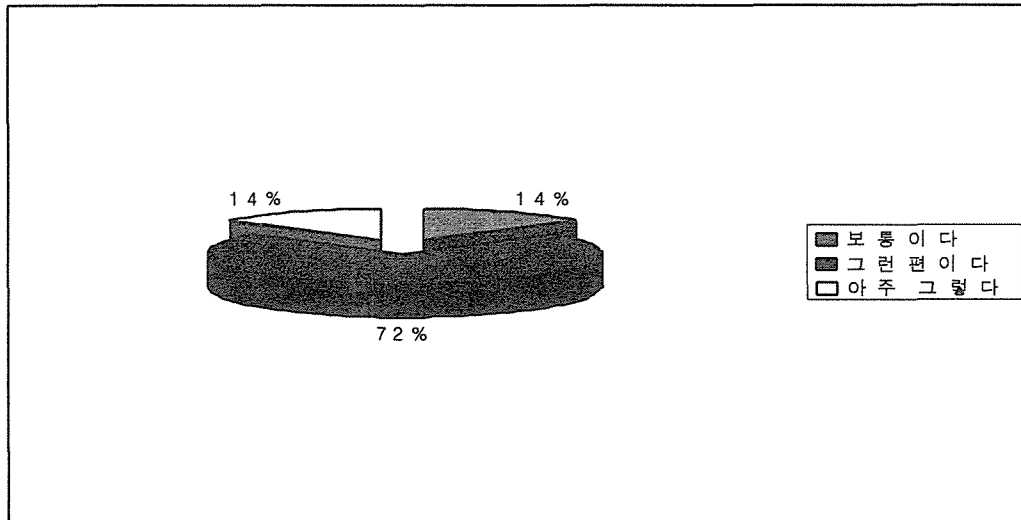
#### 5) 민간 인증기관의 숫자

○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현재 인증기관의 숫자 5개 기관이 인증업무를 맡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증농가는 아주 그렇다는 응답이 72%, 그렇다는 응답이 14%로 나타나 아직까지 더 많은 인증기관이 활동하여야겠다는 응답이 86%에 달하였음 (그림8).

○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인증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가되어 인증업무를 수행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인증농가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설문8.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 및 단체의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증농가)



#### 6) 적정 인증수수료

○ 현행 인증수수료 30,000원이 적정한 수수료라고 생각하는나는 질문에 인증농가는 4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28%(전혀 그렇지 않다 14%, 그렇지 않다 14%)로 인증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많은 인증농가가 아직도 상당히 인식함을 나타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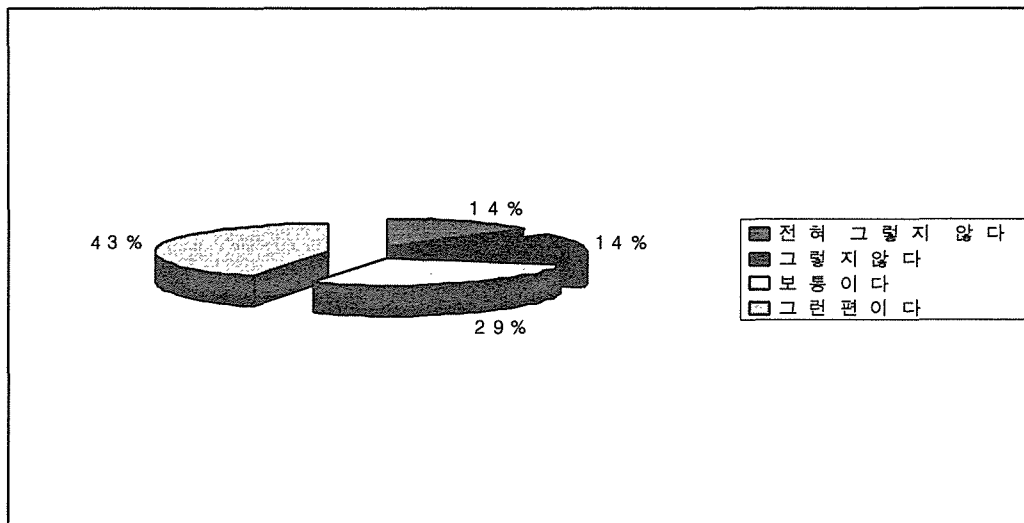
○ 이에 반해 소비자는 30,000원의 인증수수료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 응답이 67% (전혀 그렇지 않다 17%, 그렇지 않다 50%)에 달해 인증농가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현행 인증수수료가 적정하다고 보는 소비자는 8%에 불과하였다는 것도 인증농가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인증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농가가 부담을 더 많이 하지 않으려는 것은 인증수수료를 지불하는 입장에서 당연한 입장이라고 여겨지며, 인증수수료가 너무 낮다는 소비자의 반응이 보다 공정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생산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서라면 더 비싼 인증수수료를 기꺼이 납부할 용의가 있는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증농가의 43%(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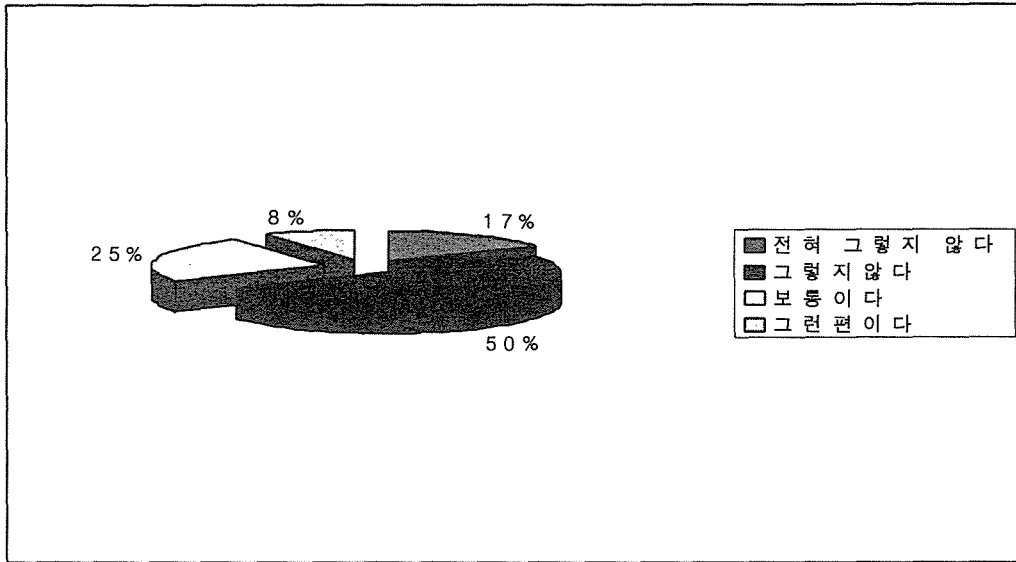
그렇다 14%, 그런 편이다 2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이에 반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28%에 불과하였다 (그림11). 즉 인증농가는 30,000원 이상의 인증수수료 인상에는 대단히 인색한 반면 현행과 같은 인증업무보다 신뢰성을 확보해주는 인증업무라면(즉, 인증기관의 활성화와 체질개선, 제3자화 등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 주는 인증업무를 펼쳐나갈 경우라면) 인증농가도 인증수수료 인상에 대해 기꺼이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음.

설문9.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을 위한 건당 30,000원의 인증수수료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증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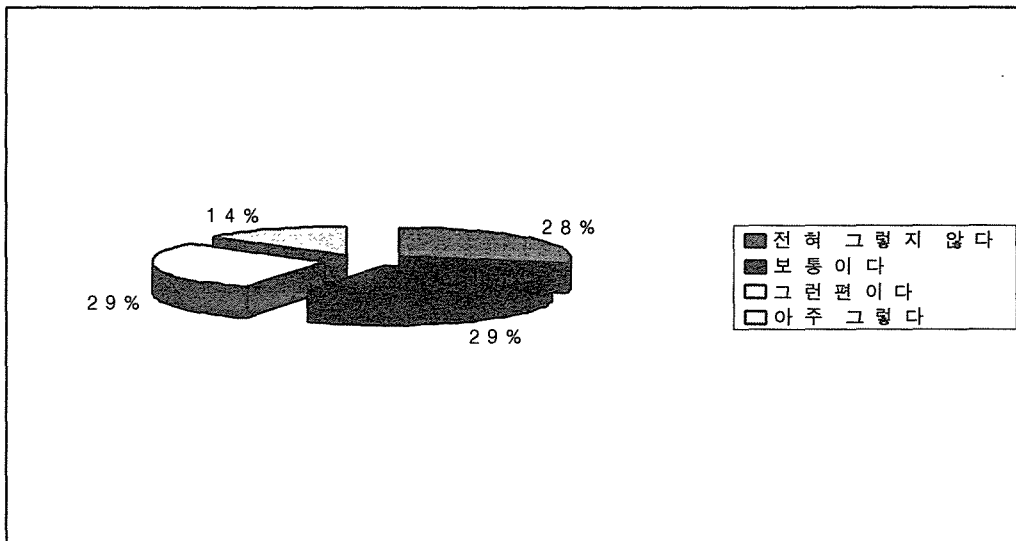




설문10.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을 위한 건당 30,000원의 인증수수료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증농산물 구매 소비자)



설문11. 생산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서라면 더 비싼 인증수수료를 기꺼이 납부하시겠습니까? (인증농가)



7) 민간인증기관의 제3자 인증기관화에 대한 욕구

○ 현행과 같은 제1자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업무보다 엄격하고 차별화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행의 제1자 인증기관이 향후 제3자 인증기관화 되는 것이 인증기관의 활성화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증 실수요자인 인증농가의 72%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28%(전혀 그렇지 않다 14%, 그렇지 않다 14%)에 불과하였음.

○ 한편 소비자의 66%(아주 그렇다 25%, 그런 편이다 41%)는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하였음.

○ 따라서 인증농가와 소비자 모두 인증품목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3자 인증기관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설문12. 보다 엄격하고 차별화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행의 제1자 인증기관이 향후 제3자 인증기관화 되는 것이 인증기관의 활성화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증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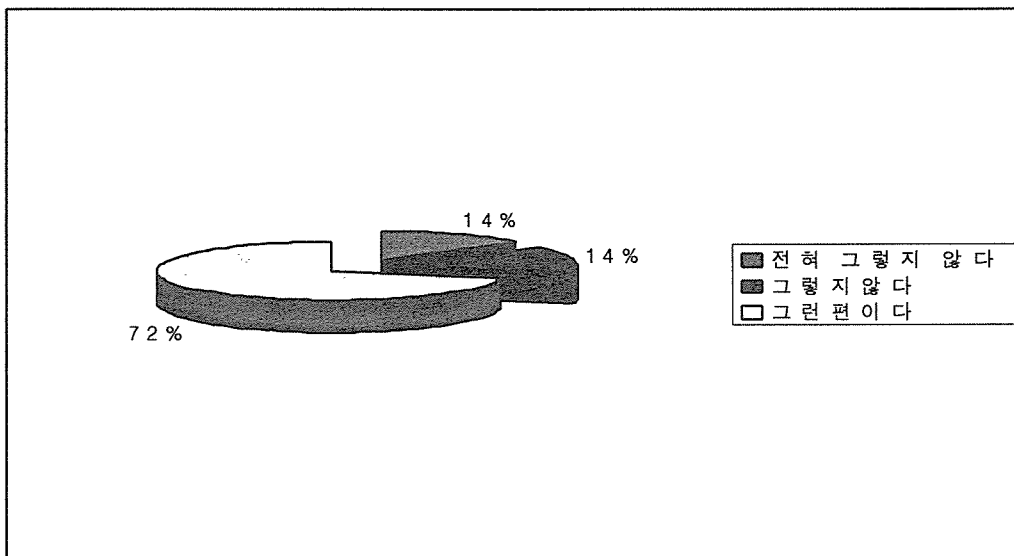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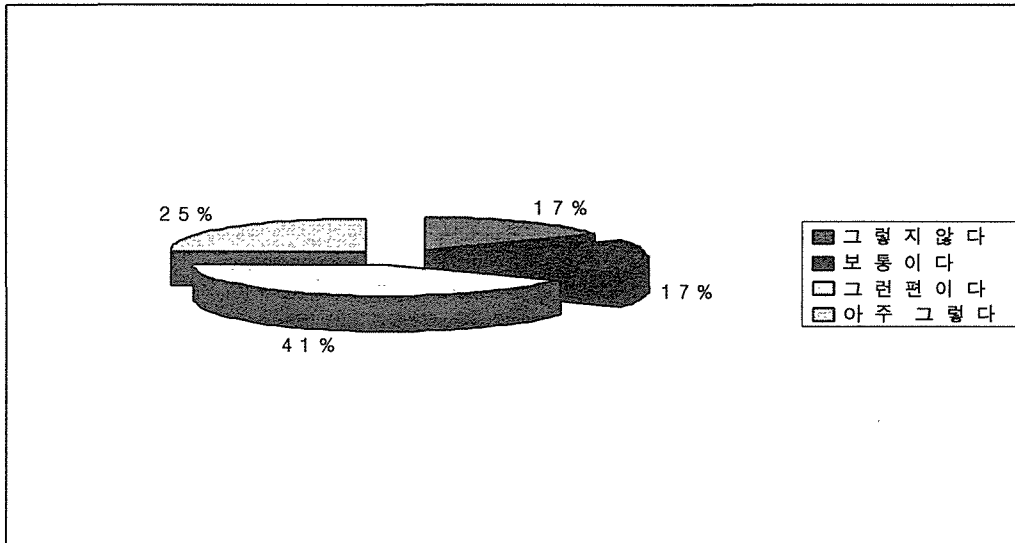


그림13. 보다 엄격하고 차별화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행의 제1자 민간인증기관이 제3자 인증기관화 되는 것이 인증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증농산물 구매 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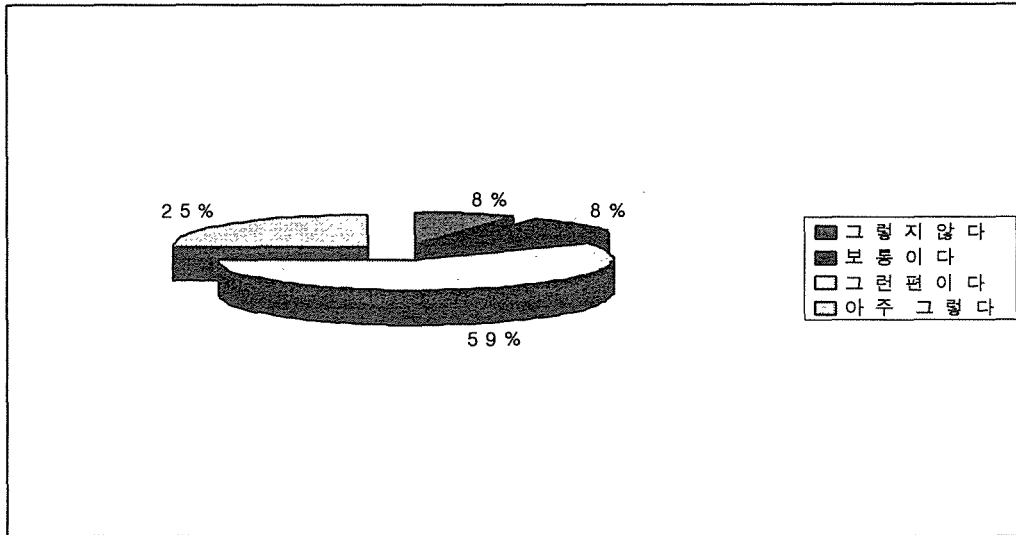


8) 민간인증기관의 국제인증기관화에 대한 욕구

○ 우리나라 인증업무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고양하고 수입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품에 대한 독립적이고 정확한 인증 판단을 위해 우리나라에도 국제인증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소비자의 84%(아주 그렇다 25%, 그런 편이다 5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불과 8%에 지나지 않았음.

○ 즉 대다수는 한국에도 국제인증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한국유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수입유기농산물의 대항을 위해서도, 이제 국제인증기관 설립해 나가야 하고 정부에서도 적절한 지원책을 펴 나가는 것에 국민 다수가 찬성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설문14.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품 인증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고양하고 수입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품에 대한 독립적이고 정확한 인증 판단을 위해 우리나라에도 국제인증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증농산물 구매 소비자)



#### 9) 인증위원과 조사관의 재교육

○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인증위원회 인증위원을 보다 엄격히 선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지속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소비자의 92%(아주 그렇다 50%, 그런 편이다 42%)가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음(그림15).

○ 따라서 소비자는 인증위원의 선정과 전문성이 미약 등에 불만이 있고, 지속적인 교육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 체제에 신뢰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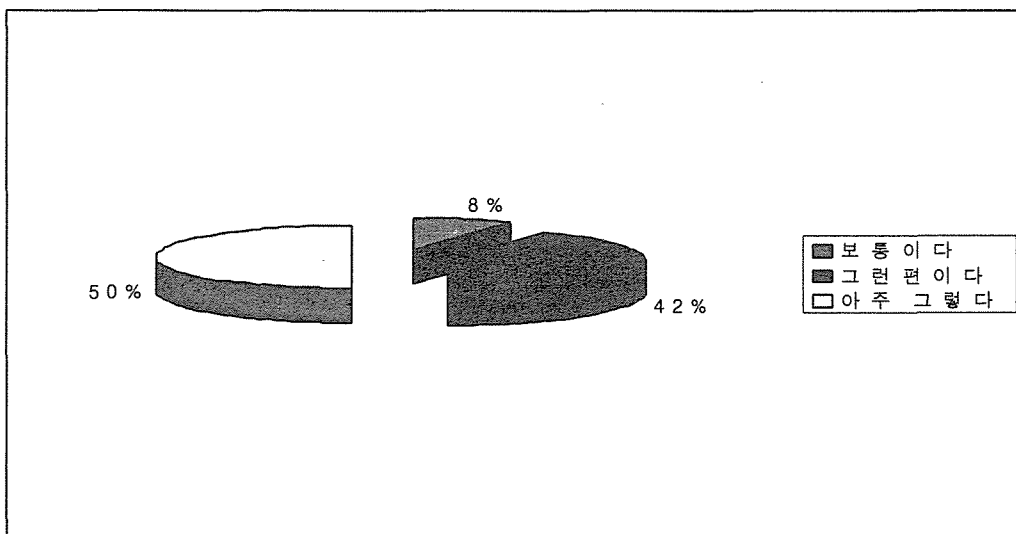
○ 한편 인증조사관에 대한 신뢰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증농가는 그림 1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57%(전혀 그렇지 않다 14%, 그렇지 않다 43%)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 즉, 그런 편이다 라는 반응은 29%에 불과하였음.

○ 즉 인증농가의 절반 이상이 조사관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유럽의 조사관이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유기농업 기술을 담당하여 대농민 기술지도하는 것과 같이 인증신청농가가 어떻게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잘못 알고 실천하는 부분을 발견하면 친절히 상담해 줌으로서 해당농가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것과 아주 대조적인 현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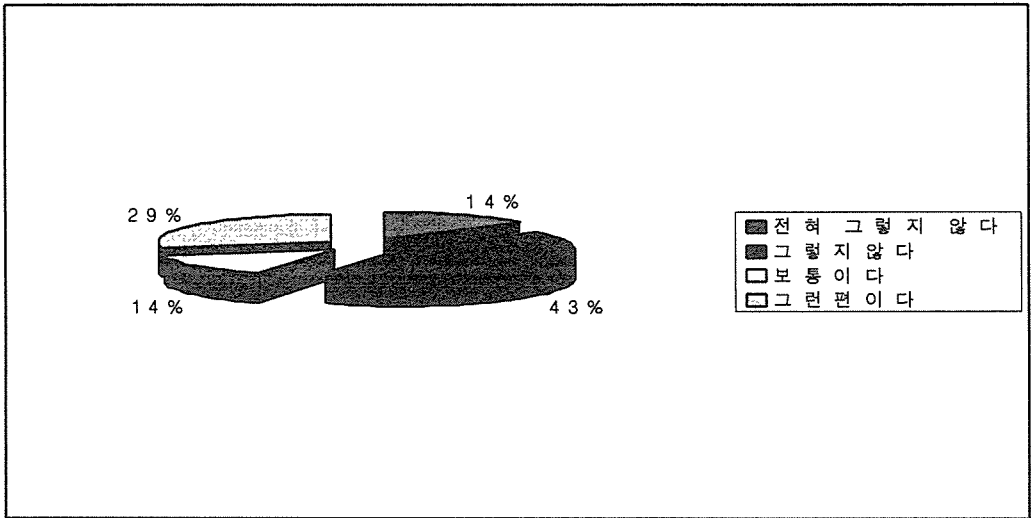
○ 조사관의 양성이 필요한가 및 조사관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한지는 설문에 대해 인증농가의 83%(아주 그렇다 17%, 그런 편이다 6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불과 17%에 불과하였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관 양성에 대한 엄격한 교과과정이 필요하고, 조사관으로 자격을 획득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기술분야 재교육 등을 실시해 농가로부터 따뜻한 신뢰감을 점차 회복해 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향후 실시될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가 조사관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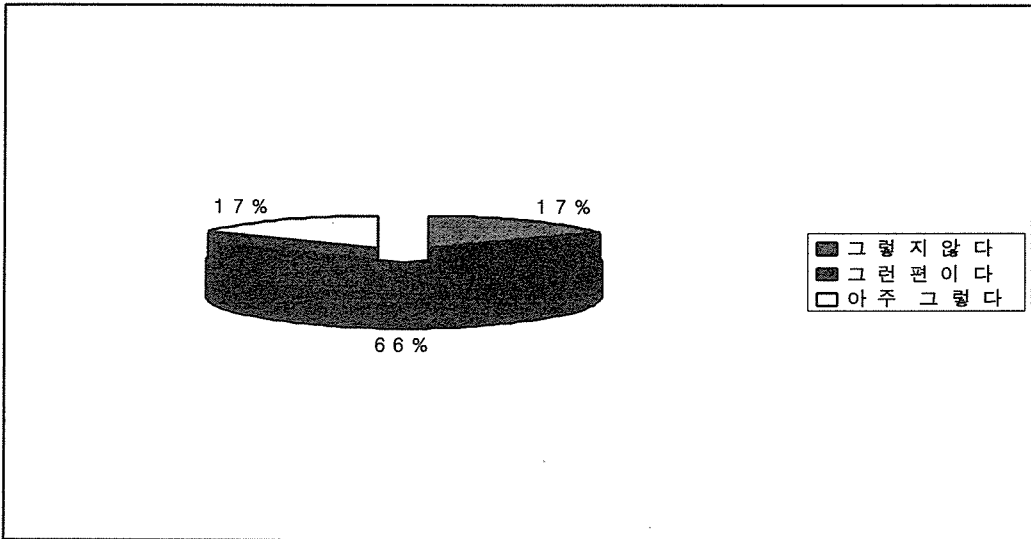
설문15.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위원의 엄격한 선정 뿐만 아니라 그 후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증농산물 구매 소비자)



설문16. 민간인증기관의 인증 조사관과의 대면 시 높은 신뢰감을 느끼십니까?  
(인증농가)



설문17. 정확한 현장판단능력을 갖춘 인증조사관의 양성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증농가)



4. 국내 인증제도와 외국 인증제도의 분석 및 경쟁원리와 국제화에 부응한 인증체계 제시

1)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 인증은 세계 각국에서 모두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은 법률 및 시행규칙(고시)을 제정<sup>4)</sup>한 반면, 미국과 카나다는 연방법률과 주단위 유기프로그램의 제정에 근거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독일은 EU유기농업규정(EU Regulation)에 따라 민간인증기관의 유기식품 생산기준에 의해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 인증의 주요과정은 다음과 같음

인증신청 (생산자)	→	심사	→	심사결과 통보 (인증서 교부)	→	생산	→	생산과정 조사	→	출하	→	시판품 조사 (사후관리)
---------------	---	----	---	---------------------	---	----	---	---------	---	----	---	------------------

(1) 인증방법

○ 생산농가의 인증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재배포장의 토양·용수·종자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검사와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승인

(2) 인증신청

① 생산농가

○ 신청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으로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첨부서류는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관련자료, 축산물의 경우에는 경영관련 자료 등  
-> 신청서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 또는 지정받은 민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4) 한국의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은 Codex유기식품규격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고 있음. 다만 현행 시행령은 Codex규격의 허용자재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키토산, 목초액을 허용자재로 추가하고 있음. 키토산은 키토산을 분리 추출하는 생산과정중에 유기농업에서 금지하는 화학물질에 의한 제조공정이 포함되어 있고, 목초액은 그 나무 연기의 혼합물질중에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유럽 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에서는 유기농업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인증신청기한은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며,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함.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1건당 30,000원 및 출장비를 수수료로 납부하며, 토양 및 수질검사 등 인증에 따른 각종 검사에 대한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1건당 100,000원 및 출장비를 납부하며,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1건당 1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

## ② 인증기관

○ 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

○ 2003년 8월 말 현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는 (사)흙살림, (사)한농복구회, (사)양평21환경추진위원회, (사)국산콩가공협회, (사)한국유기농업협회 등 5개 기관

## (3) 인증기준

○ 우리나라 유기농산물의 주요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음

○ 경영관리 점검을 위해 신청농가는 2년 이상 기록한 재배포장의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에 관한 자료, 농산물의 생산량에 관한 자료 등의 영농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그밖에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재배포장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환기간 이상 동안 유기농업에 의한 재배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 > 다년생 작물(목초 제외)는 최초 수확하기 전 3년의 기간, 기타 작물은 파종 또는 재식전 2년의 기간에 유기농업에 의해 재배 관리되어야 함
- >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은 허용자재 이외의 자재를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지역

○ 재배용수는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함

○ 유기농업에 파종되는 종자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관리된 종자(저항성 품종으로 1년간 유기농법으로 재재된 종자)이어야 하며,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저항성 품종인 유기농업용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용함. 그러나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는 사용을 금지함

○ 유기농업에서는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윤작 작부체계 계획에 두과·녹비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함으로써 토양비옥도를 유지 증진시켜야 함.

- > 윤작에 의해서도 작물재배에 필요한 양분공급이 부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외부로부터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공장식 축산에서 유래하는 액비, 퇴비, 생분은 사용할 수 없음.

- >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다만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유기질비료 사용이 허용. 2005년 1월 1일부터는 유기축산 축분 또는 야생초를 재료로 만든 퇴비만을 사용할 수 있음

○ 병해충 및 잡초제어를 위해 하기의 방법 중의 하나 또는 몇 가지를 함께 사용함

- >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적합한 윤작체계
- >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천적활동을 조장
- >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 >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 >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 수단
- > 기계·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자재를 사용<sup>5)</sup>

5) 유기농업은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여 원천적으로 병충해 발생이 거의 없는 작물재배를 실시하는 것이며, 허용자재는 예기치 못한 상황일 나타날 때 예외적으로 허용자재를 사용하여 병충해를 제어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국유기농업에서는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관례화된 농약사용과 그 횟수를 전제하고 육성된 상업용 품종을 파종하고 병충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병충해가 발생하면

○ 생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 유지, 외부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한 우선조치(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기계·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예외적으로 허용자재를 사용)을 실시하고,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수송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혼합 또는 오염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방사선조사를 금하고, 유기농산물 포장재는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농약잔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오염되는 것을 인정하되 수확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 >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 >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 >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요인

#### (4) 농림산물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인증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산물과 축산물로 구분하고 있다. 농림산물에 대하여 인증조사관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농장운영에 관한 기록과 농장의 여건 및 생산물이 별표 3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

- > 재배포장의 토양 및 재배용수의 수질은 재배포장의 주변환경 및 사용 자재 등으로부터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조사·분석을 실시
- > 재배포장의 토양·용수 및 생산물에 대한 심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 및 출장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그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성적
- > 재배포장의 토양·용수 및 생산물의 시료채취 방법

#### ① 재배포장의 토양

---

허용자재 사용에만 매달리는 악순환을 계속 보이고 있음.

○ 인증신청 필지별로 조사. 다만, 필지가 지형적인 입지조건, 격리거리 및 관개수원 등이 유사하여 토양·중금속 및 유기물 함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한 필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필지로 간주

○ 시료채취지점은 재배필지별로 최소한 10개소 이상으로 하고, 농업통계조사에서 사용하는 표본구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

○ 시료채취는 채취지점의 지표에서 발토양은 10센티미터, 논토양은 15센티미터 깊이까지의 흙을 각 100그램씩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2등분한 후 1점은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1점은 결과 통보시까지 보관

○ 시료량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약 500그램~600그램)

## ② 용수

○ 재배용수의 수원별로 조사. 다만, 용수원의 격리거리 및 지형적인 입지조건 등이 유사하여 수질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용수원 전체 또는 일부를 하나의 용수원으로 간주하여 시료를 채취

○ 시료량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약 2리터~4리터)

## ③ 생산물

○ 생산물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시료의 채취 및 분석 등에 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요령에 따라 시행

## ④ 시료의 채취 및 송부방법

○ 토양과 수질조사에 필요한 분석용 시료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인증조사관이 직접 채취

○ 채취한 시료는 성분의 변화가 없도록 잘 보관하여야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전문시험연구기관으로 송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 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무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위와 같이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심사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조사관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당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증위원회는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위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판정.

○ 특히, 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인이 인증신청시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 (5) 축산물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

○ 인증조사관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농장운영에 관한 기록과 농장의 여건 및 생산물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인증조사관으로 하여금 가축·축사·토양·사료확보·사양관리·축산분뇨처리 및 대장기록 등을 검사 또는 검토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특히 당해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검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양 및 사료의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음

-> 토양검사 : 시료채취 등의 방법은 제1호가목(3)의(가)의 규정을 적용

-> 사료검사 : 인증조사관은 농장을 방문하여 가축의 먹이로 공급되는 사료에 대해 유기사료 조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 및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에 필요한 적당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분석기관에 의뢰

○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물을 최초로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물을 최초로 출하하고자 하는 때에 당해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유해잔류물질검사를 신청
- > 유해잔류물질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조사관으로 하여금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신청농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의뢰
- > 유해잔류물질의 허용기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
- > 유해잔류물질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는 다음과 같이 함
  - 식육 : 축종별로 500그램(2개 부위에서 채취)
  - 우유(산양유 포함) : 500밀리리터(집유조에서 채취)
  - 란 : 10개 이상
- > 시료채취에 있어서 인증심사원은 적절한 시료채취기구 및 용기를 사용하여 시료가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채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위원회는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당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증위원회는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때에는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조사관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판정.

○ 인증조사관과 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6) 인증 심사결과, 판정, 통보 및 재심사 신청

○ 심사결과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적합”으로 판정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인증심사결과 부적합통지를 받은 자는 부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재심사 요청이 가능

(7) 인증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연장 신청

○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간이며,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인근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출장소에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음.

○ 인증기관이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8) 시판품 조사

○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표시품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전시, 운송, 보관 중인 것과 이해관계자가 조사 요청한 인증품을 대상으로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만 조사

○ 조사반은 1개반당 2명으로 편성하되, 인증기관·유통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임직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표시 및 인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 조사시기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증기관,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의 요청 및 출장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 조사도 가능.

○ 조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법 제17조(친환경농산물 인증)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 > 규칙 제8조(친환경농산물표시)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과의 적합 여부
- > 규칙 제9조(인증기준)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 > 영농, 출하상황 및 거래유통 등 관계장부 기록의 정확성 여부
- > 품질기준 및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농약잔류검사는 인증품이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잔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및 지원 분석실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공인시험연구기관 등에 의뢰하고, 검사를 위한 시료

의 채취 및 수거, 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등을 통보할 때에는 농산물안전성조사 사실시요령에 따름

(9) 사후관리

○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행위 즉 ①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행위 ②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③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④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징역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 인증품의 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품을 생산한 자 또는 당해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그 인증품의 친환경농산물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농관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③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①과 같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

○ 법인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하며, 인증품의 검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시중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을 조사하며, 조사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 2) 국가인증기관과 민간인증기관

-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인증을 주로 실시하고 있음. 현재 국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덴마크)에서도 민간인증체제로 전환할 계획이거나, 국가인증과 민간인증을 병행하고 있음(영국).
- 유럽의 경우 덴마크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품질인증체제로 전환되었음
- 국가인증과 민간인증을 병행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인증수수료는 현실화하였으며, 국가인증기관도 민간인증기관과 동일한 인증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품질인증 초기에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자신의 유기식품에 대한 "제1자 품질인증"을 실시하였으나, 공정하고 엄격한 품질인증을 바라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유기식품 생산과 직접이해 관계가 전혀 없는 단체가 품질인증을 담당하는 "제3자 품질인증체제"로 이행되었음 (시장 소비자의 선호에 의한 선택의 결과, 공정한 인증을 위한 NGO와 지자체의 지원)



## 5. 외국의 인증시스템

### 1) 유럽 인증제도와의 비교

○ 영국(2002.12.31현재)의 경우, UKROFS 등 11개 민간품질인증기관이 활동 중에 있음

- > UK Register of Organic Food Standards (UKROFS)
- > Organic Food Federation (OFF)
- > 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Ltd (SA Cert)
- > Biodynamic Agricultural Association (BDAA)
- > The Organic Trust Ltd (OTL)
- > Checkmate International (CMi)
- >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ervices (ISC)
- > Organic Certification Ltd (OCL)
- > SGS

○ 독일(2003.2 현재)의 경우 BSC 등 22개 민간품질인증기관이 활동 중에 있음

- > BSC Oeko-Garantie GmbH
- > BIOZERT GmbH
- > Lacon GmbH
- > IMO
- > Aicon GmbH
- > Pruefverin Verarbeitung Oekologie
- > EG-Kontrollstelle Kiel
- > AGRECO
- > QC & I
- > Gruestempel e.V.
- > Kontrollverein Oekologcher
- > INAC
- > Certification Services International GmbH
- > Landwirtschaftskammer
- > Kontrollstelle fuer den Oekologischen

- > Fachverein fuer Oeko-Kontrolle e.V.
- > OEKOP
- > GtRS
- > Agro-Oeko-Consult
- > BiLaCon GmbH
- > ECOCONTROL
- > QAI Gesellschaft fuer Qualitaetsicherung in den Agrar und  
Lebensmittelwirtschaft mbH

○ 독일의 경우 22개 유기식품 품질인증단체가 독일품질인증단체협의회(KdK; Konferenz der Kontrollstellen)와 독일조사관단체협의회(AGK; Arbeitsgemeinschaft der Kontrollstellen)를 조직하였음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인증제도를 “법적 근거”, “적용범위”, “인증주체”, “표시규제”, “표시구분”, “표시항목”, “유기식품의 정의” 등의 항목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1. 한국 인증제도와 유럽연합(EU) 인증제도의 비교

구 분	한 국	EU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업육성법</li> <li>·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li> <li>· 식품위생법, (축산물 예외)</li> </ul>	EU규칙(회원국에만 적용)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농산물</li> <li>· 유기축산물</li> <li>· (일부 유기가공품 : 4가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농산물(임산물 포함)</li> <li>· 유기축산물(수산물, 봉산물 포함)</li> <li>· 유기가공품 (목제품, 면제품, 주음료, 간편식, 냉동식품, 화장품, 장남감 등 다수)</li> </ul>
인증주체	정부 또는 민간인증기관	민간인증기관
표시규제	인증을 받지 않으면 표시 못함(강제) 가공품은 예외	인증을 받지 않으면 표시하지 못함(강제)
표시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농산물(가공품)</li> <li>· 전환기유기농산물</li> <li>· 무·저농약농산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rganic</li> <li>· 전환기 Organic</li> </ul>
표시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농산물 등의 표시</li> <li>· 인증(마크)</li> <li>· 인증번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rganic</li> <li>· 인증기관의 명칭 또는 코드번호</li> </ul>
유기식품 (Organic)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이상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li> <li>· 포장은 비유기 포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li> <li>· 가공품의 경우는, 최종제품중에 유기재료가 95%이상 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간 허용자재 이외는 사용치 않을 것 (초지는 2년간)</li> <li>· 포장은 규칙에 의하지 않은 다른 포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li> <li>· 가공품의 경우는, 최종제품중에 유기재료가 95%이상 있을 것</li> </ul>

○ 한국과 유럽의 인증제도를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단, 독일이 유기농업과 유기식품 인증에서 세계 최선진국이므로 독일의 경우를 유럽의 일례로 들어 한국과 비교하였음.

	한국	독일
<b>1. 인증제도(총괄)</b> ○ 인증규정(법령)  ○ 인증기관 ○ 인증체계 및 사후관리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정부 및 민간기관 ○ 정부가 농산물 인증 및 민간인증기관 지정 운용	○ EU유기농업규정 - 각 민간품질인증단체의 유기식품 생산 기준 ○ 제3자 민간품질인증단체 ○ 정부가 민간인증단체 인가(지정)
<b>2. 농산물인증</b> ○ 인증수수료	○ 신청수수료 건당3만원  ○ 출장비(2인2일) 및 토양·수질·생산물 검사비 별도  ○ 갱신수수료 : 건당1.5만원	○ 인증수수료 - 농가당 30~90만원수준 - 주정부에서 일부 보조 지원 - 웨스트팔렌주는 12만원/ha, 농가당 최대 120만원/ha 지원

	한국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대상</li> <li>○ 인증유효기간</li> <li>○ 인증기준(유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농산물·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4종)</li> <li>○ 1년(1년 이내 갱신가능)단위</li> <li>○ 경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 이상 영농자재사용 및 생산자료 관리</li> </ul> </li> <li>○ 재배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li> <li>- 재배포장은 전환기간 동안 재배방법을 준수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년생 : 최초 수확전 3년</li> <li>· 기타 : 파종 또는 재식전 2년</li> </ul> </li> <li>- 산림등 자연상태 식물의 포장은 허용자재이외의 자재 3년 이상 미사용</li> </ul> </li> <li>○ 용수·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수는 농업용수 이상</li> <li>- 종자는 유기종자사용(유전자변형 종자사용금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li> <li>○ 1년(매년 갱신)</li> <li>○ 경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간의 영농자재투입 및 수확량·구매·판매영수증 등 자료보관</li> </ul> </li> <li>○ 유기농산물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은 3년 전부터 유기농법관리</li> <li>- 관행재배지와 완충지단장치</li> <li>- 5년 내지 7년 윤작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비옥도 유지증진추진(토양진단 최적 시비, 두과작물 및 녹비작물)</li> </ul> </li> <li>- 병해충 제어 수단장구</li> <li>- 공장형 축분 및 퇴비 사용금지</li> <li>- 축분비료는 완전부숙 사용; (금지물질, 오염축분비료는 사용불가)</li> <li>- 토질저하 방지의무 등</li> </ul> </li> <li>○ 재배포장·용수·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포장의 전환기간은 금지자재 최종 투입 후 3년</li> <li>- 용수는 금지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함</li> <li>- 종자는 유기종자 사용(GMO 종자사용금지)</li> </ul> </li> </ul>

	한국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유지 및 외부오염방지</li> <li>-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해 1차 예방조치, 2차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 사용</li> <li>- 저장구역 등 병해충방제 : 물리적,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덩, 온도조절, 대기조절 및 구조토사용</li> <li>- 일반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방지</li> <li>- 방사선의 해충방제 등 목적으로 사용금지</li> <li>- 잔류농약은 바람에 의한 비산, 용수오염등 불가피한 경우 허용(1/1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제품 취급·저장·운송시 금지물질과의 혼합·접촉 금지</li> <li>○ 가공은 기계적·물리적·발효공정 및 이들의 조합공정만 허용</li> </ul>

	한국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방법</li> <li>- 화학비료와 농약사용금지</li> <li>- 윤작의무이행과 인증기준에 맞는 유기물사용 ('04.12까지 일반유기질비료사용)</li> <li>- 축분비료는 완전부숙사용 (공장형축산 유래 축분/비료/액비는 '03.12까지만 사용)</li> <li>- 병해충 및 잡초방제·조절기준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의 유지관리</li> <li>- 영농자재 사용기록</li> <li>- 수확물기록 및 판매기록</li> <li>○ 유기인증농산물의 비오염증명 의무(생산자)</li> <li>○ 해충의 예방 및 억제</li> <li>- 차단 및 환경적 요소관리</li> <li>- 천적사용, 덩, 빛, 소리 등 기계적·물리적 억제</li> </ul>

	한국	독일
○ 인증심사절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준적합여부 심사</li> <li>- 재배포장의 토양 용수는 오염 또는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분석</li> <li>- 토양 용수 농산물의 심사는 농관원 등과 지정시험연구기관의 검사성적</li> <li>- 시료채취방법</li> <li>· 토양은 필지별로 조사하고 필지별로 10개소 이상, 시료는 개소당 100g 채취하여 2등분</li> <li>· 용수는 수원별로 조사하고 시료는 2~4리터 채취</li> <li>· 생산물은 농관원이 정하는바에 의해 시행</li> <li>· 시료는 신청인 입회하에 채취 및 시험기관 송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인 요구조건</li> <li>- 생산·취급기준과 일치 되게 생산</li> <li>- 조사관 농기현장 방문조사 (포장 수목, 농기계창고, 자재창고 등) 및 면담</li> <li>- 1년마다 농가에 대한 토양, 식물체, 수질, 대기의 검사</li> <li>- 5년 이상 농가경영기록 유지</li> <li>- 생산계획서, 제출</li> <li>· 유기농업 실천방법</li> <li>· 신청일 이전 3년간 자재투입내역서</li> <li>· 수확후 취급</li> <li>○ 년1회이상 현장검사 실시(정기, 수시)</li> </ul>

	한국	독일
○ 인증심사절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시 전부 또는 일부면제 (인증위원에게 통지)</li> <li>- 하위 인증단계 신청</li> <li>- 유효기간 만료 등</li> <li>○ 인증위원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 제출</li> <li>○ 인증기관의 적합여부 판정 및 부적합 판정 시 서면통지</li> <li>○ 인증위원의 비밀유지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식품 생산계획 검토, 생산자 면담 및 시료분석후 적합시 인증 결정</li> <li>○ 인증심사원의 비밀유지의무</li> <li>○ 2년 연속해서 같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없으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같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있음</li> </ul>

	한국	독일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농장의 표시</li> <li>○ 인증품의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증요건의 적합성 조사</li> <li>-관련장부 및 서류의 열람</li> <li>-시료수거 및 시험의뢰</li> </ul> </li> <li>○ 생산과정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1회이상 실시(생산·출하 여건 등을 감안 분기1회)</li> <li>·인증기준 준수여부</li> <li>·주변여건 및 장부기록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년 1회 이상 현장조사 (필요시 추가조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li> <li>○인증서 매년 갱신심사</li> </ul>

	한국	독일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판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기 1회이상 정기조사실시 (필요시 수시조사가능)</li> <li>-인증품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 인증농산물여부, 표시적합여부, 인증기준 부합여부, 기록의 정확성 여부 등</li> </ul> </li> <li>○ 농약잔류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수여부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에 분석의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년 1회 이상 현장조사 (필요시 추가조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li> <li>○인증서 매년 갱신심사</li> </ul>

	한국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자 제재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의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위·부정방법에 의한 인증</li> <li>-인증기준의 현저한 위반</li> <li>-표시변경·사용정지·판매금지 위반</li> </ul> </li> <li>○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위·부정한 방법으로 인증</li> <li>-비인증품 인증표시행위</li> <li>-일반 혼합판매 또는 판매목적 보관·진열행위</li> <li>-인증품이 아닌 사실을 알고 판매·보관·운반진열</li> </ul> </li> <li>○ 검사행위의 거부·방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만원이하 과태료</li> </ul> </li> <li>○ 검사결과 인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표시변경·사용정지·판매금지 등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매금지 1월, 표시사용정지 등 6~9월 (농관원 지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표시 허위표시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위반은 인증취소</li> <li>-중대한 위반은 형사고발 조치</li> </ul> </li> </ul>
<p><b>3. 인증기관 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기관현황</li> <li>○ 표시항목</li> <li>○ 지정수수료</li> <li>○ 지정유효기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흙살림, 한농복구회, 양평, 국산콩가공협회, 유기농업협회, 등 5개 기관</li> <li>○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li> <li>○ 건당 100천원</li> <li>○ 유효기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개 제3자 민간품질인증단체 (BSC 등)</li> <li>○ Organic (EU 인증마크)</li> <li>○ 신청수수료 120만원</li> <li>○ 행정수수료 240만원</li> <li>○ 1년 단위(매년 갱신)</li> </ul>



	한국	독일
○ 지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인력을 갖추고 인증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불공정 우려가 없을 것</li> <li>- 인증위원 5인 이상(상근 2인)</li> <li>· 농학계 4년 대학졸업자, 농림·환경계 기사 자격증 소지자, 연구기관 단체 등의 5년 이상 경력자, 외국인인증기관은 위 동등 자격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유기식품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관리감독 국가기관과 품질인증 실시 민간기관을 두고 있음</li> <li>- 국가기관은 민간품질인증단체를 관리감독</li> <li>- 모든 품질인증 업무는 민간품질인증단체가 담당(현재 제3자화 추세에 있음)</li> <li>○ 인증관련 국내법규와 국제기준에 관한 시험 합격자로서 다음 학력·경력자</li> <li>- 관련분야 석사학위자</li> <li>- 농학계열 학사취득자로서 2년 이상 경력자</li> <li>- 대학졸업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li> <li>○ 인증기관의 조사관, 인증위원은 생산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어야 함</li> <li>- 제3자 민간품질인증기관으로 완전 전환</li> <li>- 국제품질인증기관으로 변신중</li> </ul>

	한국	독일
○ 인증기관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기준</li> <li>- 10m<sup>2</sup> 이상 검정실 설치</li> <li>- 외부위탁 계측 분석시 검정실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li> <li>○ 인증업무규정</li> <li>- 인증업무 실시방법, 사후관리방법, 인증수수료, 인증심사원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요령 등</li> <li>○ 별도 규정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기준</li> <li>- 토양, 식물체, 수질, 대기의 시료를 조제, 분석할 수 있는 분석시설은 자체 보유하거나</li> <li>- 분석시설을 갖춘 외부기관과 분석업무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여도 무방</li> <li>○ 국가기관은 연방정부 소비자보호/식품/농무성과 연방농업식품청이 유기식품 품질인증의 법규 및 절차의 제도화를 담당</li> <li>- BML(연방정부 소비자보호/식품/농무성)</li> <li>- BLE(연방농업식품청)</li> <li>○ 인증기관감독 업무담당은 각 주정부</li> </ul>

	한국	독일
○위반자 제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6월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li> <li>-사위·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증기관지정(지정취소)</li> <li>-정당사유없이 1년이상 인증을 하지 않을 시(3회행정처분시 지정취소)</li> <li>-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3회 행정처분시 지정취소)</li> <li>-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고의는 2회, 과실은 3회시 지정취소)</li> <li>-위의 업무정지명령 위반(취소)</li> </ul> <p>○지정취소시 2년간 지정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인정기관의 등록취소</li> <li>-경미한 경우는 경고</li> <li>-중대한 경우 취소</li> </ul>

-> CCOF(California Certified Organic Farmers/미국 동부지역 인증기관)

(1) 인증신청수수료(유기)

- 신규신청자 : \$175(일반비용160, 지부지원금 15)
- 연간수수료
  - 농작물 및 축산 : 총매출액의 0.005(1%의 1/2)
  - 가공 : 총매출액 \$220만까지 총매출액의 0.005(1%의 1/2), 총매출액 \$220만이상 초과매출액의 0.001(1%의 1/10)
    - \* 상한 : 납부할 금액이 \$15,000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수료가 면제
  - 취급(경영규모에 따라 다름) : 유기상품 판매액(매입비 제외) 0.1%(0.001)
    - \* 취급자 중 연간매출액이 \$20,000이하인자는 수수료 면제
- 검사관 수수료 : 검사비용(시간당\$20~30)+출장비(검사비용의75%+일반비용)
  - 1) 시간당 검사비용은 경영규모, 복잡성, 검사의 협조 등에 따라 다름
  - 2) 일반비용은 식사, 숙박, 이동 등에 따른 소요비용을 말함

-> MOSA(Midwest Organic Service Association 미국 중서부지역 인증기관)

(1) 인증신청수수료

- 농작물 축산 신규 신청자 : \$150 + 추가(낙농, 가축, 제분 등)
  - 농장내 가공/취급 : \$100(일년 매출액 \$20,000 미만), \$200(\$20,000 ~ \$100,000/년), \$400(\$100,000이상/년)
  - 심사 보증금 : \$200(농장내 가공/취급 포함시 \$125 추가)
  - 회비 : \$50(회보, 기타 우편물 등)
- 농작물 축산의 연간 수수료
  - 연간 매출액 \$200,000 이하 매출액의 0.75%
  - 연간 매출액 \$200,000 초과 매출액의 0.1%
  - 판매 수수료 상한선 : \$7,500
- 가공업자 인증 비용
  - 가공업자 인증 수수료 : \$400(장소별)
  - 계약자 인증 수수료 : \$400(장소별)
  - 심사 보증금 : \$250(장소별)
  - 회비 : \$50(회보, 기타 우편물 등)

## 2) 미국의 인증제도와의 비교

### ① 인증제도 총괄

- 미국(2003.6.1 현재)에는 CCOF 등 81개의 품질인증기관이 유기식품 품질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미국의 민간품질인증기관 중에서 Oregon Tilth 등 29개 품질인증단체가 해외에서의 유기농산물, 유기식품 및 유기제품과 관련한 국제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에 수입되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미국의 유기농산물 인증규정은 유기식품생산법(연방법)과 국가유기농업법 National Organic Program(NOP)에 의해 실시<sup>6)</sup>되고 있음
- 인증기관 지정은 연방정부 (USDA, 미농무성)이 담당하여 주정부 및 민간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 ② 농산물 인증

- 인증수수료는 인증기관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1건당 175불 기본 수수료에 매출액의 0.5~0.1%(년간 최대 15,000불 이내)를 추가로 받고 있음. 조사관의 출장비는 검사비용의 75%수준에서 책정되며 검사비용은 시간당 20~30불 수준임
- 매년 인증을 갱신할 때 납부하는 인증수수료는 매출액의 0.5%~0.1% 수준에서 차등적으로 책정됨. 이는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증기관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

- 미국의 민간인증기관 CCOF와 MOSA의 인증수수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6) NOP가 제정되어 미국의 국가유기농업법이 효력을 발효하기 이전에는 몇몇 주정부의 유기농업법이 실시되었음. 예를 들어 오레곤유기농업법, 캘리포니아유기농업법이 그것임. 그러나 국가유기농업법인 NOP가 통과되어 발효되면서 각 주별로 정해 실시해오던 유기농업법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

- 가공업자의 연간 수수료
    - 연간 매출액 \$2,200,000 이하 매출액의 0.5%
    - 연간 매출액 \$2,200,000 초과 매출액의 0.1%
    - 판매 수수료 상한선 : \$75,000
  - 법인의 인증비용
    - 인증수수료(개인당) : \$100
    - 심사보증금(개인당) : \$175
    - 최초 신청시 : \$250 추가
    - 낙농 : \$50 추가
    - 가축 : \$50 추가
    - 제분계약 : \$50 추가
    - 농장내 가공/취급 : \$100(일년 매출액 \$20,000 미만)  
\$200(\$20,000 ~ \$100,000/년)  
\$400(\$100,000이상/년)
    - 심사 보증금 : \$200(농장내 가공/취급 포함시 \$125 추가)
  - 법인의 연간 수수료
    - (각 생산자별료)
      - 연간 매출액 \$200,000 이하 매출액의 0.675%
      - 연간 매출액 \$200,000 초과 매출액의 0.09%
    - (각 가공업자별료)
      - 연간 매출액 \$2,200,000 이하 매출액의 0.45%
      - 연간 매출액 \$2,200,000 초과 매출액의 0.09%
- 인증대상은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인증대상에 모두 포함되고 있음
- 인증유효기간은 1년이며, 매년 농가방문조사와 현장심사 등을 계속해 나가고 있음
- 유기인증의 기준은 영농기록 점검과 유기농산물 생산과 관련 영농이력 및 현황 확인, 유기종자 사용, 해충의 예방 및 억제, 유기제품 취급/저장/운송시 금지물질과의 혼합/접촉금지 등에 관해 조사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사항임
- > 영농기록 점검 : 영농자재사용기록, 수확물기록 및 판매기록, 유기농산물의 비오염증명 의무(생산자) 등

- > 유기농산물 생산과 관련한 영농이력 및 현황 확인 : 토양은 3년 전부터 금지물질 사용금지, 비유기농산물과 완충·차단장치, 윤작 또는 토양비옥도유지와 병해충 제어수단 강구, 비옥도분석은 3년마다 실시, 퇴비 등 이용, 토양비옥도 유지 (허용가능물질사용), 유기농산물 등
- > 유기종자의 사용 : 예외적인 경우 상업용 품종을 인증기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
- > 해충의 예방 및 억제 : 차단 및 환경적 요소관리, 천적사용, 덩, 빛, 소리 등 기계적 물리적 억제
- > 유기제품 취급, 저장, 운송시 금지물질과의 혼합, 접촉금지 : 잔류농약 허용기준의 1/20

○ 인증심사 절차상 일반적인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음.

- > 생산·취급기준과 일치되게 생산
- > 매년 대상지역에 대한 검사허용
- > 5년 이상 경영기록 유지
- > 생산계획서, 각서 제출 :
  - 유기농업 실행방법
  - 신청일 이전 3년간 자재투입내역
  - 수확후 취급·가공자료

○ 매년 1회 이상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매 5년마다 금지물질의 사용여부 및 잔류농약의 검사(수확전 잔류검사 실시)를 실시하는 것과 유기식품생산계획, 검사 등을 검정한 후에 적합 시 인증을 승인하고 있음

○ 인증의 사후관리로서 미국에서는 의심지역 생산물에 대한 오염물질 및 농약잔류검사, 최소한 5년 단위로 생산물의 샘플조사와 잔류물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음

- > 의심지역 생산물에 대한 오염물질 및 농약잔류검사
  - 검사결과 EPA(미 환경보호청)의 잔류허용기준 5%초과시 유기표시 취소
  - 농약 및 환경오염물질 기준초과시 연방정부에 통보
- > 최소한 5년 단위 생산물 샘플조사와 잔류물 테스트 실시
  - 연방정부(USDA, 미농무성)는 인증기관에 검사 요구

○ 유기표시 위반자 제재조치로서 생산물의 농약 및 오염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의 5%를 초과하는 경우 10,000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③ 인증기관 운용

○ 미국정부(USDA)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은 Oregon Tilth, CCOF 등 81개 기관으로 그 대부분이 민간인증기관임

○ 인증수수료는 신청수수료 640 \$, 행정수수료 2,000 \$이며, 지정유효기간은 5년 단위로 재지정 신청을 받음.

○ 미국정부(USDA)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미국
○ 지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한 전문가와 기술 보유하고 NOP규정 준수</li> <li>- 검사원과 인증을 수행할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li> <li>- 인증업무에 대한 내부평가 실시(매년)</li> <li>- 인증 관련자료는 10년 이상 보관 등</li> </ul>
	미국
○ 인증기관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규정 없음</li> <li>○ 검사원과 인증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음</li> <li>○ 농무부 또는 주정부의 책임자가 확인할 수 있음</li> </ul>
	미국
○ 위반자 제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식품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인증기관업무취소 등 조치</li> <li>- 자격이 취소된 자는 5년간 재신청금지</li> </ul>

구 분	우리나라	미국 (‘02.10.21부터 시행)
법적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 식품위생법, (축산물 예외)	연방유기식품법
적용범위	농·축산물 (가공품)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인증주체	정부 또는 민간인증기관	주정부, 민간인증기관
표시규제	인증을 받지 않으면 표시 못함(강제) 가공품은 예외	인증을 받지 않으면 표시하지 못함(강제)
표시구분	· 유기농산물(가공품) · 전환기유기농산물 · 무·저농약농산물	· Organic

구 분	우리나라	미국 (‘02.10.21부터 시행)
표시항목	· 유기농산물 등의 표시 · 인증(마크) · 인증번호	· Organic · 농무부의 인증마크
유기식품 (Organic)의 정의	· 3년이상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 하지 않고 재배 · 포장은 비유기 포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가공품의 경우는, 최종제품중에 유기재료가 95%이상 있을 것	· 수확전 3년간 화학합성자재를 포함한 금지물 질을 사용하지 않음 · 유기재배포장은 확실히 구분하여 알 수 있 는 경계가 있을 것 · 가공품의 경우는, 최종제품중에 유기재료가 95%이상 있을것



### 3) 중국의 인증제도

○ 중국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유기농산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음. 다만 EU나 미국 등의 유기농업이 민간 유기농업단체(경우에 따라서 민간+정부기관)가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검사·인증을 하는 「민간주도형」인 것과는 달리, 중국의 경우 정부기관(중국 녹색식품 안전센터)이 직접 관리·지도해 유기농산물의 생산확대를 행정력으로 추진하는 「정부주도형」임

○ 중국의 유기농산물 생산은 국내 수요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 이라기보다는 향후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유기농산물 시장을 겨냥한 무역전략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중국의 녹색식품 생산기준은 주로 미국의 유기농산물 생산기준을 참고한 것임. 이는 대외수출을 위한 목적에서 당연한 것이었음



○ 1990년 녹색식품공정을 실시한 이래 이미 전국 30여개지구에 녹색식품사무실을 설립되었고 전국 범위내에서 9개 식품감측기관과 성급 환경보호감측 지구에 위탁하여 감측망을 형성하였으며 녹색식품 생태환경 및 산품질량 감측임무를 담당하고 있음

-> 엄격한 표시사용심사인증절차를 총결해냈고 녹색식품의 각종표준을 제정하였으며 녹색식품과학기술훈련을 전개하였고 일련의 과학적인 생산품질량보증체계를 창립하여 녹색식품질량이 생태환경, 원료생산에서 가공, 저장운수, 감측, 판매 등 전과정의 매개환경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중국녹색식품이 갈수록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진출할 수 있게 해 국내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음.

-> 1993년 5월 중국녹색식품발전센터(GFDC)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가입하여 세계를 향해 중요한 한발을 내딛었음

-> 전국 30개성, 시, 자치구에 국가의 위탁을 받은 녹색식품관리기관이 38개 있으며 56개 녹색식품산지 환경감측과 환경질량평가를 하는 기관이 있고 9개 녹색식품질량 감측기관이 있음.

- (1) 녹색식품 감측기관
- (2) 중국 농간 북방식품 감측센터(천진시 천진시 남개구)
- (3) 농업부 식품질량 감측센터(무창시)
- (4) 농업부 식품질량 감측센터(Ihanjing)
- (5) 농업부 대두제품 감측센터(흑룡강성 가목사시)
- (6) 농업부 식품질량 감측센터(신강석하자시농간과학원)
- (7) 농업부 식품질 감측 센터(성도시)
- (8) 녹색식품 중국과 학원 심양식품감측센터(심양시)
- (9) 농업부 식품질량 감측센터(제남시)

○ 중국의 녹색식품(Green Food)이란 전문기관에서 인증하고 녹색식품표지 사용을 허용한 안전하고 오염이 없는 양질 영양식품을 말함. 녹색식품은 다시 A급 녹색식품, AA급 녹색식품 등 2개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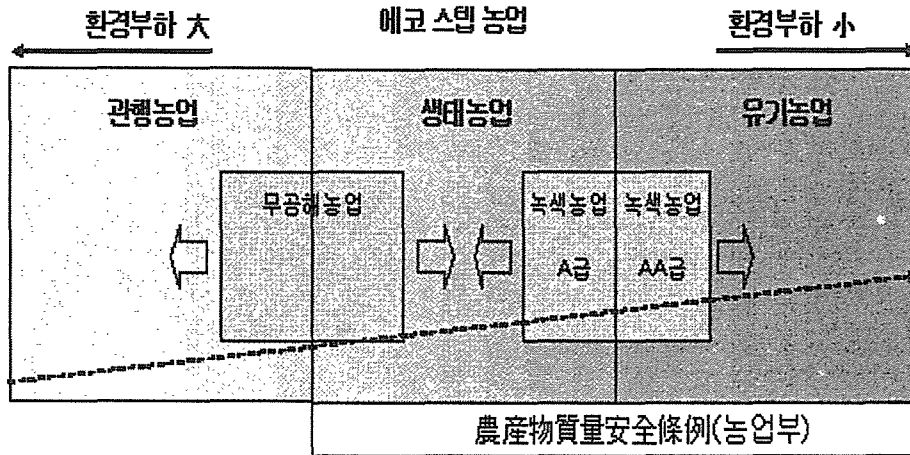
-> AA급 녹색식품이란 生態環境質量이 規定標準에 부합되는 產地로서 생산과정 중에서 그 어떤 有害 化學合成物質을 사용하지 않고 특정한 生産操作 規程에 따라 생산, 가공, 產品質量 및 포장 檢測, 검사하여 特定標準에 부합되고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고 AA급 녹색식품표지 사용을 허용 받은 식품을 가리켜 말함

-> A급 녹색식품이란 生態環境質量이 規定標準에 부합되는 產地로서 생산 과정 중에서 일정한 량의 제한된 化學合成物質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특정한 生産操作規程에 따라 생산, 가공하고 產品質量 과 포장의 檢測, 검사하여 特定標準에 부합되고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아 A급 녹색 식품표지 사용을 허용 받은 식품을 가리켜 말함

○ 중국의 친환경농업은 녹색농업(녹색식품) A가 이에 해당하고, 녹색농업(녹색식품) AA는 유기농업에 해당됨(그림18의 중국 농업부의 농산물질량안전조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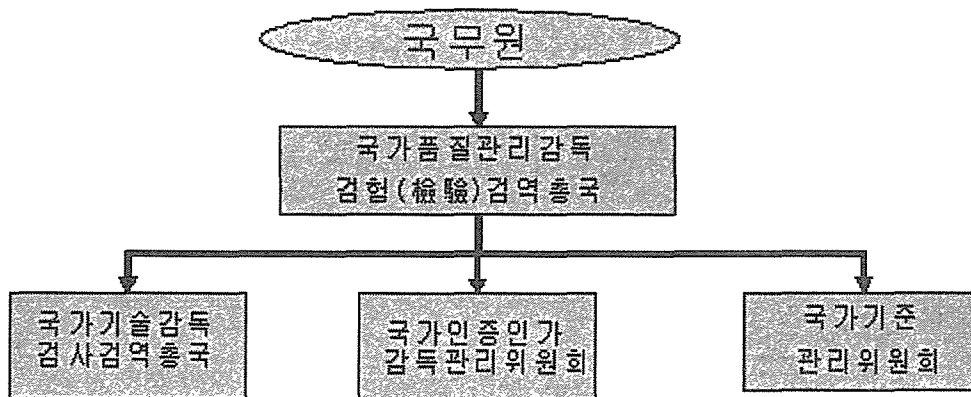
○ 중국의 경우 내수용은 녹색식품(Green Food)은 내수용으로 주로 인증 판매되고, 유기식품(Organic Food)은 OFDC(Organic Food Development Center)에서 인증하여 주로 수출용으로 내보내 지고 있음. 물론 녹색식품도 수출이 일부 되고 있음.

그림1 중국 친환경농업의 구분



- ①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특히 '농산물품질안전조례'의 제정  
→ 농업부가 全人代에 제출, 2004년 공화국 농업법 제정.
- ② 2001.4 무공해식품등급제에 근거한 다섯 가지 시스템 구축  
농산물의 품질, 안전, 기술, 인증에 관한 시스템 구축
  - 농산물 품질안전기준 시스템
  - 농산물 품질안전 감독규약시스템
  - 농산물 품질안전 인증시스템
  -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시스템
  - 농산물 품질 안전에 관한 법령전개 시스템
  - 농산물 시장정보 시스템
- ③ 무공해 식품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조지의 제정
- ④ 비교적 조건이 좋은 北京, 天津, 上海 等? 이 네 곳의 도시에서 모델 실험 개시하는 네 개의 거동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그림2 중국정부의 인증 관련업무 체계도



○ Green Food에서는 100,000인민폐(약 1,000 US\$)의 인증수수료를 받고 있음. 이 수수료는 대규모 국영농장 및 협동농장에 해당되거나, 40ha 이상의 대규모 개인농장에 해당됨.

-> 이같은 높은 인증수수료 때문에 개인농가는 여러 농가를 모아 대규모 Group으로 인증신청을 하고 있음.

○ 한편 OFDC는 이보다 더 비싼 인증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수출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수용 인증신청은 주로 Green Food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수출품에 더 많은 인증수수료가 필요한 이유는 인증에 필요한 소요일수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 필요하기 때문임.

->외국기관과의 연결에 행정절차가 필요

->외국어로 조사보고서(Inspection report)를 작성해야 하기에

->조사대상 농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토양, 식물체, 수질시료 등을 채취하여 분석실에 의뢰하여 분석해야 하기에 (수출품의 경우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함)

○ 분석이 필요할 경우 신청농가(농민 그룹, 또는 대규모 농장, 국영농장, 협동농장)는 추가적인 분석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중국은 국무원 산하에 국가품질관리감독을 맡는 검험검역총국이 있고 여기에는 다시 국가기술감독을 담당하는 검사검역총국, 국가인증을 인가하는 국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가 있으며, 국가기준을 결정하는 국가기준관리위원회가 있음

○ 중국의 유기식품, 녹색식품, 무공해농산물의 인증 획득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축되어 있음.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산하에는 국가인증기관인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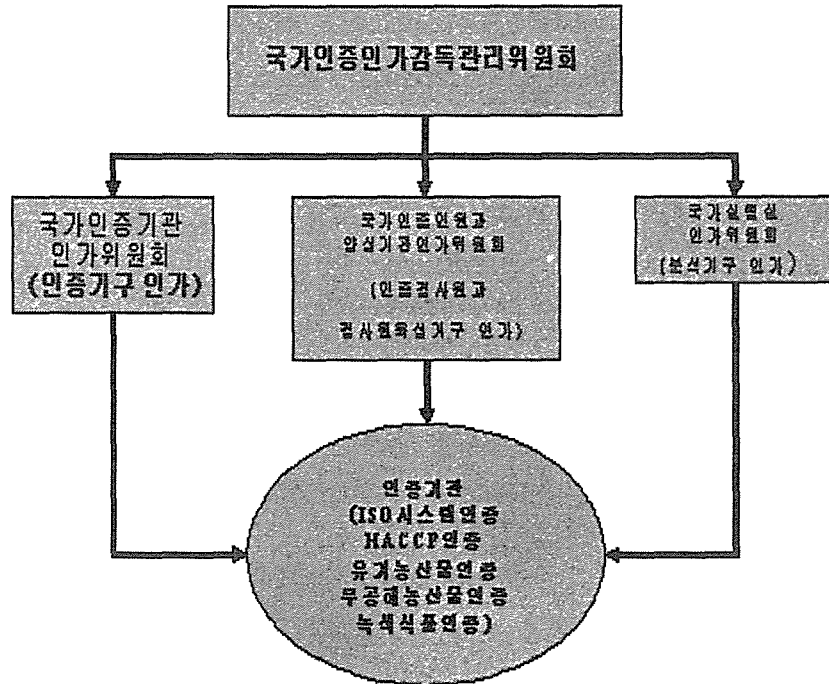
(인증기구 인가 업무를 담당), 인증위원과 조사관을 양성하는 기관을

인가해 주는 국가인증인원양성기관인가위원회, 인증에 경우에 따라 요구

되는 분석업무를 담당할 분석기관을 인가해주는 국가실험실인가위원회가

있음 (그림20 참조)

그림3 중국의 유기식품, 무공해농산물, 녹색식품의 인증획득 체계도



- 중국 유기식품은 중국유기농산물식품인증기준서에 따라 인증되고 있음  
->인증단체는 유기식품센터(OFDC; Organic Food Development Center),  
녹색식품센터(GFDC; Green Food Development Center), 유기차인증센터  
(OFTDC), 만태인증유한회사 등에서 담당하고 있음
- 녹색식품은 녹색식품제품인증기준서에 근거하여 인증되고 있음  
->인증단체는 녹색식품센터(GFDC; Green Food Development Center)가  
담당하고 있음  
->녹색식품은 중국 국내시장과 일본과 한국을 겨냥한 녹색식품(신선농산  
물)의 수출에 노력하고 있음. 유기식품발전중심(OFDC)이 가공식품  
위주로 유럽과 미국에 주로 그 겨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 임.
- 중국 무공해농산물은 무공해농산물관리법률에 근거하여 인증되고 있음  
(표2 참조)  
->무공해농산물의 인증은 각 성, 시, 현 정부가 담당하고 있음.

->인증에 무료이나 측정기관 분석과 무공해농산물 인증표시 사용에 필요한 소정의 비용은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녹색 식품 표지는 이미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구'의 비준을 받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 조건이 구비된 식품은 모두 녹색 식품 표지 사용을 신청할 수 있음

-> 그리고 향후 식품류 생산자로 즉 비비·농약·식품 첨가제 및 상점·음식점 등도 녹색 식품 전용 범위에 획분되어 녹색 식품 표지 사용을 신청할 수 있음.

○ 녹색식품의 인증 신청 절차

녹색식품 생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단위(소 조직체)와 개인은 녹색식품 표지 사용을 지원 신청하는 자는 모두 녹색식품 표지 사용권 신청인이 될 수 있음.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 혹은 소재지·자치구·직할시 녹색 식품 사무실에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신청한다.

(2) 신청인은 요구에 따라 < 녹색 식품 표지 사용 신청서 >, < 기업용 생산 정황 조사표 >를 써야 하며 생산 조직 규정·기업표준·산품등록 상표문서 복사본과 선금 이상 질량 검측 부문에서 낸 당년의 산품질량검측보고를 같이 소재지 성(구·시) 녹색 식품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3) 성(구·시) 녹색식품 사무실에서는 전문 인원을 파견하여 신청을 한 기업 및 원료산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산품 생산 과정에서의 질량 통제 정황을 확인하고 정식 보고서를 써서 제출한다.

(4) 성(구·시) 녹색식품 사무실에서는 성내의 권위 환경 검측 단위를 확정하고 그에 위탁하여 신청한 기업의 농업 환경 질량 평가를 진행한다.

(5) 상술은 자료 2부를 각 성(구·시) 녹색 식품 사무실에서 심사한 후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GFDC, Green Food Development Center)에 전송하여 심사 확인을 받는다.

(6)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에서 신청 자료 합격된 기업에 통지를 보낸 후 지정한 녹색식품검측중심에서 산품에 대해 질량·위생 검사를 한 것을 접수한다. 동시에 기업에서는 반드시 < 녹색 식품 표지준 설계 수책 >요구에 따라 녹색 식품 표지가 표시된 포장 방안을 중국 녹색 식품 발전중에 보고하여 심사 확인을 받는다.

(7)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에서 신청한 기업과 제품에 대해 최종 심사를 진행한 후 녹색식품표준산물생산을 신청한 기업과 < 녹색 식품 표지 상용 협의서 >를 계약 하고 녹색식품표지사용증서를 기업에 발급하여 사회에 공시한다.

(8) 녹색식품표지사용증서 유효기는 3년이다. 이 기간에 녹색 식품 생산 기업에서는 반드시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에서 위탁한 검측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 녹색식품표지사용협의 >를 이행해야 한다. 기간이 만료된 후 만일 계속 녹색식품표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듯이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에 다시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

○ 중국농업부에서 발급한 < 녹색식품표지관리방법 >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 기업에서 녹색식품표지사용권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 녹색식품표지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1) 녹색식품표지를 제품에 사용할 때 반듯이 < 녹색식품표지설계표준수책 >의 규범 요구에 맞게 정확하게 설계해야 하고 또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녹색식품표지사용단위와 개인은 반듯이 < 녹색식품표지사용협의 >를 엄격히 이행 하여야 한다.

(3) 녹색식품생산기업으로서 생산 조건· 공예· 상품 표준을 개변하고자 할 때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에 보고하여 비준을 알아야 한다.

(4) 항거할 수 없는 이유로 녹색식품 생산조건을 상실하였을 경우 생산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성· 지와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에 보고하여야 하고 녹색식품표지사용을 잠시 중지해야 하며 조건이 회복된 후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에서 심사 확인 후 표지 사용을 회복할 수 있다.

(5) 녹색식품표지번호사용권은 사용 확인한 제품에 한해서만 쓸수 있다. 중국 녹색식품발전중심의 비준이 없이 녹색식품표지와 번호를 다른 단위 혹은 개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6) 녹색식품사용권을 비준한 날부터 시작하여 유효기간은 3년이다. 녹색식품 표지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면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녹색식품표지 사용단위와 개인은 유효 사용 기한내에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에서 지정한 환보· 식품 검측 부분에서 표지 사용 상품 및 생태 환경에 대하여 진행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후 불합격된 것은 표지 사용권을 철회하고 본 사용기한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8) 표지상표 사용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침해당한 당사자는 <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에 근거하여 침해당한 당사자의 소재지 현급이상 공상 행정관리 부문에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 중국의 녹색식품표지관리

- > 녹색식품표지관리는 법률 관리 · 행정 관리 · 소비자 감독 관리 등으로 나눈다.
- > 녹색식품표지는 일종 질량 증명 상표이므로 사용시 반드시 <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일체 가짜 · 위조 혹은 그 표지와 근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위법 행위에 속하여 각 급 공상 행정부문에서는 모두 유관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 >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은 나라를 대표하여 녹색 식품발전을 관리하는 유일한 권리기관이며 < 녹색 식품 표지 관리 방법 >에 근거하여 표지에 대한 신청 · 자격 심사 · 표지 발급 및 사용 등을 전면적으로 관리한다. 각 성(시) 녹색식품 사무실은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에서 획득한 직책을 받고 또 각 지방 정부의 책임자의 지지하에 직접 녹색식품기업을 위해 복무한다.
- > 중국녹색식품발전중심에서 전국 범위내에서 설립한 식품검측망과 각 지방녹색식품사무실에서 위탁한 환경 보호 기관에서 형성한 검측망은 녹색식품 생태환경 및 산품질량에 대하여 기술성 감독 관리를 진행한다.

○ 중국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는 “중화인민공화국상품질량법”, “중화인민공화국상품질량인증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하기와 같은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 국가환경보호국 유기식품발전중심(OFDC, Organic Food Development Center, 이하 유기식품발전중심으로 약함)은 유기식품의 표지와 유기식품증서의 심사와 관리, 표지사용에 대한 감독 등을 책임지는 기관임

○ 유기식품발전중심에 유기식품표지사용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유기식품표지를 신청하려면 유기식품발전중심에 “유기식품표지신청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함.

(1) 영업허가증 혹은 등록증

- (2) 생산품 집행 표준
- (3) 상표등록증.

- 가공업회사는 그 외에 오염물 처리 정황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유기식품발전중심은 신청을 접수 한 후 15일 내로 심사를 하고 회답을 주어야 한다.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촌민위원회나 향 급 정부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 유기식품발전중심은 신청을 접수한 후 “유기식품생산가공기술규범”에 근거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3-6개월이며 유기식품생산전환과정의 생산품은 그 심사기간이 1-2년이다.
- 유기식품 신청인은 심사기간에 적극적으로 심사사업에 협조를 주어야 하며 정확하게 상관 자료들을 만들어 실제 상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생산, 가공, 저장, 운수 등 현장 검사를 받아야 하며 원 자료추적 심사와 생산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심사를 진행하여 “유기식품생산과 가공기술규범”에 부합되는 생산품은 유기식품생산발전중심에서 “유기식품증서”를 발급하며 유기식품표지를 사용하게 한다.
- “유기식품증서”는 유기식품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증명서이며 유효기간이 1년이다. “유기식품증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유효기가 되기 3개 월 전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함
- “유기식품증서”의 유효기 내에 아래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 (1) 증서 소유인이 변경되는 경우
  - (2) 생산품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 (3) 생산품 명칭을 변경되는 경우
  - (4) 새로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는 유기식품 표지 사용과 생산품의 질량에 대하여 추적 심사, 감독을 하여 사용자가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유기식

품생산과 가공기술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생산품은 “유기식품증서”를 몰수하여야 한다.

○ 인증소유자는 유기식품발전중심의 감독과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유기식품발전중심의 요구에 근거하여 장부를 건립하고 생산, 가공, 판매 등 자료를 심사 받아 한다.

○ 속임수를 쓰거나 다른 부정당한 수단을 통하여 “유기식품증서”를 얻은 경우에는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 그 증서를 몰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상품질량인증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벌금을 한다.

○ 가짜 “유기식품증서”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 현 급 이상의 공상관리부문에 보고하여 행위자로 하여 사용을 정지하고 손실을 배상하며 정질이 엄중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한다.

○ 유기식품증서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비영리적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용은 국가 물가국의 표준에 근거한다. 재정부 9356문건의 “생산품질량인증비용관리실행방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증서신청금액은 신청 비용, 분석검사비용, 검사 인원이 사용하게 되는 각종 비용 등이 포함되며 신청자는 신청되지 못해도 반드시 신청 금을 납부해야 한다.

1) 신청 비는 잠시 200원(생산자) ,400원(가공업자) 으로 결정 되어 있다.

2) 분석검사 비용은 측정하는 항목의 다소에 의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인 검사 표준은 우선 적에 의해 거둬.

3) 검사 인원의 각종 비용은 국가에서 규정된 표준에 따라 거두며 잠시 50원으로 결정하였음.

-> 허가를 받은 후 증서를 받는 값으로 2000원을 납부함

-> 유기식품표지관리생산품 판매의 0.5%-1%를 납부함

○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 의해 ISO 9000, ISO 14000 인증을 받은 곳도 있음

-> 인증단체는 현재 약 100단체에 이르고 있음.

-> 이중에는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증단체 15개가 포함되어 있음

-> IFOAM의 인정을 받기보다 인증기관 획득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임

○ 中國有機農業產銷經營協會, 中國有機茶研究所가 유기차에 대한 유기재배 인증을 하여 해외수출을 많이 하고 있음

표2 중국 유기식품, 녹색식품, 무공해농산물의 인증구조

- **유기농산물인증**
  - 인증기준 중국유기농산물, 식품인증기준서 (기칭)
  - 인증단체 OFDC, 녹색식품센터, 유기 차(茶)인증센터, 만태(萬泰)인증유한공사
- **녹색식품인증**
  - 인증기준 녹색식품제품인증기준서
  - 인증단체 녹색식품센터
- **무공해농산물인증**
  - 인증기준 무공해농산물관리법률
  - 인증단체 각 성(省), 시(市), 현(? )정부 (인증은 무료이나, 측정기관 분석과 무공해농산물 인증표시 사용에 국가 규정에 의거한 비용 납부)
- **HACCP인증**
  - 인증기준 국제 HACCP규격
  - 인증단체 약 100단체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 인가 취득)
- **ISO9000, ISO14000 인증**
  - 인증기준 ISO9001, ISO14001규격
  - 인증단체 약 1000단체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증단체 15개사 포함)
- **상관법들 :**
  - 중국식품위생법률
  - 중국식품위생법률

#### 4) 일본의 인증제도

○ 1999년 7월에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에 기초하여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한 일본 농림규격」을 제정하였는바, 해당 일본 농림규격에 의한 인증 표시가 부착된 것이 아닐 경우 「유기」의 표시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 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앞으로는 검사 인증을 받은 진정한 유기식품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인증 마크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유기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 관리를 실시함과 함께 소비자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서 1999년 말에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에 첨부할 새로운 유기 JAS마크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음.

○ 일본정부는 2000년부터 유기농산물 인증제를 실시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음.

- > 유기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만들어진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전과정을 검사하고 일정기준에 적합하면 인증마크나 유기농산물 표시 등을 허용하는 제도
- >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 유기표시를 금지하고 부적절한 표시와 판매에 제동 방침
- > 즉 유기농산물 인증제는 특별한 생산방법 등을 규정하는 특정 JAS (일본농림규격)제도가 준용되며 원칙적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 외에는 유기표시를 할 수 없는 강제성을 띄고 있음.
- > 전체적인 제도 운영은 농수산성이 관장하고 실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익법인, 민간단체 등이 담당하고 있음.

○ 일본 농림수산성 guideline에는 유기농업으로 발생한 제품을 「유기농산물 등」이라 표기하고, 아래와 같이 6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 ①유기농산물: 화학합성농약, 화학비료, 화학토양개량자재 등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재배하여 3년이 경과한 경우의 농산물
- ②전환기간중농산물: 유기농법 전환후 6개월 이상 3년이하의 농산물
- ③무농약재배농산물: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④무화학비료재배농산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⑤감농약재배농산물: 화학합성농약 사용횟수를 일반농법의 50%이하로 줄여 재배한 농산물
- ⑥감화학비료재배농산물: 화학비료 사용량을 일반농법의 50%이하로 줄여 재배한 농산물

○ 일본의 유기농산물, 유기식품 인증체계는 철저히 민간인증체도를 취하고 있음. 국가는 인증기관의 등록을 받아 인증기관으로 등록시키는 업무만을 담당하며, 모든 유기식품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단체가 담당하고 있음

->국가는 유기식품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있음

○ 인증기관은 철저한 민간인증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인증업무의 관리 감독은 국가가 담당

-> 정부(농림수산기술소비센터)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지도 감독을 담당

-> 인증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도 국가(농림수산기술소비센터)가 담당

-> 인증수수료는 민간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상한선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유기식품 가공업자, 유통업자도 모두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추어 있음

○ 유기식품 유통업자(도매상, 소매상)는 생산농가나 가공업자로부터 대단위 포장단위로 납품받아 다시 소규모 단위로 소포장을 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유통업자가 소포장 단위마다 유기식품 JAS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즉 JAS마크를 부착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생산농가, 가공업자,

유통업자가 모두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일본정부에 등록된 외국인증단체중에서 일본인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인증단체는 OCIA Japan, QIA Japan, Eco-cert Japan 등이 있음

○ 외국에 등록되어 유기사케, 유기녹차 등과 같은 유기식품을 외국에 수출하

는 일본인증단체는 JONA, NOAFA, AFAS 등이 있음

-> JONA(Japan Organic & Natural Foods Association)는 아르헨티나, 미국에 진출하여 등록되어 있음

-> NOAFA(Nippon Organic Agriculture Farming Association)는 중국에 등록되어 있음

-> AFAS(Agriculture and Foods Audit System)는 현재 중국, 한국에 지사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일본, 한국, 중국의 3개국의 인증단체로 특화하여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인증수수료는 소비자, 학자 등으로 구성된 인증단체의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수준 (50,000~100,000₩)이고, 상업적인 인증단체인 경우에는 비교적 비싼 수준인 200,000~300,000₩임

-> 상업적인 인증단체는 인증규약이 까다롭지 않고, 소비자, 학자가 주축으로 구성된 인증단체의 인증수수료는 인증규약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으로는 규모가 큰 인증단체는 유기농산물 생산규정이 그리 까다롭지 않고 느슨한 규정을 가지고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인증수수료도 그리 높지 않은 편에 속함.

-> 인증수수료는 적은 인증단체일수록 더 비싸고, 유기농산물 생산규정과 인증규정이 모두 까다로운 편으로 알려져 있음

○ 특히 OCIA는 일본인에게 그 상표명을 널리 알리고 싶은 까닭에 가장 loose한 생산규정을 가지고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

○ 외국에서 획득한 유기식품 표시를 일본에서는 자동적으로 별다른 추가적인 절차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

-> 단 한국의 유기인증 표시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한국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이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인증기관의 인증을 획득하여야 함.

-> 그러나 유럽연합의 회원국(독일, 스위스, 이태리, 영국, 네델란드, 프랑스, 스페인 등),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과는 “유기식품

규격 동등협약(Equivalent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음.

- > 따라서 이들 국가의 유기식품은 아무런 제약이나, 추가적인 검사없이 인증을 획득한 유기농산물, 유기식품은 일본에서 판매 될 수 있음
- > 일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유기농산물이 일본에 수출될 때 일본인증기관의 인증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일본에 유기식품을 수출할 때에는 한국과 똑같이 일본인증기관의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음

○ 또한 일본 정부는 인증수수료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있음. 일본정부는 인증기관이 각각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치하고 있음.

- > 인증 신청자(생산농가,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가 인증단체의 명성, 인증단체 라벨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정도, 인증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어떤 인증단체에 신청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고 있음

○ 일본이 유럽연합,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과 동등협약을 맺은 것은 이들 국가의 유기식품규격이 일본의 JAS기준보다 더욱 엄격하기 때문임.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인증을 획득한 유기농산물, 유기식품은 일본에서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임.

- > 이같은 “유기식품규격 동등협약”을 체결하여 유기식품의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하도록 IFOAM, 유럽연합, 미국이 일본 농림수산성에 로비를 꾸준히 하였음
- > 일본은 유기식품 수입량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으므로 그 로비의 첫 대상국가가 되었으나, 향후 우리나라 농림부도 로비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됨.
- > 일본 정부는 비농업 부문의 협력을 얻기 위해 유기농산물, 유기식품의 교역부문에서 불공정협약을 체결한 것임.
- >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비해 유기농업에 대해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음. 한국정부는 세계에서 첫 번째로 친환경농업육성법<sup>7)</sup>을 만들 만큼 친환경농업, 유기농업에 깊이 개입하는 정부정책을 펴 왔음

---

7)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도입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은 아직까지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음. 일본 유기농업에서는 한국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 특히, 농림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홍보에 크게 부러워하고 있음



○ 일본의 공익법인의 인증기관(사단법인 포함)과 순수 상업적 민간 인증기관 중에서 활발한 인증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은 다음과 같음

● 공익법인의 인증기관

■ IOIA (Independent Organic Inspectors Association) Japan

<http://www.ioia.net/>

■ 사단법인 日本農林規格協會 (JAS協會)

<http://www.jasnet.or.jp/rule/index.html>

■ 農林水産省消費者の部屋

<http://www.maff.go.jp/soshiki/syokuhin/heyu/HEYA.html>

■ 獨立政法人 農林水産消費技術센터

<http://www.cfqlcs.go.jp/>

● 민간 인증기관

◆ 株式會社 AFAS SEQ (東京都中央區)

<http://www.afaseq.com/index.html>

◆ 綾町(宮崎縣東諸縣郡)

<http://www.miyazaki-nw.or.jp/ayatown/>

◆ 株式會社 에스지 [에스E자판(神奈川縣横浜市)]

<http://www.sgsgroup.co.jp/>

◆ 特定非營利活動法人 오가닉 인증協會 (熊本縣熊本市)

<http://www.organic-cert.org/>

◆ NPO法人 環境保全米ネットワーク [ク (宮城縣仙台市)]

<http://www.epfnetwork.org/>

- ◆ キュ”[”Eエイ”Eアイ”Eジャパン有限?社(神奈川県川崎市)  
<http://www.qai.jp/>
- ◆ 全?愛農?(三重縣名賀郡)  
<http://www.ainou.or.jp/>
- ◆ 東洋ビ”[ネット 株式會社(東京都中央區)  
<http://www.toyo-b-net.co.jp/>
- ◆ 社團法人長崎縣食品衛生協會(長崎縣西彼杵郡)  
<http://member.nifty.ne.jp/nagasaki~sk/>
- ◆ 特定非營利活動法人(日本オ”[ガニックナチュラルアンドフ”[ズ協會  
(東京都中央區)  
<http://www.jona.organic.co.jp/>
- ◆ 財團法人日本穀物檢定協會東京都中央區)  
<http://www.kokken.or.jp/>
- ◆ 特定非營利活動法人 日本有機農業生産團體中央會 (東京都千代田區)  
<http://www.yu-ki.or.jp/>
- ◆ 財團法人山形縣農業振興機構(山形縣山形市)  
<http://www.s-kikou.com/>
- ◆ 特定非營利活動法人有機農業推進協會(神奈川県平塚市)  
<http://www3.ocn.ne.jp/~yusuiky>

○ 인증수수료는 인증 획득 유기농산물의 0.01%가 적당하다는 원칙하에 인증 기관이 인증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인증수수료의 상승의 의미가 있으므로 토양, 수질 검사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토양, 수질 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만큼의 의심이 가는 재배과정의 문제점 또는 가공과정, 유통과정, 보관과정, 운송과정, 교역과정의 문제점이 인증조사과정에서 노정되는 경우 당연히 인증을 해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 조사관의 현지 조사보고서에 의해 인증기관 인증위원회 인증위원의 판단으로 최종 결정

○ 인증조사관의 전국적 모임이 결성되어 있음, JOIA(Japan Organic Inspector Association, 日本検査員協會).

-> 따라서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 인증조사가 인증기관과 계약을 맺은 제3자 조사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 인증기관은 그 때 그 때 책임자라고 판단되는 조사관을 계약으로 고용하여 조사를 시키고 있음

-> 한국에도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이같은 인증조사관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사관은 년 4 ~5회 인증조사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인증농가는 년 1회 유기농업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인증기관이 조사관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효고현 有機農業研究會<sup>8)</sup> 등은 인증조사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의 유기농산물은 약 80% 내외가 직거래 형태로 유통되고 있어 인증이 필요없는 경우가 대부분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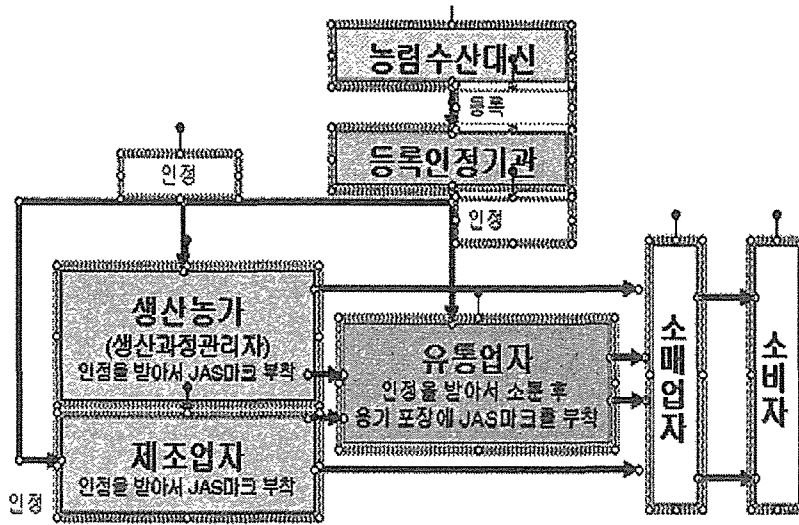
-> 소비자는 생산자의 유기재배 표시를 전폭 신뢰하고 있음.

-> 일본 소비자도 무농약과 유기재배가 비슷한 것으로 혼동하고 있음

---

8) 효고현 有機農業研究會(회장 Yasuda교수)는 다수의 인증조사관을 계약관계에 두고 있음. 전국에서 3~4위로 많은 수의 조사관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음

그림4 일본 유기농산물, 유기식품 인증체계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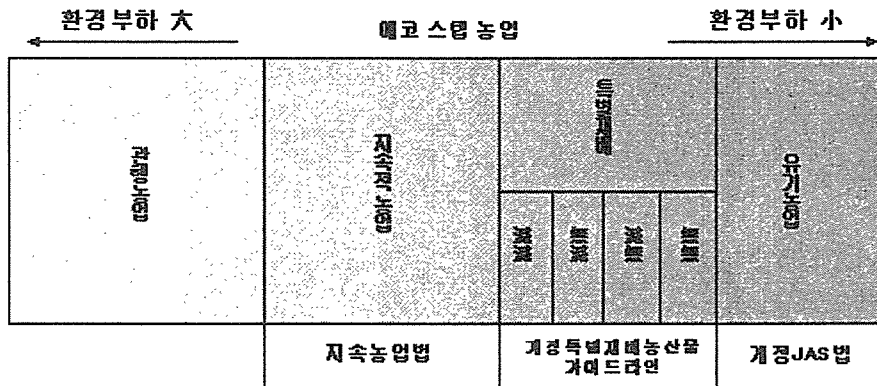


○ 일본의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산물, 특별재배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에 해당하는 특별재배는 다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되어 있음 (그림22 참조)

- >무화학비료, 무농약 수준인 무무(無無)
- >감화학비료, 무농약 수준인 감무(減無)
- >무화학비료, 감농약 수준인 무감(無減)
- >감화학비료, 감농약 수준인 감감(減減)

○ 유기농산물 인증은 개정JAS법에 근거하여, 특별재배는 개정특별재배농산물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각각 인증되고 있음

그림5 일본 친환경농업의 구분



농업·식품관련 인증 방법 등

-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 농림수산물소매안전인증
- 후진노드심식물안전관리부
- 식고기드래잉시별관리법
- HACCP법 개정
-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 JAS법 개정 (유기, 생산관리, 별과감 등)
- 특정제품농산물거래드래잉 개정
- 식품의 안전과 안전을 위한 정책 개요
- 농과 농 경영 플랜(PLAN)
- BSE의 대책별조치법
- 식료·농업·농촌개발법
- 농지법

○ 일본의 유기농산물 및 유기제품 인증에 있어서의 신청, 조사, 판정 및 획득과정은 그림23과 같음.

- >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입업자는 농림수산물성에 등록 인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
- > 인증기관은 1차적으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조사관(일본에서는 심사원이라고 칭함)에게 조사서류를 송부
- > 조사관은 유기농가 또는 가공, 유통, 수입업체 현장을 방문하고 인터뷰를 가진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보고
- > 인증기관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와 인증신청서류를 인증위원회(일본에서는 판정위원회라 칭함)에 송부하여 인증여부 심의를 의뢰
- > 인증위원회는 조사보고서와 인증신청서류를 토대로 인증여부를 결정하여 인증기관에 통보
- >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의 결정을 신청 생산농가, 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입업자에게 통지 (인증획득의 경우 인증서를 교부)

○ 일본의 경우에도 모든 縣(지자체)에서 일부 친환경농산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은 지자체 단체장이 책임지고 해주는 것이 타당할 듯.

○ 일본 AFAS( <http://www.afasseq.com/index.html> )의 경우 ISO14001, ISO9001을 획득하였으나, 아직 IFOAM의 인정기관은 되지 못하였음. JONA ( <http://www.jona.organic.co.jp/> )와 IOIA ( <http://www.ioia.net/> ) Japan의 경우 IFOAM의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그림6 일본의 유기농산물 및 유기제품 인증에 있어서의 신청, 조사, 판정 및 획득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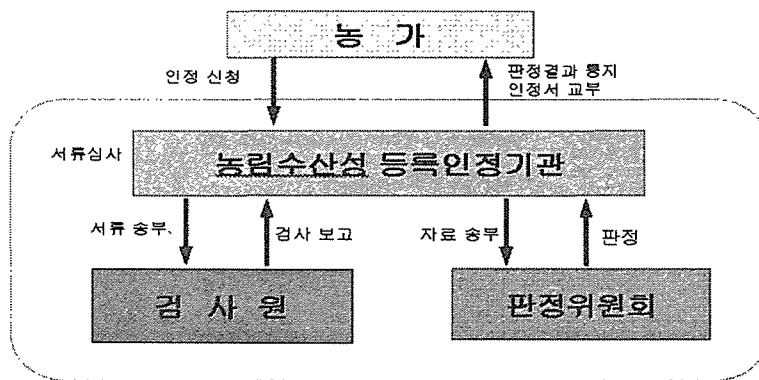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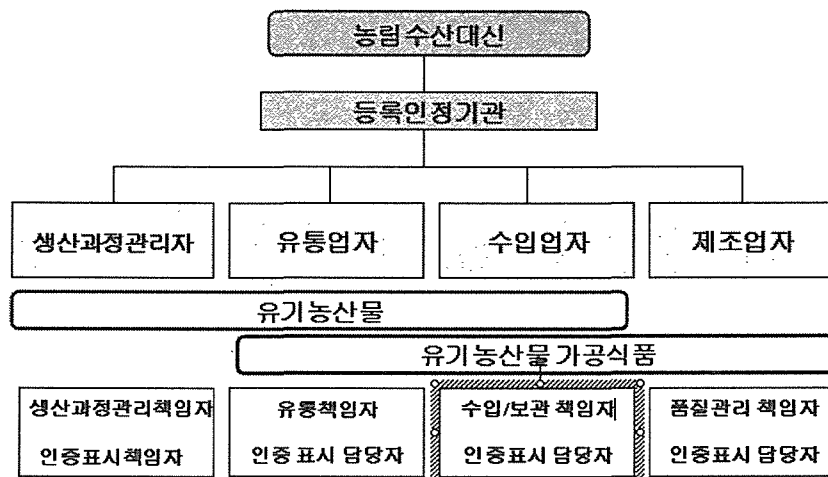


그림7 일본에 있어서의 JAS 유기인증의 종류



○ 일본에 있어서의 JAS 유기인증의 종류는 표3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 유통업자,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 수입업자, 유기가공업자 등이 각각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유통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창고업자 등이 각각 인증을 획득하여 효율적인 유기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보관, 교역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처함이 적절 할 것임

○ 생산농가, 유통업자, 수입업자는 유기농산물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유통업자, 수입업자, 가공업자는 유기가공식품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우 인증표시는 생산관리담당자(농장주)가 획득하며,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 유통업의 경우 인증표시는 유통책임자(사업주)가 획득함. 한편 수입업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품의 인증표시는 수입/보관책임자인 사업주가 획득하며, 유기가공업의 경우 인증표시는 품질관리책임자가 각각 획득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이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가공업자, 유통업자 등에 대해 각각 유기식품 인증을 획득토록 하여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이 유기농업의 원리, 원칙에 따라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체제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사관이 유기농가를 방문하여 인증조사에 필요한 제반 항목을 조사하는데, 그 인증조사항목으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음.

-> 각 인증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종묘 구입, 자재 구입, 시비관리, 병충해 방제, 농기계 및 기구의 관리, 운송 선별 조제 세척 저장 포장 출하 표시 등에 관한 제반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조사

-> 생산과정에 관련한 조사항목은 재배기준, 수확방법, 영농일지, 재배달력, 사용자재 리스트 등임

->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생산과정을 조사함과 동시에, 인증 표시, 인증후의 출하 및 판매, 기록작성, 증거서류의 보존관리 등에

## 관한 사항을 별도로 조사

### ○ 가공업자의 인증은 다음과 같은 분야의 조사를 거쳐 인증이 확정됨 (표4 참조)

- > 생산시설: 제조 및 가공시설, 생산공정, 급수 및 배수시설을 조사하며 주요 조사항목은 공장주변지도, 공장배치도, 생산설비 배치도, 기계목록(전용/공용<sup>9)</sup>), 제조/가공 공정도, 물질수지(Material Balance), 사용한 물/용액의 종류, 처리시설 등
- > 보관시설: 원료제품, 제품보관에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며 조사항목은 보관장소, 보관배치도 약도, 보관방법(전용/공용) 등
- > 품질관리시설: 검사실, 검사항목, 검사방법 등
- > 인증시설: 검사평가 장소, 인증표시 관리장소 등
- > 품질관리: 연간 생산계획, 품질관리규정, 품질관리기록과 증거서류 (1년 이상 보관), 부적합 관리기록, 고충기록

### ○ 유통업자에 대한 인증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음

- > 소포장 시설: 소포장 가공시설에 대한 조사항목으로는 공장주변 지도, 공장배치도, 소포장생산설비배치도, 기계목록(전용/공용) 등
- > 보관시설: 원료보관, 제품보관에 관련한 조사항목으로는 보관장소, 보관배치도, 보관시설 조감도, 보관방법(전용/공용)
- > 품질관리시설: 검사실, 검사항목, 검사방법 등
- > 인증표시시설: JAS인증표시의 관리장소
- > 소포장 실시: 연간 생산계획, 소포장관리규정, 소포장 관리기록과 증거기록(1년 이상 보존), 부적합 판정 소포장 관리기록, 고충기록 등

### ○ 수입업자도 인증을 획득하여 외국으로부터 유기농산물, 유기식품을 수입하고 있음

- > 수입농산물, 수입식품의 수용시설: 공장주변지도, 공장배치도, 보관시설 배치도, 기계목록(전용/공용), 수용보관공정도
- > 보관시설: 원료보관, 제품보관관 관련한 조사항목으로 보관장소, 보관배치도, 약식도, 보관방법(전용/공용) 등

---

9) 다른 일반농산물, 일반식품과 같이 보관하는 시설인자 또는 별도의 보관장소를 각각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 원칙적으로 유기농산물, 유기식품은 일반농산물, 일반식품 보관시설과는 별도의 보관시설을 요구하고 있음.



- > 품질관리시설: 검사실, 검사항목, 검사방법 등
- > 인증표시시설: JAS인증표시의 관리장소

○ 일본의 인증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 생산농가, 가공업자가 지불하는 인증수수료는 평균 2,290,000원이며, 소매업자, 수입업자가 지불하는 인증수수료는 1,446,000원 가량임.
- > 개인사업 인증단체(상업용)의 인증수수료는 최저 2,000,000원 내지 최고 3,000,000원
- > 그러나 일부에서는 영가의 인증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증단체들이 있음. 소비자가 중심으로 설립한 인증단체에서는 인증수수료를 최저 수준에서 부과하고 있음 (최저 500,000원 내지 최고 1,000,000원 정도)

표3 일본에 있어서 유기생산자 인증 조사의 항목

JAS시행규칙 제34조(JAS법 제15조)

규 정	내부규정 ①종묘, 자재의 수납 ②비배(肥培)관리, 유해동식물의 방제 ③기계기구 등 설비 ④운송·선별·조제·세척·저장·포장 ⑤출하·표시 ⑥그 외 필요 사항	생산과정관리규정 재배기준  수확 절차 (수확 방법) 자료 리스트 재배 달력 농작업 일지
	격부 규정 ①생산과정 검사 ②격부 표시 ③격부 후의 출하 및 처분 ④기록 작성, 증거서류의 보존관리 ⑤그 외 필요 사항	격부 규정 격부검사기록 증표관리기록·보고 불합격품처분 기록
격부 조직	조직도, 역할·책임	
자격자	생산과정관리책임자☆ (1인) 격부책임자☆ (1인)	생산과정관리담당자 (1인 이상) 격부담당자☆ (1인 이상) ☆강습회 수강자일 것

규 정	내부규정 ①종묘, 자재의 수납 ②비배(肥培)관리, 유해동식물의 방제 ③기계기구 등 설비 ④운송·선별·조제·세척·저장·포장 ⑤출하·표시 ⑥그 외 필요 사항	생산과정관리규정 재배기준  수확 절차 (수확 방법) 자료 리스트 재배 달력 농작업 일지
	격부 규정 ①생산과정 검사 ②격부 표시 ③격부 후의 출하 및 처분 ④기록 작성, 증거서류의 보존관리 ⑤그 외 필요 사항	격부 규정 격부검사기록 증표관리기록·보고 불합격품처분 기록

격부 조직	조직도, 역할·책임	
자격자	생산과정관리책임자☆ (1인) 격부책임자☆ (1인)	생산과정관리담당자 (1인 이상) 격부담당자☆ (1인 이상) ☆강습회 수강자일 것

표4. 제조업자의 기술적 수준 (JAS 시행규칙 제34조, JAS법 제15조)

시 설	생산시설 제조·가공시설	공장 주변 지도
		공장 배치도, 생산설비 배치도
		기계 목록 (전용·공용)
	생산공정	제조·가공공정도
		물질수지(material balance)
	급수 및 배수시설	사용수의 종류, 처리시설
	보관시설 원료보관 제품보관	보관장소
		보관배치도 약식도
품질관리시설 격부시설	보관방법 (전용·공용)	
	검사실,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평가 장소, 증표 관리장소
관 리	품질관리 실시 품질관리규정 작성 제조공정의 이상, 고충 등 처리대책 내부규정에 대한 정기적인 재고 및 주지 철저	연간 생산계획
		품질관리규정
		품질관리기록과 증거서류 (1년 이상 보존)
		부적합관리기록, 고충 기록

표5 일본에 있어서 소포장 유통업자 인증조사의 항목

JAS시행규칙 제34조(JAS법 제15조)

시 설	소분 시설 소분가공시설	공장주변 지도
		공장배치도, 소분생산설비배치도
		기계목록 (전용·공용)
	소분 공정	소분가공공정도
	보관시설 원료보관 제품보관	보관장소
		보관배치도·조감도
	품질관리시설 격부표시시설	보관방법 (전용·공용)
검사실, 검사항목, 검사방법		
		JAS 증표의 관리장소
관 리	소분 실시 소분관리규정 작성 소분공정의 이상, 고충 등 처리대책 내부규정의 정기적인 재고와 주지철저	연간생산계획
		소분관리규정
		소분관리기록과 증거서류 (1년 이상 보존)
		부적합 관리기록, 고충 기록

규 정	내부 규정 ①원재료 수용과 보관 ②JAS마크 표시의 확인 ③소분방법 (공정) ④기계기구 등 설비 ⑤출하·운송 ⑥그 외 필요 사항	소분관리규정 가공관리규정 (순서) 품목별 원재료 입하출하 기록 재고 기록 감사추적 가능한 기록시스템 위생관리규정 (순서) 생물해(生物害) 방제규정 (순서) 제품목록 운송회사 목록
	격부 규정 ①소분 공정 검사 ②격부 표시 ③격부 후 물건의 출하와 처분 ④기록의 작성과 증거서류의 보존관리 ⑤그 외 필요 사항	격부 규정 격부 검사 기록 증표관리기록·보고 불합격품 처리기록 라벨 리스트와 라벨·포장재 샘플
격부 조직	제조·영업부문에서 실질적으로 독립한 조직으로 권한을 가질 것 조직도, 업무분담 (역할·책임)	
자격자	소분책임자☆ (1인) 소분담당자 (1인 이상) 격부표시담당자☆ (1인 이상) ☆강습회 수강자일 것	

표6 일본에 있어서 수입업자 인증조사의 항목

JAS시행규칙 제34조(JAS법 제15조)

시 설	수용시설	공장주변지도
		공장배치도 보관설비배치도
		기계 목록 (전용·공용)
	수용과 보관작업 공정	수용보관공정도
	보관시설	보관장소
		원료보관
제품보관		보관방법 (전용·공용)
품질관리시설	검사실, 검사항목, 검사방법	
격부표시시설	JAS 증표의 관리장소	
관 리	수용·보관의 실시 수용보관관리규정 작성 수용보관공정의 이상, 고충 등 처리대상 내부규정의 정기적인 재고와 주지철저	연간 수용 (보관) 계획
		수용보관관리규정
		수용보관관리기록과 증거서류 (1년 이상 보존)
		부적합 관리 기록, 고충 기록

규 정	내부규정 ①원재료의 수용과 보관 작업공정의 확립 ②외국정부 증명서 확인 ③그 외 필요사항	수용보관관리규정 감사추적가능한 기록시스템 B/L, 인보이스 유기인정서 T/C 무혼증 증명서 위생관리·병충해 방제규정 (순서) 제품 목록 운송회사 목록
	격부규정 ①격부 표시 ③격부 후의 출하 및 처분 ④기록의 작성, 증거서류의 보존관리 ⑤그 외 필요사항	격부 규정 격부검사기록 증표관리기록·보고 불합격품처분 기록
격부 조직	제조·영업부문에서 실질적으로 독립한 조직으로 권한을 가질 것 조직도, 직무분담 (역할·책임)	
책임자	수용보관책임자☆ (1인)      수용보관담당자 (1인 이상) 격부표시담당자☆ (1인 이상)      ☆강습회 수강자일 것	

○ 인증조사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조사 및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각 인증기관의 인증기준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한 것임)

① 재배포장 확인

- > 서류와 실지병행 확인
- > 인증신청 작물의 파종전 2년간의 투입자재내용 확인

② 서류심사

- > 생산시설: 주변으로부터의 농약 비산 여부
- > 농업용수의 금지자재 혼입, JAS규격 준수 등
- > 보관시설: 유기농산물 이외의 농산물 혼입여부
- > 내부규정: 사용종묘 관련 자료, 비배관리, 유해동식물방제, 생산에 사용된 기계 및 기구, 수송, 선별, 출하 등에 관한 사항

③ 실지검사 (검사계획서 작성)

- > 청취: 신청서류 확인
- > 시설검사: 포장, 수로, 곳간, 가공장, 자재보관, 육묘장소, 보관창고 등
- > 청취 및 시설검사 종합정리
- > 검사보고서 정리

○ 일본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사후 관리 감

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

- > 조사는 년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함 (단, 필요시 긴급조사를 실시)
- > 조사는 자재구입, 장표, 저장 등 기록류를 활용하여 실시
- > 그러나 동일한 인증기관에 대한 4회이상 연속조사는 금지하고 있음
- >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부적합 의심이 가는 경우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함.

○ 인증기관이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 및 규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하기와 같은 몇가지 수준의 벌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① 인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불법 및 규정위반 사실
  - > 표시 및 표시제거 위반
  - > 인증기관 지정 양도 및 개선명령 위반
  - > 기술기준 부적합, 허위보고, 검사거부 및 방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한 사례 등
- ②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 및 규정위반 사실
  - > 유기인증표시 위반행위
  - > 인증표시의 제거위반
  - > 인증기관 양도행위 등
- ③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 및 규정위반 사실
  - > 인증표시의 제거명령 등에 위반
  - > 표시사항 준수 의무 위반
  - > 명칭 제거명령 위반
  - > 검사거부, 검사방해, 검사기피 등

○ 일본에는 2004년 12월 10일 현재 JONA 등 86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국내 인증기관 66개, 국외 인증기관 20개)

- > 별표 인증기관 명부 참조

[http://www.cfqlcs.go.jp/administrative\\_information/registration\\_organization/conditions/besshil.htm](http://www.cfqlcs.go.jp/administrative_information/registration_organization/conditions/besshil.htm)

○ 지정받기 위한 인증기관 신청 수수료는 95,400엔이며, 갱신의 경우 81,400엔으로 정해져 있음.

○ JAS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증 관련 수수료 규정은 다음과 같음

사 항		수수료 금액	비고(근거 조문)
격부수수료	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가 행하는 생산의 격부	1건당 19,800 엔	법 제14조제3항
	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가 행하는 일반재 및 합판의 등급 결정	1건당 7,200 엔	
인정수수료	농림수산대신이 행하는 제조업자 및 생산 행정관리자의 인정	229,100 엔	법 제15조 제7항
	농림수산대신이 행하는 소매업자 및 수입업자의 인정	144,600 엔	법제15조의6 제2항 및 제15조의7 제4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법제15조 제7항
	농림수산대신이 행하는 외국제조업자 및 외국생산행정관리자의 인정	160,900 엔 + 여비(2명분)	법제19조의5 제3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법제15조 제7항
	농림수산대신이 행하는 외국소매업자의 인정	160,900 엔 + 여비(2명분)	
등록및등록갱신수수료	등록격부기관 등록수수료	41,500 엔	법제16조제1항. 현행 34,100엔
	" 등록갱신 수수료	32,200 엔	법제16조의2제2항에 있어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등록인정기관 등록수수료	95,400 엔	법제17조의6의제1항
	" 등록갱신수수료	81,400 엔	법제17조의6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법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제16조제1항
	등록외국격부기관 등록수수료	39,900 엔 + 여비(2명분)	법제19조의6의2 제1항
	" 등록갱신수수료	30,600 엔 + 여비(2명분)	법제19조의6의2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법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법제16조제1항
	등록외국인정기관 등록수수료	51,200 엔 + 여비(2명분)	법제19조의6의4 제1항
	" 등록갱신수수료	37,200 엔 + 여비(2명분)	법제19조의6의4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법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법제16조제1항

※외국에 관계하는 여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인정 또는 등록의 심사에는 일반직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쇼와25년 법률 제95호)제6조제1항 제1호 이에 규정하는 행정직 봉급표(1)에 의한 직무등급이 6등급인 직원2명이 출장하는 것으로 하고, 국가공무원 등의 여비에 관한 법률

(쇼와 25년 법률 제114호)의 규정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여비금액으로 함

○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면 5년간 인증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음  
(지정유효기관 5년).

○ 인증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자격기준은 하기와 같음. 별도로 인증기관의 인증위원회 인증위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이는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선진국의 보다 발전된 인증체계에서 인증위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임. 일본의 인증기관과 인증시스템은 구미와 비교하여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음.

- > 대학 또는 전문학교 이상 농산물/식품의 생산 및 가공 관련 교과목 이수/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유기농산물의 생산 또는 농산물 관련 지도/ 조사/ 시험연구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고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서 농산물/식품의 생산 및 가공 관련 교과목 이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유기농산물의 생산 또는 농산물 관련 지도 / 조사/ 시험연구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자
- > 유기농산물의 생산 또는 농산물 관련 지도/ 조사/ 시험연구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 위 자격과 동등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 인정되는 자

○ 인증기관에 종사할 인원은 상기의 자격을 가진 자를 다음의 인원만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규정하여 인증위원과 조사관의 자격을 동일시 규정하였는데, 이는 인증위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의 국가와 너무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독일 인증위원의 자격에 관련한 규정 참조), IFOAM 인증기관 지정의 규정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같은 일본의 규정을 따르지 말고 유럽과 미국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인증위원은 인증기관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국제 인증기관 지정에서는 가장 중요시 보는 항목임. 유럽의 경우 인증위원은 분야별로 1인씩 약 8명이 요구되고 있음(토양 및 비료, 재배기술, 환경평가, 잡초, 병충해, 축산, 가공, 유통)

- >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조사관은 2인 이상으로 포장규모 및 수에 따라 필요한 인원
- > 인증 판정업무에 종사하는 인증위원은 1인 이상으로 포장의 수에 따라 필요한 인원

○ 일본의 경우 인증기관에 대한 분석시설 등 일체의 시설규정이 없음. 이는 유럽 및 미국과 동일함.



○ 인증기관은 개정 JAS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한 다음과 같은 분야의 인정업무규정 두고 있음.

- > 인증의 절차, 인증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함
- > 이에는 인정업무의 숙지규정, 검사 인정의 상호독립성, 인증의 권한과 인증 책임의 명확성을 규정하여야 함
- > 또한 인정의 적정한 실시를 위한 내부감독 규정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인증기관은 설혹 지정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인정기관의 등록 취소 및 1년 이내 업무의 정지를 받을 수 있음

- > 인증기관 또는 인증업무 종사원이 벌금 이상의 형벌 종료후 1년이내일 경우 (등록취소)
- > 등록기준을 위반하였거나, 경제적 기초가 미비하거나, 불공정한 인정업무 사례가 드러날 경우 등
- > 지정 등록된 인증업무이외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행위
- > 부정한 수단에 의한 등록신청이 드러난 경우
- > 명령 또는 규정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인증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표7. 일본 인증제도의 개괄적 요약

일본	
<b>1. 인증제도(총괄)</b> ○ 인증규정(법령)  ○ 인증기관  ○ 인증체계 및 사후관리	○ 농림물자의규격화및품질표시적정화에관한법률(JAS법) -농림수산성 고시  ○ 민간인증기관  ○ 정부(농림수산기술소비센터)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지도·감독, 인증농산물 사후관리
<b>2. 농산물인증</b> ○ 인증수수료	○ 인정수수료 -생산자 229,100엔 -소매·수입업자 144,600엔 -외국생산자등 160,900엔  ○ 출장비(외국) : 2인  ○ 1년 단위로 검사하며 비용은 최초 인증과 같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대상</li> <li>○ 인증유효기간</li> <li>○ 인증기준(유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li> <li>○ 1년 단위</li> <li>○ 경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 이상 영농자재 사용 및 생산자료 관리</li> </ul> </li> <li>○ 농장 등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농장과의 명확한 구분</li> <li>- 재배포장의 재배방법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년생 : 최초 수확전 3년</li> <li>· 기타 파종 또는 재식전 2년</li> </ul> </li> <li>- 채취 3년전부터 금지자재를 미사용한 포장</li> </ul> </li> <li>○ 농장 등의 비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비사용, 생물기능 활용, 허용자재 사용만으로 농지생산력을 유지</li> </ul> </li> <li>○ 종묘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동식물 방제기준, 수송, 선별 등 기준에 적합한 종묘</li> <li>- 종묘전환 DNA 기술을 이용한 것이 아닌 것</li> </ul> </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동식물의 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종적방제, 물리적방제, 생물적방제 등으로 실시</li> </ul> </li> <li>○ 수송·선별·저장 등과 공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송·선별·조제·세척·저장·포장 등 공정에서 유기 이외의 일반농산물과 혼합금지</li> <li>- 유해동식물 방제 및 품질유지자재는 별도 허용자재만 사용</li> </ul> </li> </ul>

	일본
<p>○ 인증심사 절차 등</p>	<p>○ 재배포장 확인 -서류와 실지병행 확인 -과종전 2년간의 투입자재내용 확인</p> <p>○ 서류심사 -생산시설: 주변비산 여부 -용수의 금지자재 혼입, JAS규격준수 등 -보관시설: 유기농산물 이외의 농산물 혼입여부 -내부규정: 사용종묘 관련자료, 비배관리, 유해동식물방제, 생산사용기계 및 기구, 수송, 선별, 출하 등에 관한 사항</p> <p>○ 실지검사 (검사계획서 작성) -청취: 신청서류 확인 -시설검사: 포장, 수로, 곳간, 가공장, 자재보관, 육묘장소, 보관창고 등 -청취 및 시설검사 종합정리 -검사보고서 정리</p>
	일본
<p>○ 사후관리</p>	<p>○ 조사 -년1회 실시(필요시 긴급조사) -조사는 기록류를 활용 (자재구입, 장포, 저장등) -동일한자의 4회이상 연속조사금지 -긴급조사: 부적합 의심이 가는경우 특정부문에 한정</p>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자 제재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의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 및 표시제거 위반</li> <li>- 격부전 양도 및 개선명령위반</li> <li>- 기술기준부적합, 허위보고, 검사거부 및 방해, 부정한 방법인정 등</li> </ul> </li> <li>○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인증표시위반행위</li> <li>  격부표시의 제거위반</li> <li>- 격부전 양도행위 등</li> </ul> </li> <li>○ 50만엔 이하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부표시의 제거명령등에 위반한자</li> <li>- 표시사항 준수위반자</li> <li>- 명칭제거명령 위반자</li> <li>- 검사거부, 방해, 기피자</li> </ul> </li> </ul>
<p><b>3.인증기관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기관현황</li> <li>○ 표시항목</li> <li>○ 지정수수료</li> <li>○ 지정유효기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ONA 등 79개 기관 (국내65, 국외14)</li> <li>○ 유기JAS 마크</li> <li>○ 건당 95,400엔 (갱신 81,400엔)</li> <li>○ 5년</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업무 종사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또는 전문학교 이상 농산물(식료품)생산(가공) 관련과목 이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유기농산물의 생산 또는 농산물 관련지도·조사 시험연구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li> <li>- 고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서 농산물(식료품)생산(가공)관련과목 이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유기농산물의 생산 또는 농산물관련지도·조사 시험연구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li> <li>- 유기농산물의 생산 또는 농산물관련지도·조사 시험연구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li> <li>- 위 자격과 동등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 인정되는 자</li> </ul> </li> <li>○ 인증업무 종사자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에 종사하는 자는 2인 이상으로 포장규모 및 수에 따라 필요한 인원</li> <li>- 판정에 종사하는 자는 1인 이상으로 포장의 수에 따라 필요한 인원</li> </ul> </li> </ul>

일본	
○인증기관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규정 없음</li> <li>○ 인정업무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업무의 숙지규정, 기술기준 검사부문과 검사 인정의 상호독립성, 권한 및 책임의 명확성</li> <li>- 인정의 적정한 실시를 위한 내부감독 규정</li> </ul> </li> <li>○ 농림수산 대신은 등록인정기관에 대해 인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인정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 서류 등을 검사</li> </ul>

일본	
○위반자 제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인정기관의 등록취소 및 1년내 업무의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또는 종사원 벌금이상 형벌 종료후 1년내(등록취소)</li> <li>- 등록기준위반, 경제적기초 미비, 불공정한 인정 등</li> <li>- 인가받은 인정업무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li> <li>- 부정한 수단에 의한 등록신청</li> <li>- 명령 또는 규정처분 위반</li> <li>- 정당사유없이 1년이상 인정업무를 하지 않을시</li> </ul> </li> </ul>

구 분	우리나라	일 본 (‘01.4.1부터 시행)
법적근거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산물가공업육성법 식품위생법(축산물 예외)	JAS법
적용범위	농·축산물(가공품)	농산물 및 가공식품
인증주체	정부 또는 민간인증기관	민간인증기관
표시규제	인증을 받지 않으면 표시 못함(강제) 가공품은 예외	인증을 받지 않으면 표시하지 못함(강제)
표시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농산물(가공품)</li> <li>· 전환기 유기농산물</li> <li>· 무·저농약 농산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li> <li>· 전환기간중 유기 (무·감농약 등은 추후 검토)</li> </ul>
표시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농산물 등의 표시</li> <li>· 인증(마크)</li> <li>· 인증번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 인증 받았음을 표시하는 마크(JAS 마크)</li> </ul>
유기식품 (Organic)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이상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li> <li>· 포장은 비유기 포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li> <li>· 가공품의 경우는, 최종제품 중에 유기재료가 95%이상 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확전 3년간 사용가능자재 품목 리스트에 게시된 것 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수 없음</li> <li>· 포장은 비유기 포장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li> <li>· 가공품의 경우는, 최종제품중에 유기재료가 95%이상 있을 것</li> </ul>

## 5) 우리나라와 외국인증시스템과의 비교

○ 독일, 스위스 등 유럽과 일본, 미국의 인증단체의 인증시스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의 경우 유기농산물,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등 4종류의 농산물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아직 없는 상태임.

-> 이에 반해 독일, 스위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유기농산물과 전환기 농산물만을 유기농산물 카테고리에 넣어 인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은 유기생산물(organic products)에 넣어 인증하고 있음.

-> 한국은 아직도 1차 신선농산물 위주의 유기제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2차 가공품에 대해서도 인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유기농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2차 가공품의 원료로 신선농산물이 다량공급됨으로서 1차 농산물의 시장수요가 크게 증대하기 때문에 유기농업의 도약적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

-> 외국에서는 유기수산물(organic aquaculture), 유기임산물, 유기섬유, 유기종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유기목재(organic timber)를 활용한 장남감, 침대, 의자, 탁자 등을 인증하고 있으며, 유기면(organic cotton)을 이용하여 제조한 잠옷, 양복, 가운, 잠옷, 속내의, 브라자, 정장, 면가방 등을 인증하고 있음. 또한 유기향수, 화장품, 코냑, 콜라, 피자, 냉동야채 등이 인증되고 유통 및 교역되고 있음

○ 한국에서는 정부와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같이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 캐나다, 독일은 민간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일부 주정부에서 인증업무를 실시하기도 함.

○ 일본, 미국에서는 정부는 민간인증기관 지정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정부가 민간인증기관 지정 업무와 함께 농산물 인증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유기농가가 품질인증기관의 명망, 시장 신뢰도,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민간인증기관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수수료를 납부하면서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 (별첨 신청서식 참조)

○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 생산계획서 및 이행각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도 있음, 즉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이 이에 해당됨

○ 외국에서는 조사관의 농가방문을 통한 생산농가의 재배포장 확인과 투입자재 및 경영기록 확인을 철저히 제도화하고 있음. 이것이 바로 인증심사의 필수적인 핵심사항임(Codex유기식품규격).

-> 2년간의 투입자재 내용 확인

-> 5년 이상의 영농일지, 회계장부, 농자재 구입 및 사용일지, 필지별 작업일지 등의 경영기록 유지

○ 인증단체 조사관의 농가방문 조사

-> 조사관의 농가방문 1차 조사는 예고후 정기방문 년 1회 실시함

-> 조사관의 농가방문 2차 조사는 예고없이 수시방문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여러 차례 실시하기도 함. 조사관의 자체판단에 따라 또는 인증위원의 추가 방문조사 결정에 따라 실시함

○ 조사관의 관련서류 점검

-> 윤작 작부계획, 토양비옥도 유지증진책, 영농일지, 회계장부, 농가경영자료, 농자재 구입 및 사용일지, 필지별 작업일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유기농가가 유기농업의 제반 영농원칙<sup>10)</sup>들을 엄수하였는가에 대한 확인 작업에 크게 비중을 두고 농가방문 조사, 인터뷰 및 회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농가 회계조사의 실시

---

10)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기준은 각국에서 Codex 기준에 따라 재배포장의 유기농업적인 관리, 3년간의 전환기간, 토양비옥도 유지증진책, 윤작의 실시, 허용자재 규정, 일정기간 이상의 영농기록 의무, 완전부숙 퇴비의 사용, 오염완충지대(buffer zone)의 설정, 저항성 품종인 유기종자 파종,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금지, 수의약품의 사용금지, GMO의 사용금지, 생산물의 품질관리, 동물복지의 실천, 유기사료에 의한 가축사양 등을 모두 채택하고 있음



- > 외부 투입농자재에 대한 실제 확인 절차로서 농가의 금전 출납을 은행 계좌의 입출금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농가 회계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 입증하고 있음
- > 또한 윤작작부체계의 실천 여부를 유기농가가 작성한 영농일지 점검을 통해 확인할 뿐만 아니라 회계장부를 점검함으로써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 이같은 농가 회계조사를 통해 유기농업에서 허용되는 유기농자재 이외의 자재를 사용한 것이 없는가와 윤작 작부체계를 5년 내지 7년간의 계획대로 실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조사과정임.
- > 이같은 농가 회계조사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든지, 또는 인터뷰를 통해 약간의 의문이 있을 때에 필요한 경우 조사관은 하시라도 시료 채취의 필요성을 농가에 통보하고 식물체, 토양, 수질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그러나 시료채취는 필요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의 경우 시료채취를 생략하고 인증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조사과정에서의 시료채취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서는 인증조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 유럽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사과정에서 현장조사와 의견청취 등을 토대로 조사관이 시료채취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시료채취의 의문이 갈 정도이면 이미 인증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의미가 있음

- > 토양, 수질, 식물체, 대기 시료의 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의문이 가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
- > 인증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정밀분석을 위해 시료채취를 실시

#### ○ 의견청취

- > 조사관은 농장주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과 함께 농장내에 근무하는 작업인부와 인근 동네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유기농가의 일반 영농활동, 윤작 실천여부, 허용자재의 투입자재에 대한 시용여부 등에 관해 청취하는 것을 규정
- > 성실한 유기농가인가의 여부 판단의 지표로 활용하여 추가 정밀조사 및 시료채취 여부를 결정

○ 조사관의 채취시료분석, 관련서류 점검, 의견청취 등에 근거하여 조사관이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인증단체는 조사관 보고서와 신청서류를 수합하여 인증위원회를 소집하여 회부하고 이를 심의

-> 인증위원은 유기농업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박사학위 소지 및 유기농업 연구 / 교수 / 종사의 3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험 / 학식이 있는 자로 구성)

-> 인증위원은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익단체에 소속된 자는 임용될 수 없음 (현재 유기농업 생산업 종사자, 유기식품 가공업 종사자, 유기식품 유통업체 종사자, 유기농자재 산업 종사자, 유기농산물/유기식품 수출입업 종사자 등은 인증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음)

○ 인증단체가 최종적으로 유기식품 품질인증서 발급여부를 결정하여 생산농가에 통보

○ 조사관과 인증위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인증기관의 인증업무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성이라는 다리를 제공하는데 있음

-> 초기에 유기독농가는 직거래라는 유통구조에 의해 고품질의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을 고가로 판매할 수 있었고, 이는 상호간의 믿음에 의해 가능했었음. 이같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는 상표표시라는 형태로 발전해 나갔음

-> 최근 유기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판매량은 더욱 눈에 뜨게 커져 갔음. 이에 따라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익명성이 커지고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운송거리도 점점 멀어져 갔음

-> 이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신뢰성이라는 다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 검사기관 및 인증사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제3자 민간인증기관은 유기식품임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도와주는데 있음

-> 독일과 스위스의 유기식품 소비자는 지난 수십년간 유기식품/ 유기농산

물을 구입하면서 이것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유기제품인가, 이것이 정말로 환경친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영농방법에 의해 생산된 농산물인가에 늘 회의적이었고 이에 대해 예민해져 있었기에 인증기관은 이러한 유기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제3자 민간인증기관으로 정착하였음

○ 민간인증기관은 독립적인 구조를 강화하고, 공정한 절차와 사무구조를 갖추어야 함

○ 민간인증기관은 독립적인 제3자 인증기관이어야 하고, 믿을만한 기관이어야 한다. 인증행정, 조사업무, 인증심사업무 등에서 직원들의 업무 처리가 책임감 있고, 모든 업무처리가 항상 인터넷상에서 공개되어 있어야 함

○ 대개의 민간인증기관은 유기농생산부, 가공유통부, 국제부, 행정부 등 4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무총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

○ 인증위원과 조사관은 인증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며, 조사업무에 투입되는 조사관은 2회 연속 투입되어서는 아니되며, 5년 이내에 이전에 투입되었던 조사대상농가에 투입되어서는 안 됨

○ 위반자 제재조치: 각국에서는 모두 엄격한 제재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한국은 가장 엄격한 제재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벌금은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국민소득에 비추어 가장 많은 벌금형 수준이고, 우리나라 타 벌금과 비추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벌금형 임

-> 한국: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일본: 1년 이하의 징역 및 1백만엔 이하의 벌금

-> 미국: 1만불 이하의 벌금

-> 캐나다: 6월 이하의 금고 및 5천만불 이하의 벌금

-> 독일: 인증취소 및 형사고발

## 6. 민간인증기관과 국가의 인증관련 업무의 역할과 한계

○ Bio-Inspecta는 1988년 가을에 FiBL (Forschungsinstitut für biologischen Landbau, 스위스유기농민협회(Anbauverbänden BIO SUISSE) 및 스위스 생명동태농업협회 (Verein für biologisch-dynamische Landwirtschaft)가 설립한 제3자 민간인증회사임

○ Bio-Inspecta는 스위스 유기농산물/ 유기식품 80% 이상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또한 1000여개가 넘는 유기식품가공업체와 유통업체가 Bio-Inspecta가 인증하는 유기식품을 가공하거나 유통취급하고 있음

○ 스위스 소비자들이 민간인증기관인 Bio-Inspecta가 인증한 유기식품에 보이는 신뢰도는 대단히 높으며, 국제유기식품시장에서의 인지도가 단연 앞서 있는 스위스의 제3자 인증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 현재는 IFOAM의 인정을 받아 국제품질인증기관으로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음

->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가공업자, 수출입업자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독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 민간인증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는 평가가 있음

○ 한국에서는 정부가 인증업무도 담당하고 민간인증기관 지정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국가의 경우 정부는 민간인증기관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민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본과 미국은 5년 주기로 민간인증기관이 재지정을 받아야 하며, 캐나다와 독일은 매 1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정부는 재지정 신청을 통해 부적격 민간인증기관을 정리할 수 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가 있음으로 우리나라도 매1년마다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는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분

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 독립적인 조사업무와 공정한 인증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생산농가, 가공업자, 유통업자에 대한 표본점검도 실시하여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이 규정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과 선량한 생산자(친환경농업 농가, 유기농업 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인증업무가 규정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필요함

-> 환경보호와 안전식품 생산 기능을 회복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 차원에서도 국가가 적극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해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가에 대해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

○ 정부는 인증업무를 민간에 전면 이양한 후에도 인증농산물의 시판품 조사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서 인증업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시판품의 일정비율 이상은 잔류농약, 중금속, 질산염 함량 검사를 실시: 인증 시판품의 0.001% 정도를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검사

-> 조사기간도 매주 1회 이상 실시토록 함

## 7. 민간인증기관의 효율적인 육성방안 모색

### ○ 인증기관 지정에 따른 합리적인 시설 및 인력기준 제시

-> 시설기준: 시료조제실, 시료보관실, 분석실, 신청서/농가자료 보관실, 회의실, 사무실

-> 분석장비는 고가<sup>11)</sup>이므로 민간인증기관이 이를 갖추고 전담분석요원을 고용하는 것이 너무 힘겹고, 뿐만 아니라 신뢰성과 효율성에 있어 문제가 있으므로 대학 및 연구소와의 시료분석업무 협약체결을 통해 수질 토양 식물체 대기 분석을 외부 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인력기준: 독립적 관계에 있는 조사관 10인 이상, 자격과 경험이 있는 분야별 인증위원

○ 인증수수료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 캐나다, 독일의 경우 인증기관별로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인 주정부에서보조 지원하고 있음

○ 인증업무에 대한 원가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수수료 체계와 국내농가 수준을 감안한 적정 인증수수료 기준 제시 (양케이트 조사, 원가계산 등에 근거)

-> 인증기관의 인증수수료 현실화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할 듯. 단 분석기자재 구입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듯함. 왜냐하면 어느 국가에서도 이들 분석기자재 구입비등을 지원한 사례가 없었음. 독일의 경우에도 인증수수료에 대한 보조금을 직접 농민에게 지불하고 있을 뿐임.

-> 내부조사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인증수수료를 크게 저감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

-> 인증신청자 경영규모/ 유기식품 판매액에 규모에 따른 인증수수료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실시(독일의 경우 이미 차등부과제도를 도입)

1,500평 미만: 인증수수료 1/4부과

1,500-3,000평: 인증수수료 1/2부과

---

11) 잔류농약, 중금속, 무기성분 등을 수질, 토양, 식물체, 대기 시료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HPLC, GC, AAS(원자흡광분광분석기), 켈달 증류 및 분해장치, 스펙트로포토메타, 불꽃분광계, 이온메타 등의 고가 장비가 필요함

3,000-6,000평: 인증수수료 1 부과  
6,000-20,000평: 인증수수료 2부과  
20,000평 이상: 인증수수료 4부과

->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기식품에 비용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원칙임. 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인증은 점차 사라지고 민간으로 인증업무가 이관되고 인증비용이 유기식품가격에 반영되도록 조처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제3자(The third party) 민간인증기관화 필요성과 그 현실적 대안 모색

○ 국가가 직접 품질인증업무를 맡아 실시하는 것은 품질인증의 초기과정이며 이후 점차 민간품질인증으로 전환되어 왔음

○ 그러나 민간품질인증단체가 생산자단체(제1자 품질인증단체)가 직접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조사, 시료채취, 시료분석, 서류심사, 인증결정 과정 등에서 여러 불미스러운 문제가 노정되었음

○ 민간품질인증의 사회적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품질인증기관의 "제3자 품질인증기관화"로 전환하는 추세 (독일,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스웨덴, 호주, 미국 등)

○ 민간인증기관 품질인증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자질향상 강화방안 제시 (대학원 유기식품과정에서의 석사학위 전문이상 교육방안)

-> 농관원 인증업무 경력 공무원에 대한 대학원 진학 인센티브

▽ (총무처 추천) 자비로 유기농업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자에 대해 승진심사시에 가산점 혜택 (석사학위 취득자는 10%, 박사학위 취득자는 20%)

▽ 국비로 유기농업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자에 대해 승진심사시에 가산점 혜택(석사학위 취득자는 5%, 박사학위 취득자는 10%)

-> 민간기관 인증위원회에 대한 자질향상 프로그램/ 대책 (연수 및 유학)

▽ 민간인증기관은 인증수수료의 10% 정도를 적립하여 1/2은 직원 자질향상을 위해 나머지 1/2은 인증위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수 및 유학 등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조처 (유기농업 분야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과정 및 해외 유학/ 연수)

○ 조사관과 인증기관과는 조사관의 독립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분리가 보장되는 제도적으로 필요함.

-> 따라서 조사관은 인증기관과 고용관계가 아닌 수시계약에 따라 인증 신청이 있을 때

① 가장 적임자를 골라

② 5년이전에 동일 신청농가( 또는 생산자, 유통업자 등)를 조사하지 않은 조사관을 골라, 조사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조사관은 조사관협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음. 독일의 경우 조사관협회가 조직되어 있음



## 인증단체 인가의 최소요건 (독일의 경우)

- ❖ 유기식품 인증을 담당하는 관리감독 국가기관으로부터 민간품질인증단체로 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조사관(Inspector), 인증위원, 분석시설 등의 최소요건은 다음과 같음
- ❖ 조사관, 인증위원은 인증을 신청하는 생산농가, 가공업자, 수입업자 등과 전혀 이해 관계가 없어야 하며, 이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자이어야 함
- ❖ 조사관, 인증위원은 인증을 신청하는 생산농가, 가공업자, 수입업자에 대해 2년 연속해서 같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없으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전에 계약 파견되어 인증조사한 동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있음
- ❖ 조사관은 인증 관련 국내법규와 국제규정(IFOAM기본규약, EU규정 및 Codex유기식품규격, NOP기준, JAS기준)의 세부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 및 실기시험에 통과한자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최소학력 및 경력자이어야 함
  - 작물, 원예, 토양, 잡초, 작물보호, 축산, 농산가공, 식품유통 관련 전공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
  - 농학계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운송 저장, 유통, 교역, 연구, 교육, 홍보, 행정 분야에서의 최소한 2년 이상 경력자
  -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품질인증단체의 유기식품의 생산, 유통, 인증 관련 업무에 최소한 5년 이상 경력자
- ❖ 인증단체의 인증위원회 인증위원은 품질인증 관련 국내법규와 국제규정(IFOAM기본규약, EU규정 및 Codex유기식품규격, NOP기준, JAS기준)의 세부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최소학력 및 경력자이어야 함
  - 작물, 원예, 토양, 잡초, 작물보호, 축산, 농산가공, 식품유통, 저장, 운송, 품질, 수출입, 소비자 관련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 유기식품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자
  - 농학계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운송 저장, 유통, 교역, 연구, 교육, 홍보, 행정 분야에서의 최소한 10년 이상 경력자
  - 대학을 졸업하고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품질인증단체의 유기식품의 생산, 유통, 인증 관련 업무에 최소한 13년 이상 경력자
- ❖ 토양, 식물체, 수질, 대기의 시료를 조제, 분석할 수 있는 분석시설은 자체 보유하거나, 분석시설을 갖춘 외부기관과 분석업무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함

## 8. 인증수수료 절감과 인증절차 간소화를 위한 “내부조사제(Internal Inspection)”의 활용

### ○ 내부조사제의 활용 목적 및 방법

-> 작목반 활용

-> 내부조사관(Internal Inspector)을 임명하여 작목반원의 영농일지, 투입  
농자재, 윤작작부 체계와 관련한 실천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 확인

-> 인증심사를 위한 현장조사에는 조사관이 내부조사제 실시작목반의 경우  
1/10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무작위 선택하여 영농일지 점검,  
인터뷰, 시료채취/분석을 실시

-> 인증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농민 인증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도입

-> 무작위로 선택된 농가가 인증획득시 모든 회원농가에 인증부여, 단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작목반 연대책임제로 실시

-> 국제인증기관이 내부조사제를 운영하는 외국사례

▽ 아시아: 인도

▽ 아프리카: 가나

-> 인증수수료 절감과 인증절차 간소화에 미치는 효과

▽ 내부조사제 실시를 허용할 경우 작목반원 수에 따라 인증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

▽ 내부조사에 따라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절차를 인정할 경우,  
그리고 무작위 선택적으로 1/10에 해당하는 일부 농민들의  
경영일지, 방문인터뷰, 시료채취 등을 실시할 경우 인증과정과  
절차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 오히려 농민들의 양심적인 유기농업 실천을 유도하고 친환경 유기농업의 기능을 거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 농민부담 인증수수료를 최소 1/10이하로 줄이기 위한 인증수수료 경감책으로 개도국을 중심으로 인정되어 실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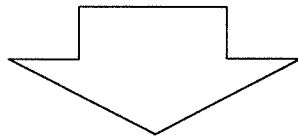
○ 작목반 또는 지역단위의 20농가~100농가로 구성된 소 그룹(group)내에 내부조사관을 지정

○ 내부조사관이 작목반의 각 농가를 정기 및 부정직적으로 방문하여 품종선택, 재배방법, 농작업일지 등을 조사하여 내부조사일지를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토양, 식물체, 수질시료 등을 채취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송부하여 분석하도록 조치

## 9. 국가의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범위 및 방법

- 유럽에서는 민간인증기관이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제3자 인증 체계로 서서히 넘어갔고, 국가는 자연스럽게 이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음.
  
- 국가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범위와 방법 제시
  - > 매년 회계감사
  
  - > 업무 감사 (인증과정의 토양/수질/식물체 분석자료, 방문조사 보고서 등)
  
  - > 분석시료는 조제후 간이 분석항목은 자체 분석하며, 의심시료에 대한 정밀 농약성분분석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국가기관에 의뢰
  
  - > 신청자별 인증업무 조사시에 투입되는 조사원의 독립적 관계 여부 및 연속적 투입 여부 (경제적 이해관계 및 면식관계에서의 독립적 관계) (5년 이내에 동일 신청자에 대한 조사업무 투입 사실이 없어야)
  
  - > 인증위원의 자격 심사, 정기적 인증회의 개최 및 인증위원의 참석 및 실질적 심사참여 여부
  
  - > 인증결과 물품에 대한 분기별 정기 표본검사 및 시장에서의 수시 표본 수거 검사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															
현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생산자단체 민간인증기관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								인증업무 관리 감독							
장래의 목표		제3자 민간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림8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와 관리감독업무의 분리(안)

- 유기식품 생산농가와 유기식품 가공/운송/저장/유통/교역 사업장 현장에서 EU유기농업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임무
- 품질인증단체는 생산농가 또는 사업장과 품질인증업무 협약을 맺고 품질인증 절차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
- 생산농가와 사업장은 생산/가공/유통/저장/운송/교역과정에서 EU유기농업규정을 준수할 책임과 품질인증단체의 품질인증 관련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
-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는 EU유기농업규정에 따라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유기식품가공업자, 그리고 유기식품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품질 인증을 받아야 함

○ 유럽연합 회원국은 EU유기농업규정을 자국에 적용하기 전에 유기식품 품질인증업무를 국가품질인증기관에서 담당케 할 것인지 또는 국가가 감독하는 민간품질인증체제로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EU유기농업규정 제8조 및 9조)

○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은 민간품질인증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3자 민간품질인증기관화와 국제품질인증기관화가 보편적 추세임.

표8. 품질인증 관리감독 국가기관과 품질인증 담당 민간단체의 역할

구 분	품질인증 관리감독 국가기관	품질인증 담당 민간단체
관 계	민간품질인증기관의 승인	국가기관에 품질인증 사업자로 등록
업 무	민간품질인증단체의 품질인증 업무에 대한 감독	유기식품 생산농가, 가공공장, 수입상의 현장에서의 조사, 시료채취, 청취, 자료분석
인증표시 사용승인 / 허가		EU유기식품 라벨의 사용승인 허가 및 부여
처 별	심하게 규정을 어긴 생산농가와 사업자에 대한 처리	경미하게 규정을 어긴 생산농가와 사업자에 대한 처리
수 입	역외 제3세계로부터 수입되는 유기 식품에 대한 유기식품 인증 허가	관리감독 국가기관에 보고서 제출
보고서	EU에 보고서 제출	

○ 독일의 경우 각 주정부내에 민간품질인증단체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 독일연방의 구조 때문에, 22개 행정당국이 EU유기식품규정의 실천여부

를 감독하도록 위임되어 있음. 이들 행정당국은 민간 품질인증단체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담당하고 있음.

- > 바덴뷔텐베르그州 (Regierungspraesidium Karlsruhe, Sachgebiet 33b, 76247 Karlsruhe, Germany)
- > 바이에른州 (Bayerische Landesanstalt für Ernährung, Dienstsitz: Sachgebiet 2.5, Am Neudeck 6, 81541 Muenchen, Germany)
- > 베를린市 (Senatverwaltung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Berlin, Referat IV B Landwirtschaft, Martin-Luther-Str. 105, 10820 Berlin, Germany)
- > 브란덴베르그州 (Ministerium für Landwirtschaft, Umweltschutz und Raumordnung)
- > 브레멘市 (Senator für Wirtschaft und Haefen)
- > 함부르크市 (Freie und Hansestadt Hamburg Wirtschaftsbehoerde)
- > 헤센州 (Regierungspraesidium Giessen Dezernat 51.3)
- > 메크렌부르크 호폼메른州 (Ministerium für Landwirtschaft und Naturschutz Mecklenburg Vorpommern, Referat 420)
- > 니더작센州 (Bezirksregierung Lueneburg, Dezernat 509)
- >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州 (Landesamt für Ernährungswirtschaft und Jagd Nordrhein-Westfalen)
- > 라인란드 팔츠州 (Aufsichts- und Dienstleistungsdirktion, Referat 42)
- > 자알란트州 (Landwirtschaftskammer für das Saarland)

-> 작센州(Saechsische Landesanstalt für Lanwirtschaft, Fachbereich 9)

-> 작센 안할트州 (Amt für Landwirtschaft und Flurneuordnung Anhalt)

-> 쉴레스빅 홀스타인州 (Ministrium für laendliche Raeume,  
Landesplanung, Landwirtschaft und Tourismus)

-> 튜링겐州(Thueringer Landesanstalt für Landwirtschaft)

○ 유기농업 선진국의 추세를 보면, 품질인증업무는 민간품질인증기관이 담당  
하고 국가기관은 민간품질인증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국가기관은 연방정부 소비자보호/식품/농무성과 연방농업식품  
청이 유기식품 품질인증의 법규 및 절차의 제도화를 담당

-> Bundesministerium für Verbraucherschutz, Ernaehrung und  
Landwirtschaft (연방정부 소비자보호/식품/농무성)

-> Bundesanstalt für Landwirtschaft und Ernaehrung (연방농업식품청)

○ 지자체는 민간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민간품질인증기관의 사후 관리 및 감  
독, 시장에서의 품질인증 유기식품의 품질검사를 담당하고 있음



## 10. 인증 조사관의 자질향상 및 인증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

○ 스위스 민간품질인증기관 Bio-Inspecta (Canton of Aargau, Switzerland에 본부 소재)의 경우, 25명의 직원 대부분이 식품학 농학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이며, Bio-Inspecta는 인증조사관과 인증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전문분야의 고학력이 인증기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며 자기 회사의 인적자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 홍보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120명에 달하는 계약직 freelance로 일하는 조사관이 스위스 전역의 유기농장과 유기식품업체, 유통업체의 인증에 필요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또는 가공업체 또는 유통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관계에 있는 조사관을 파견하여 조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음.

### ○ 조사관(Inspector)의 정예화를 위한 자질향상 방안

- > 농과대학 졸업자로 품질인증 관련 국내법규와 국제규정(IFOAM 기본규약, EU규정 및 Codex유기식품규격, NOP기준, JAS기준)의 세부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 및 실기시험에 통과한자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최소학력 및 경력자이어야 함
  - ▽ 작물, 원예, 토양, 잡초, 작물보호, 축산, 농산가공, 식품유통 관련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
  - ▽ 농학계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운송 저장, 유통, 교역, 연구, 교육, 홍보, 행정 분야에서의 최소한 2년 이상 경력자
  - ▽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품질인증단체의 유기식품의 생산, 유통, 인증 관련 업무에 최소한 5년 이상 경력자로 5년 이상 유기농업 분야 종사자 또는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취득자
  - ▽ 유기농업분야의 종사경력 3년 이상자로 농과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유기농업반을 수료한자

○ 가칭 “한국독립인증조사관협회” 창립 유도 (Korean Independent Inspector Association)

-> Freelance로 일할 수 있는 조사관의 협회

->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독립적 관계에 있는 조사관

-> 경종, 축산, 가공, 유통 등 각 분야별 전문 Inspector가 필요

○ 인증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경력 규정(학위, 경험, 전문분야 지정 등)을 충족하고, 인증 관련 국내법규와 국제규정(IFOAM기본규약, EU규정 및 Codex유기식품규격, NOP기준, JAS기준)의 세부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함

-> 농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3년이상 경력자 또는 7편 이상의 유기농업 관련 논문을 발표한 자

-> 농학계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운송, 저장, 유통, 교역, 연구, 교육, 홍보, 행정 분야에서의 최소한 10년 이상 경력자

-> 농과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 품질인증 업무 종사경력에 최소 13년 이상 종사한 자

-> 농과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 유기농업 생산, 유통, 가공, 지도, 소비 관련 업무 등에 최소 15년 이상 종사한 자

**\*\* 독일 인증기관의 사례 \*\***

품질인증단체의 인증위원회 인증위원은 품질인증 관련 국내법규와 국제규정(IFOAM기본규약, EU규정 및 Codex유기식품규격, NOP기준, JAS기준)의 세부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최소학력 및 경력자이어야 함

- 1) 작물, 원예, 토양, 잡초, 작물보호, 축산, 농산가공, 식품유통, 저장, 운송, 품질, 수출입, 소비자 관련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 유기식품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자
- 2) 대학졸업자(디프롬 아그라엔지니어, 석사학위 취득)로 유기농산물과 유기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 운송 저장, 유통, 교역, 연구, 교육, 홍보, 행정 분야에서의 최소한 10년 이상 경력자
- 3) 대학졸업자(디프롬 아그라엔지니어, 석사학위 취득)로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품질인증단체의 유기식품의 생산, 유통, 인증 관련 업무에 최소한 13년 이상 경력자

○ 국제인증기관화 하기 위한 조사관/ 인증위원의 qualification 확보방안

-> 국제인증기관에 연수 (IOIA, Bio-Inspecta, IMO, Oregon Tilth, SKAL 등)

-> 대학원에서 전문분야 학위 취득 (유기경종, 유기축산, 유기식품 가공, 유기농 유통, 유기식품 교역)

○ 국가자격 “유기농업기사”의 인증 조사관 활용 방안

-> 유기농업 관련 국가공무원 신규임용시 가산점 부여

▽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지자체 친환경 유기농업 담당

▽ 농협의 유기농업 업무담당

○ 국내 각 대학에 인증 조사관의 양성 프로그램 제시

-> 유기농업분야의 종사경력 3년 이상자로 농과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의 유기농업반을 수료한자에게 인증조사관 자격 부여

-> 농과계열 대학의 유기농업분야 전공자(부전공자 및 연계전공자 포함)에게 인증조사관 자격 부여

-> 유기농업기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자에게 인증조사관 자격 부여

(2005부터 국가자격시험으로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 시험이 실시될 예정임. 현재는 유기농업교수연합회가 주관하는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 민간자격시험이 2001년부터 실시되고 있음)

독일에서는 모든 농과대학에서 유기농업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202년 현재 유기농업 전임교수직이 7개 대학<sup>24)</sup>에 만들어 졌으며, 유기농업 전공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은 Kassel대학교(Witzenhausen캠퍼스)와 Bonn 대학교이며, 다수의 농과계 대학에서 유기농업을 공부할 수 있음

①University of Hohenheim, ②Fachhochschule Neubrandenburg, ③ Fachhochschule Nürtingen, ④Fachhochschule Osnabruck, ⑤University of Bonn, ⑥Technical University of München, ⑦University of Kassel, ⑧ Universität Gießen, ⑨University of Kiel 등 9개 대학에 수십명의 유기농업 교수가 취임하여 강의와 연구와 종사

11. 민간인증기관의 국제인증기관화 육성방안

○ 현행의 국내 인증기관을 수입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하고, 인증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인증기관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인증기관은 현재 5개이나 모두 제1자 인증기관이므로, 향후에는 제3자 민간인증기관으로 탈바꿈하고 더 나아가 국제인증기관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함

현행 체제				장래의 목표			
생산자단체 민간인증기관		X	제3자 민간인증기관		X	국제인증기관	
producer			The Third Party			IFOAM 인정기관	

그림9. 민간인증기관의 국제인증기관화 과정도

○ IFOAM 인증계획에 따라 IOAS에 신청하고 실사를 받아 인정을 받아야 함. 1993년 인증계획이 수립된 이후 국제인증기관이 인가되었으며, 그 숫자는 점차 증가되고 있음. 현재는 모두 24개의 국제인증기관이 IFOAM에 인가를 획득하여 활동하고 있음

-> 국제인증기관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은 Eco-cert이며, 독일 Nordheim에 본부를 두고 있음

**Year on year increase of the IFOAM Accreditation Program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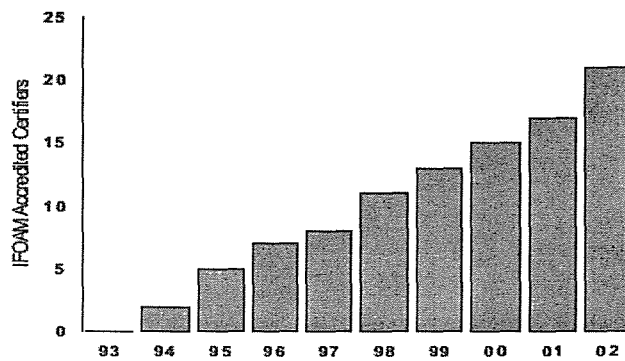


그림10. IFOAM의 인증계획에 따라 인가된 국제인증기관의 수

○ IFOAM으로부터 국제인증기관으로 인가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서류심사, 실사과정을 거치는데 그 인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IOAS이며, 그 평가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 1단계: IOAS에 국제인증기관 신청에 필요한 제반 신청서류 제출
- > 2단계: 인증심사 예정기간 협의
- > 3단계: 제출서류 심사
- > 4단계: 미비서류 보완요청
- > 5단계: 서류 보완
- > 6단계: 방문/실사 일정 협의
- > 7단계: 실사보고서 제출

- > 8단계: 2차 서류 보완
- > 9단계: 인증 통보
- > 10단계: 매년 인증기관 재평가

○ IFOAM로부터 국제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은 전세계 24개 인증기관이 있으며 이중 몇 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03년 5월 현재)



(1) ACT - Thailand

2001년에 ACT는 IFORM이 인가한 아시아의 첫 번째 국제인증기관이 되었다. 타일랜드 ACT는 유기농업네트워크 이외에 농업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던 85개 NGOs들의 국가네트워크로 1995년에 태동되어 활동해 왔던 단체였다.

ACT는 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하는 관행농업을 거부하고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농업시스템인 유기농업을 지지하고 있다.. ACT유기식품기준은 국제유기농업규격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이는 다시 국제시장의 요구를 실천해야하는 타이랜드 유기농민들의 몫으로 남아있어 있게 되었다.

ACT는 타이랜드내의 공인된 인증기관이며, ACT 로고는 쌀귀를 기본으로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 인증여부 결정은 중앙인증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 쌀이 ACT 인증품목의 주요 품목이지만 열대과일, 계절채소, 각종 허브들도 인증품목으로 인증되고 있다.

타일랜드는 자국의 유기농산물 시장의 성장으로 유기농산물이 수출되고 있지만, ACT는 현재 동남아의 다른 인증기관들과의 계약을 통해 타이랜드의 조사관들을 외국에 파견하여 주사업무에 종사케 하기도 한다. ACT는 유기농산

물의 생산 뿐만 아니라, 유기가공식품, 자연생산물들에 대해서도 인증업무를 확대하고 있으며, 작목반 그룹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조사자 제도를 인증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가동하고 있다.



### (2) Agrior (이스라엘)

Agrior는 이스라엘내 유기조사관, 인증기관, IBOAA 등에 의해 설립되었다. 회사는 IBOAA유기식품기준에 근거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Agrior의 ISO 9002의 요구에 따라 매뉴얼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Agrior는 2001년에 IFOAM으로부터 인가를 획득하였다. 회사 Agrior Ltd.는 1999년 12월에 IBOAA에 의하여 등록되었다.

Agrior는 실제로는 독립적 업무개시를 2000년 1월에 시작하였다.

Agrior가 인증하는 주 품목은 유기과일과 유기채소이다. 최근 Agrior은 유기축산물 부문에 대해서도 인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Ethiopia의 유기농산물 인증업무에도 참여하고 있다. Agrior는 IFOAM인증에 포함되지 않는 전통벌꿀에 대한 인증과 미국 유기식품 인증기준인 NOP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인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 (3) Argencert (아르헨티나)

Argencert는 1992년에 설립되어 1992년 유럽유기농업규정인 EU Regulation에 등재된 외국인증기관의 3번째 나라로 인가되었으며, 그리고 IFOAM으로부터는 1998년에 국제인증기관으로 인가를 획득하였다. Argencert는 세계적으로 교역되고 있는 유기농산물들을 인증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2개의 대규모 인증기관 중 하나로 현재까지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인증기관이다.

Argencert는 유기인증기관으로는 유일한 개인회사이다.

인증위원회는 유기농업과 관련된 대학교수, 연구자, 생산자단체, 식품가공업계, 유기농가, 소비자단체, 유기농업기사, NGO단체, 정부관료 등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위원들은 학계의 유기농업 각 전문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임명되어 있다.

모든 Argencert주주들은 매년 총회에 초청되어 유기식품기준의 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Argencert의 IFOAM인증프로그램은 아르헨티나 안에서 집중되어 실시되지만, 칠레와 파라과이 유기농가에 대해서도 인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칠레, 파라과이에서 Argencert는 쇠고기, 사과, 채소, 와인, 기름, 꿀 등 세계로 수출할 생산물들을 인증해 주고 있다. Argencert는 또한 미국 NOP 프로그램에 따라서도 인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Argencert는 ISO 65에 의해서도 인정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유기농가가 Argencert의 인증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은 인증과정과 필요한 문서들이 있다.



#### (4) BFA (Biological Farmers of Australia)

1987년 New South Wales의 Dubbo에 Australia의 유기농업 독농가의 협동조합이 형성되었으며, 1989년에 기본규약이 제정되었고, 1990년대 초 오스트레일리아 국가기준에 따라 인정된 BFA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인의 인증기관 및 조사관 단체(AQIS)에 의하여 유기식품 기준이 완성되었다. 1993년 제정된 BFA기준은 2000년 10월 새롭게 보완되었다.

BFA는 2002년에 IFOAM에 인가되었고, 그 인가는 ACO의 자회사인 BFA의 인증부문으로 옮겨갔다. BFA는 5명의 전임직원을 가지고 있으며, ACO의 독립 자회사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시장 개런티를 제공함으로써 유기



식품의 유통과 교역을 진작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CO는 국내소비자와 국제시장에서 유기생산물들을 보증하기 위하여 ACO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생산물들은 또한 IFOAM 인증표지를 함께 가질 수 있다.

ACO의 IFOAM인증프로그램은 소매유통, 제조업의 투입량, 수확물 생산, 가공, 자연 생산물들을 가공 처리하고 다루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양식, 임업, 먹이관계수립, 섬유가공, 그리고 야생무리와 수산물을 포함하는 내용은 ACO의 인증활동 영역에 아직 속하지 못하고 있다. ACO는 아보카도에서 우유까지, 그리고 고기에서 곡식, 풀까지 생산물들의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Australia 국외에서의 활동은 주로 일본, 파푸아 뉴기니, 싱가포르,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 동남아시아 에 초점을 두고 있다.



#### (5) Bioagricoop (Italy)

Bioagricert는 독립적으로 이탈리아의 Bologna에 의해 운영되지만 IFOAM에 의해 인가된 국제인증기관이다. 이탈리아의 유기산업은 1984년 이래로 왕성한 성장과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Bioagricoop에 의해 인증된 생산물들을 인증마크로 사용하여 왔다. Bioagricoop은 IFOAM 인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1996년에 인가되었으나, 이 인가는 최근 Bioagricert로 옮겨졌다. Bioagricert 인가는 2002년 7월에 Bioagricoop의 인증기관으로 정식으로 확정되었다. Bioagricert는 인증과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이전의 경영체인 Bioagricoop로부터 얻었다. Bioagricert는 유기농업의 품질관리와 조사, 인증을 주요 목적으로 가지고 설립된 회사이다.

인증위원회는 대학교수, 유기생산자단체, 유기농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Bioagricert은 IFOAM 인증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유럽유기식품규정인 EU Regulation에 따라서도 인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Mexico, Turkey, Bulgaria, Tunisia, Columbia, Ecuador, Thailand 등에

서도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 축산물, 가공품, 자연식품, 수출입품, 운송, 도매업, 소매업 등에 대해서도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Bioagricert에서는 특히 “인증전문가”를 중요시하고 있다. 인증업무를 신뢰성 높게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전문가”와 함께 경험있는 조사관, 수의사, 식품과학자, 유기농업기사, 농경제학자, 컴퓨터전문가, 회사관리 전문가들 등 100인 이상의 스태프를 고용하고 있다.

또한 화학분석실험실들은 Bioagricert 유기인증계획에 포함된 농약, 중금속, 질산염 및 오염균 잔여분석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Bologna근처의 Casalecchio di Reno에 있는 본사에서는 25명의 직원이 인증시스템 조사관들의 네트워크를 조정하고 유기식품 인증관리과정 처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게 하고 있다.

Bioagricert는 인증서비스의 공정성 계련티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실히 하여 소비자인 유기농가와 유기식품가공업자, 유통업자에 대해 질높은 인증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 (6) Bio-Gro New Zealand (New Zealand)

뉴질랜드 유기식품생산자·소비자협의회인 Bio-Gro New Zealand가 1983년에 설립되었는데, 이는 뉴질랜드의 유기농업협회, 조원협회, Doubleday 연구협회가 뉴질랜드 흙·건강협회를 기초로 하여 설립한 것이다. Bio-Gro New Zealand는 유기농업과 유기농산물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 일의 부분은 BIO-GRO New Zealand 유기식품기준 제정과 인증시스템의 구현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BIO-GRO의 첫 유기식품기준이 1984년에 제정되었으며, BIO-GRO는 1986년에 IFOAM의 회원이 되었고, 1997년에 IFOAM에 의해 국제인증기관으로 인가되었다. 지난 5년간 빠른 성장을 계속하면서 BIO-GRO 는 최근 2배의 성장

을 이룩하였다.

BIO-GRO는 뉴질랜드에 등록된 법인회사로 이익추구를 목표로 일하는 단체가 아니다. Bio-Gro조직의 규칙은 이사회가 결정하여 BIO-GRO사업을 수행하며 거기에 적합하도록 집행해 나가고 있다. 이사회는 집행부를 고용하고 있다.

BIO-GRO는 1999년에 SGS 뉴질랜드 조사 활동과 이 상황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종속 계약을 했다. 조사관들은 Fiji, Niue,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인증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Bio-Gro가 수행하는 인증품목은 IFOAM 인가사항인 유기농산물, 축산물, 가공품, 야생수확물, 유통업 등이며, IFOAM 카테고리 밖의 품목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품목으로는 유기섬유 가공품, 유기수산물 등이다.



(7) Bioland e.V. (Germany)

Bioland는 1971년에 유기농업을 장려하고 교육, 연구, 로비를 하는 Bio-Gemuese eV.의 기관으로 시작되었다. Bioland의 유기농업기준은 1972년에 최초로 제정되었다. Bioland와 Bioland 상표는 1976년에 만들어져 등록되었다. 그 후 첫 번째 지역사무소가 Bavaria에 개설되었고, 1980년대에 다른 지역사무소가 만들어 졌다.

오늘날 Bioland는 독일연방내 8개 주에 주 협회를 두고 있으며, Mainz에 본부를 둔 대규모 독일유기농업인협회의 하나가 되었다. Federal Delegates Assembly(연방대표자회의)는 60명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이 연방대표자회의는 1년에 2회 소집되어 예산 및 결산, 기준개정, 사업계획 등을 논의 결정한다. 2명의 연방대표자회의 상임대표는 Bioland의 일상업무를 관리한다.

Bioland는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 유통과 판매 촉진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다. Bioland는 2002년 IFOAM에 국제인증기관으로 인가된 이후에 모든 인증 결정은 Bioland 연방사무국의 책임하에 집행하고 있다.

Bioland는 그 인증업무를 독일내에 초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지만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른 이웃나라에도 인증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증품목은 유기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유통 등을 모두 포함하며, IFOAM 인증품목에 들어 있지 않은 유기수산물은 Bioland 인증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8) AIAB (**Associazione Italiana per l'Agricoltura Biologica, Italy**)

(9) Bolicert (볼리비아)

(10) CCOF (California Certified Organic Farmers)

(11) CCPB

(12) Ekoagros (Lithuania)

(13) IBD (**Instituto Biodinâmico, Botucatu/ Brazil**)

(14) ICS/FVO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ervices, Midina/ USA)

(15) JONA (Japan Organic & Natural Foods Association)

(16) KRAV (Sweden)

(17) KEZ (체코슬로바카아)

(18) NASAA (Australian and International Certifiers, Australia)

(19) Naturland (Germany)

(20) OCIA (USA)

(21) OIA (Argentina)

(22) OFDC (China)

(23) QAI (Quality Assurance Interantional, San Diego/ USA)

(24) 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Ltd. (UK)

### 그림11 Bio-Inspecta의 외국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인증의 사례

- 인도와 탄자니아의 목화
-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와인 가공회사
- 루마니아의 곡류생산 농가와 치즈가공업체
- 큐바의 오렌지류
- 가나의 향신료, 열대과일 및 채소농가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산란계 농가
- 알바니아의 올리브유 생산농가



○ 선진국의 민간품질인증의 발전 추세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제1자 인증체제로 출발하였다가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점차 제3자 인증체제로 변화하였으며, 유기식품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각국의 유기농업 관련회사들은 앞다투어 국제인증기관을 설립하고 있음

▽ 제1단계: 제1자 민간인증기관화 - 생산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생산자단체가 인증

▽ 제2단계: 제3자 민간인증기관화 -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독립적 인증단체가 인증

▽ 제3단계: 국제품질인증기관화 - 독립적 관계 + 권위있는 인증기관 + 해외 수출 기획 + 외부지원 (독일,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스웨덴, 호주, 미국) 등

○ 유기식품의 품질인증업무를 해외에 나가 유기식품의 교역에 필요한 해외 유기식품 품질인증으로 적극 확대해나가는 추세 (미국, 독일, 스위스, 네델란

드, 스웨덴 등) "국제품질인증기관화"

▽ 자국 유기식품의 수출(가공식품, 섬유제품, 화장품, 목제품, 음주류, 침구류)

▽ 해외 유기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

▽ 외화획득의 새로운 사업영역

○ 년차별 및 단계별 일정제시에 따른 농림부의 조치내용

-> 2006년까지의 3년간의 년차별 일정과 단계별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단계별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1단계: 민간인증기관으로 현행의 인증업무를 전부 넘기는 단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 유기식품에 관련한 일체의 인증업무를 중단하고 민간인증기관에서 이를 담당하도록 함.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업무는 지자체와 농협에서 담당하도록 조치하고,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에서 담당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 할 것임.

농관원의 인증업무 종료시점은 2006년 1월이 적당할 듯함. 농관원은 향후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관리, 감독에만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제도정비와 직원연수 등에 약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함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민간인증기관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

▽ 2단계: 현행의 생산자단체 위주로 지정되어 있는 1차 민간인증기관을 제3차 민간인증기관화로 이행하는 단계. 이 과정은 물리적인 강압이나 제도적 장치에 의한 강제조치가 아니라 인증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의해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 선택되어 자연적으로 이행되도록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할 듯.

선진유럽에서는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인증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제1차 인증시대가 끝나고 제3차 인증시대로 넘어갔음에

유의하고,

농림부는 제3자 민간인증회사(단체, 기관, 연구소)가 탄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복수의 제3자 민간인증회사가 출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 3단계: 제3자 민간인증회사(단체, 기관, 연구소)가 국제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제인증기관의 조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고급 기술자의 훈련에 농림부가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유기식품 국제품질인증기관 지정 획득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표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 역할의 재정립

년도별	추진단계	추진내용
2004년	○관련법 및 직제 개편안	○직제개편 방향 마련
2005년	○직원 자질향상	○담당직원 연수(국내 대학원 및 해외 감독관청, 독일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
2006년	○직제개편 ○인증업무 중단 ○관리감독 업무 개시	○인증기관 관리감독 체제 구축

표10. 제3자 민간인증기관화 추진프로그램

년도별	추진단계	추진내용
2004년	○관련법 및 규정 개정안 (인센티브 제공 등)	○설립유도 홍보
2005년	○제3자 인증기관 설립 유도 ○인증수수료 현실화 조치	○인센티브 제공 ○조사관 자격 획득 교육프로그램의 정례 실시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의 참여 유도 ○농관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도록
2006년	제3자 인증기관 인증농산물 홍보	○포장지, 홈페이지, 전단지, 잡지, 방송 및 TV

표11. 국제인증기관화 추진프로그램

년도별	추진단계	추진내용
2004년	○관련법 및 규정 개정안 (인센티브 제공 등)	○설립시 인센티브 (정부, 지자체, 유기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2005년	○국제인증기관 설립을 적극 지원	○인센티브 제공 -조사관 교육 (국제조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수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최) -인증위원 자질향상 프로그램 (인증위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인증위원이 확보되도록 희망자와 자격도달가능자를 대학원 진학, 해외 연수 및 유학을 통해 자격확보하도록 자질향상 기회 제공)
2006년	○국제인증기관 신청	○자격과 자질있는 우수한 조사관과 인증위원 확보(학위, 경력 및 외국어) ○국내 제3자 인증기관으로 우선 활동하면서 인증프로그램의 시험가동
2007년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팀 내사	○IFOAM 및 IOIA 조사팀



## 12. 친환경가공식품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과 효율적 관리방안 탐색

###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가 1999년 11월 11일에 친환경농업 원년의 해를 선포한 이후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생산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일차 유기농산물 그대로 유통이 되고 있고, 유기가공식품으로서의 제조는 겨우 전국에 소규모의 몇 개 업체가 시도를 하고 있으며, 그나마 아주 미약한 현실정이다. 일반농산물보다 장기저장의 취약점을 갖고 있는 유기농산물은 유기식품가공업이 발전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움.

○ 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인증수수료의 현실화 이전에 작목반과 같은 그룹인증체계의 도입(내부조사제), 획일적인 매 농가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의 지양 등을 통해 인증수수료 비용 발생의 저감을 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민간인증기관이 제3자화 되어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국제인증기관으로 발돋움할 필요성이 있음

○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이하 친환경가공식품이라 칭함)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하여는 표시제도나 인증제도가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즉 유기가공식품에 대하여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제도와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제도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음<sup>12)</sup>. 이는 '유기'에 대한 개념은 국제적으로 공론화가 이루어져 공감대를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기준도 규정되어 있지만, 친환경식품 또는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생소하게 받아들이며, 이에 대한 기준도 아직은 논의되는 단계이고, 무농약 또는 저농약 등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일반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과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탓이기 때문임.

---

12)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통합 연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임

표12.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품에 대한 관리기준 비교

구 분	유 기 농 산 물	유 기 가 공 식 품
법적근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 17조	식품위생법 제 10조
관할기간	농림부(농관원)	보건복지부(식약청)
표시원칙	강제규정(강제인증제)	자율규제(자율표시제)
인증기관	정부(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국내가공품: 인증기관 없음 수입가공품: 수출국의 인증기관
사후관리	생산관정 및 시판품조사 및 농약잔류검사 등으로 확인	통관시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서 첨부로 유기식품 여부 확인

○ 우리나라에는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통합, 연계관리 체계가 아직 미 구축되어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은 정부 및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가공식품은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을 받지 않아도 가능

->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인증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유기가공 식품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외국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인증이 일원화되어 있음

○ 즉 국내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제도가 전혀 상이한 중앙부서(농림부, 보건복지부)에 의해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유기농산물은 정부 및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유기가공식품은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 불합리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유기가공식품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비해 외국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이 일원화 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연계되어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가공되는 유기가공식품의 인증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도 미비한 상태에 있음

○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는 확립되어 있지 않은 반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은 수출국에서 인정하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해, 국내에서 생산/가공되어 외국으로 수출하는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수입국이 인정하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음

○ 현행제도상 국내유기농산물의 가공품제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원료부터 인증을 받아야하고 또한 유기농산물을 원료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친환경육성법에 의한 인증을 받아야만 함.

○ 그러나 유기농산물 가공품을 수입할 시는 우리나라의 인증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출국에서 인증받은 것(IFOAM 기본규약, Codex유기식품규격, 또는 수출국의 유기식품 규격)이면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

○ 국내 및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 미비로 인한 불만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는 확립되지 않은 반면 외국 수입유기가공식품은 수출국이 인정하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모순

-> 수입 유기가공식품은 국내 진입이 용이한 반면, 국내 유기식품의 해외 진출은 상대적으로 크게 불리한 형편임

○ 우리나라는 유기가공식품의 여부를 인증받은 유기농산물이 포함되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아직까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

표13.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비교

구 분	국내 유기가공식품	수입 유기가공식품
○ 표시기준		
- 원재료 사용	- 유기농산물 95%이상 사용	- 수입국 품질기준 적합(기준이 없는 경우 수출국 품질기준)
- 제조·가공	- 혼합사용, 방사선조사 및 GMO 금지 등	- 좌동
- 제조·공장관리	- 기계적·물리적·생물적 제조가공, 일반가공품과 동일설비·시간 사용금지, 별도 보관·저장	- 좌동
- 제조·공장관리	- 기계적·물리적·생물적방제, 세척·소독·살균에 화학약품 사용금지 등	- 좌동
○ 적합여부 판단	- 사후관리 추적확인	- 수출국에서 정한 인증기관 요건에 적합한 국제인증기관 발행 인증서

○ 그러나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외국에서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과 함께 동일 인증기관에서 인증해 주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기가공식품에는 인증절차 없이 표시제로 유통되고 있음

○ 다만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거 특산물과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생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가공품의 일부품목(4개<sup>13)</sup>)에 대하여 특산물로 품

13)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규정은 주로 전통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의 조문에서는 유기가공품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시행규칙 제32조 특산물품질인증의 항목 및 인증기준의 제7호에 “생산조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생산조건에 의하여 인증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을 1998. 11. 6 제정하였으며, 인증대상

질인증을 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기농식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국과 동등한 검사 및 인증제도를 갖춘 나라의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국 정부가 지정하는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판단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농림물자의규격화및품질표시적정화에관한법률(JAS법)」에 의해 JAS제도와 동등한 제도를 갖춘 국가를 지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상호인증협정(MRA)을 맺고 있음

○ 유기농식품에 대한 인증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식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움

○ 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하나 유기농식품은 별도 인증제도가 없어 인증 없이 유통이 가능(외국은 인증으로 일원화)

○ 수입 유기농식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운영

○ 식품표시기준에는 수입 유기농식품은 수출국이 지정하는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고, 수입 유기농식품은 국내진입이 용이함

○ 반면에 국내 유기농식품 수출시에는 수입국이 지정하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

품목으로는 녹즙 또는 쥬스류, 녹차류, 분말류 등을 인증대상 품목으로 고시하고,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관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에서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논란을 제기하고 있음. 법률적인 규정이 아닌 농관원장의 고시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산물품질인증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신청인의 원하는 경우 인증하는 자율적인 인증제도이므로 가공품에 대한 인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2)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 유기가공식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기식품 인증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하여 현행 인증기관이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도 함께 인증할 수 있도록 법률적 및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

○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기준 적합여부 판단부문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국제인증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있음. 단 국제인증기관이 국내에 설립 지정되기까지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중 수입 유기식품기준 적합여부 판단부문을 수입국 정부가 기준에 맞는 자격있는 국제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그 인증기관의 인증서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생산·유통량은 약 2,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나(2002년 6월말 현재 추정), 유기가공식품 수요확대로 향후 수입 유통부문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유기가공 품질인증식품: 김치·녹차·녹즙·분말 등 4종, 14개 품목(460톤)

-> 수입 유기가공식품 : 아기밀 등 완제품 18품목(514톤), 곡류·과일·과채류 분말 등 반제품 31품목(963톤)을 남양유업, CJ(제일제당), 유기농업협회 등 10개 업체가 미국·호주 등 13개국으로부터 수입(17개 외국인인증기관의 인증 유기식품)

표14. 유기가공식품의 국내 수입현황

연 도 별	건 수 (건)	중 량 (kg)	금 액 (S)
2000	92	317,942	656,629
2001	158	722,207	1,698,628
2002	304	1,007,037	3,018,922

○ 유기가공식품과 관련한 법령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등에 각각 산재되어 있어 이를 묶어 1개의 법령(가칭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품관리법)으로 모아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함

관 련 법 령	주 요 내 용
○ 농산물가공업육성법(제13조)	○ 특산물등의 품질인증(특산물·전통식품 품질향상 목적) -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 고시(농관원 99-6) · 고시품목 : 녹즙, 쥬스류, 녹차류, 분말류(4종)
○ 농산물품질관리법(제5조)	○ 품질인증기준 : 지명도가 높거나 상품 차별화 인정농산물, 일정 수준이상 등급 농산물 등
○ 식품위생법(제10조)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수입 및 국내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설정
○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	○ 친환경 인증농산물 : 저농약·무농약·전환기·유기농산물

- 국내 유기농산물·유기가공식품의 관리 일원화
  - > 국내 유기가공식품에 인증제도 도입(식약청이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하든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인증기능 부여)
  - > 유기식품법 제정 : 유기식품(농산물 및 가공식품 포함)
-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판단기준을 우리나라 중심으로 개정
- 소비자 입장에서 100% 유기농표시 제정

표15 농산물 및 식품 관리체계

현 행	개 정
○기준적합여부는 수출국 정부에서 정한 유기농산물·가공식품 표시에 관한 규정의 국제인증기관 요건에 적합한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판단.	○기준 적합여부는 수입국 정부가 심사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 자격있는 국제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그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로 판단
너)현행과 같음 (1) 거), (1)의 (가) ②내지 ⑥, (나) 및 (다)의 규정 [수입식품은 거), (2)의 규정]에 적합하고 유기농산물 이외에 어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도 최종 제품내에 남아있지 아니한 식품의 경우에는 ‘유기농100퍼센트(%)’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있다.	너)현행과 같음 (1).....식품첨가물도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의 경우에는 ‘유기농100퍼센트(%)’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표시면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거), (1)의 (가) ②내지 ⑥, (나) 및 (다)의 규정[수입식품은 거), (2)의 규정]에 적합하고 최종제품에 남아있는 원재료의 50퍼센트(%) 이상 95퍼센트(%)미만이 유기농산물인 경우에는 용기·포장의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3).....원재료의 70퍼센트(%)이상 95퍼센트(%)미만이 유기농산물인 경우에는 용기·포장의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하고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너)현행과 같음 (1) 거), (1)의 (가) ②내지 ⑥, (나) 및 (다)의 규정 [수입식품은 거), (2)의 규정]에 적합하고 유기농산물 이외에 어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도 최종 제품내에 남아있지 아니한 식품의 경우에는 ‘유기농100퍼센트(%)’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있다.	너)현행과 같음 (1).....식품첨가물도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의 경우에는 ‘유기농100퍼센트(%)’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표시면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거), (1)의 (가) ②내지 ⑥, (나) 및 (다)의 규정[수입식품은 거), (2)의 규정]에 적합하고 최종제품에 남아있는 원재료의 50퍼센트(%) 이상 95퍼센트(%)미만이 유기농산물인 경우에는 용기·포장의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3).....원재료의 70퍼센트(%)이상 95퍼센트(%)미만이 유기농산물인 경우에는 용기·포장의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하고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유기가공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 표시원칙도 유기농산물은 강제 인증되고 있으나 유기가공식품은 자율



표시제이며, 인증기관도 유기농산물은 정부 및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하고 있으며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국내가공품은 정해져 있는 인증기관이 없고 수입가공품은 수출국의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있음.

-> 무엇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은 생산과정 및 시판품 조사, 농약잔류검사 등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생산/ 가공되어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통관시 제출되는 외국인인증기관의 인증서 첨부로 유기식품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구 분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법적근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식품위생법 제10조
관할기관	농림부(농관원)	보건복지부(식약청)
표시원칙	강행규정(강제인증제)	자율규정(자율표시제)
인증기관	정부(농관원) 및 민간인증기관 - 외국인인증기관지정기준운용	국내가공품 : 인증기관 없음 수입가공품 : 수출국의 인증기관
사후관리	생산과정 및 시판품조사, 농약잔류검사 등으로 확인	통관시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서 첨부로 유기식품 여부 확인

○ 현행은 기준적합 여부는 수출국 정부에서 정한 유기농산물·가공식품 표시에 관한 규정의 국제인증기관 요건에 적합한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적합 여부는 수입국 정부가 심사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 자격있는 국제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그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로 판단하는 규정으로 관련 규정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임

현 행	개 선 안
○ 기준적합 여부는 수출국 정부에서 정한 유기농산물·가공식품 표시에 관한 규정의 국제인증기관 요건에 적합한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판단	○ 기준 적합 여부는 수입국 정부가 심사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 자격있는 국제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그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로 판단

○ 수입농산물 가공품의 경우는 국내인증 기준이 아닌 당해 제품 수출국정부에서 정한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등의 관리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당해 수출국에서 유기 인증서만 받아서 첨부하면 국내에 수입될 수 있는 형편에 있음<sup>14)</sup>

-> 앞으로는 유기농산물의 인증업무와 같이 수입되는 모든 유기농산물 가공품도 유기식품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키위해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형평성에 맞고 무분별하게 저가로 마куп잡이 수입되는 것을 막고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으며 국내 유기농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바랄 수 있음.

-> 강림유기김치의 경우, 2001년 2월 국내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부터 국내 최초로 유기농산물 가공품 김치 품질인증을 받아 일본으로 수출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일본의 유기JSA법에 의해(2001년 4월 1일 시행) 유기라는 스티커를 부착할 수 없었음. 수출을 위해 강림유기김치는 막대한 경비와 인력을 들여 2001년 12월 유기JSA인증을 받아 이 문제를 해소하였음. 그런데 국내시장에는 유기농 음료, 면류, 통조림, 차류, 간장류 등 다양한 종류의 유기식품들이 이미 수입되고 있어 수입 유기농산물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국내 인증제도가 필요함.

○ 결론적으로 유기가공품 인증제도를 국내 관련규정에도 신설할 시대적 필요성과 요구가 있음.

-> 유기가공품의 인증을 통해 유기농산물의 시장수요를 크게 늘릴 수 있음

14) 이런 점을 악용해 작년 11월 13일에는 국내에서도 굴지의 이유식 제조업체인 N유업이 식품원료 수입업체인 U통상의 가짜 영문 유기농인증서로 국내에 수입 판매된 사건은 현행제도의 개선없이 앞으로 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 인증 유기가공품은 다양한 식품류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선호도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음

->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유기가공품이 현재 국내시장에서 인기리에 유통 판매되고 있음

-> 유기농업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

○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관리방안에 대한 소견

-> 한국 FDA(식약청)로부터의 업무 이관을 받아야 - “유기가공식품 분야”

-> 농림부가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업무를 소관업무로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음

-> 농림부는 유기식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가칭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품관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3) 친환경가공식품과 유기가공식품의 분리 인증체계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면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 유기재배 모두를 친환경농산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기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며 코덱스 가이드라인에도 유기재배로 인정하는 것은 전환기유기재배 이상을 유기로 인정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산물판매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무농약재배의 경우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어 무농약, 무화학비료로 농사짓는 유기재배보다 크기와 무게가 2-3배정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데 판매시에는 안전성은 제쳐두고 무농약으로 재배한 것이 크고 품질이 좋아보여 가격면에서 거의 유기재배와 똑같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음

-> 이는 홍보부족과 소비자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유기재배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셈이며 앞으로 재배, 생산되는 원료과정부터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가공품에서도 차별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혼돈으로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유기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 특산물등의 품질인증제도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특산물과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에 따라. 이 법에서 “특산물”이라 함은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고 하여 농산물과 가공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규정은 주로 전통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의 조문에서는 유기가공품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시행규칙 제32조 특산물품질인증의 항목 및 인증기준의 제7호에 “생산조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생산조건에 의하여 인증한다”라는 규정이 있음. 이에 따라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을 1998. 11. 6 제정하였으며, 인증대상품목으로는 녹즙 또는 주스류, 녹차류, 분말류 등을 인증대상 품목으로 고시하고,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관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15)</sup>.

○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친환경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농관원장이 고시를 통해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조처하는 것이 적절할 듯함. 이 경우 농관원장은 지자체의 친환경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이 경우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업무는 제3자 민간인증단체가 담당하는 인증체계로 바꾸어 나가는 제도정비가 필요할 것임

○ 중국의 경우 무공해농산물의 인증은 각 성, 시, 현정부가 담당하고 인증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음. 또한 무공해농산물에 대한 인증근거는 유기식품, 녹색식품 인증의 근거 법률과는 전혀 별개의 법률에 따라 인증되고 있음

-> 무공해농산물은 유럽의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와 유사한 것임

○ 유럽연합(EU)의 경우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GAP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희망국들도 이를 실시하여야 함

-> 말타의 경우 유럽연합 진입을 위해 2002년도에 독일연방농업연구센터의 협력으로 GAP제도를 도입

---

15) 일부에서는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논란을 제기하고 있음. 현재는 법률적인 규정이 아닌 농관원장의 고시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산물품질인증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신청인의 원하는 경우 인증하는 자율적인 인증제도이므로 가공품에 대한 인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음

### 13. 인증수수료 현실화

○ 인증수수료는 인증을 통해 획득되는 이득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증수수료 결정의 원칙임.

○ 독일에서는 유기식품 인증수수료 일부를 자자체에서 보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유기식품 인증수수료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적절 할 듯.

○ 유기식품 인증수수료는 국내 내수용 인증수수료와 수출용 인증수수료는 각각 차이가 있음. 또한 외국생산 국내 수입용 인증수수료는 출장비 등이 발생됨으로 인증수수료에 출장비 등이 별도로 부과됨

○ 중국의 경우 무공해농산물은 각 성, 시, 현 정부가 인증해 주고 있으며, 인증의 근거도 유기식품, 녹색식품과는 별도의 법률 근거에 따라 인증되고 있음.

-> 무공해농산물의 인증수수료는 무료임. 단지 라벨표시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만 징수

-> 따라서 우리나라도 친환경농산물은 지자체 단체장(도, 시, 군)이 인증해 주고 인증수수료는 무료로 하는 것이 적절 할 듯함.

#### 1) 자국에서 생산되는 유기식품

##### ○ 일본의 인증수수료

-> 생산농가, 가공업자가 지불하는 인증수수료는 평균 2,290,000원이며, 소매업자, 수입업자가 지불하는 인증수수료는 1,446,000원 가량임.

-> 개인사업 인증단체(상업용)의 인증수수료는 최저 2,000,000원 내지 최고 3,000,000원

-> 그러나 일부에서는 염가의 인증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증단체들이 있음. 소비자가 중심으로 설립한 인증단체에서는 인증수수료를 최저 수준에서 부과하고 있음 (최저 500,000원 내지 최고 1,000,000원 정도)

-> 인증수수료는 대개 인증 획득 생산물의 약 0.01%가 적정 수준이라는 원칙하에서 인증기관별로 자율 결정하고 있음

○ 인도의 인증수수료

-> 농가그룹별로 1,000 US\$이 부과되고 있으나, 단위농가그룹에 약 800 농가가 가입되어 있어 각 농가별 부담액은 낮음

-> 1농가가 부담하는 인증수수료는 1.3 US\$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낮은 액수에 지나지 않음

-> 그룹에 속한 800농가에 대해 약 10%를 방문 조사할 경우 출장비는 별도로 청구되고 있음

-> 출장비는 인증수수료와는 별도로 계약전에 논의하여 결정하여 Invoice로 청구하게 되어 있음

○ 독일의 인증수수료

-> 생산농가가 지불하는 인증수수료는 재배작물의 종류, 농가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으며, 대개 최소 30만원 ~ 최대 90만원 수준임

-> 농가가 모여 그룹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유럽의 경우 약 15%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미국의 민간인증기관 CCOF와 MOSA의 인증수수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CCOF(California Certified Organic Farmers/미국 동부지역 인증기관)

(1) 인증신청수수료(유기)

○ 신규신청자 : \$175(일반비용160, 지부지원금 15)

○ 연간수수료

- 농작물 및 축산 : 총매출액의 0.005(1%의 1/2)

- 가공 : 총매출액 \$220만까지 총매출액의 0.005(1%의 1/2), 총매출액 \$220만이상 초과매출액의 0.001(1%의 1/10)

\* 상한 : 납부할 금액이 \$15,000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수료가 면제

- 취급(경영규모에 따라 다름) : 유기상품 판매액(매입비 제외) 0.1%(0.001)

\* 취급자 중 연간매출액이 \$20,000이하인자는 수수료 면제

-> MOSA(Midwest Organic Service Association 미국 중서부지역 인증기관)

(1) 인증신청수수료

- 농작물 축산 신규 신청자 : \$150 + 추가(낙농, 가축, 제분 등)
  - 농장내 가공/취급 : \$100(일년 매출액 \$20,000 미만), \$200(\$20,000 ~ \$100,000/년), \$400(\$100,000이상/년)
  - 심사 보증금 : \$200(농장내 가공/취급 포함시 \$125 추가)
  - 회비 : \$50(회보, 기타 우편물 등)
- 농작물 축산의 연간 수수료
  - 연간 매출액 \$200,000 이하 매출액의 0.75%
  - 연간 매출액 \$200,000 초과 매출액의 0.1%
  - 판매 수수료 상한선 : \$7,500
  - 심사 보증금 : \$200(농장내 가공/취급 포함시 \$125 추가)

2) 외국에서 생산되는 유기식품 또는 수출용 유기농산물

○ 인도의 인증수수료

- > 외국으로 수출하는 유기농산물일 경우, 인증수수료는 1800~2,300 US\$ 정도임. 즉, 기본 인증수수료 외에 800~1,500 US\$이 추가적으로 청구되고 있음

○ 스위스의 경우: 외국에서 유기식품 인증을 신청할 때에 납부하는 인증수수료는 약 540만원 내외가 소요됨. 단, 여기에는 시료분석과 숙박비/교통비 등은 제외한 것이므로 실제 소요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음.

- > 일례로 스위스 Bio-Inspecta사의 인증수수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음.

표16 스위스 인증수수료의 부과 기준

항 목	소요시간 / 기간	비용 (스위스 프랑)	단 위
현장방문 및 조사	1/2 ~ 2일	850	1일
현장방문 준비 및 조사보고서 작성	1 ~ 2일	850	1일
출장여행	1/2 ~ 2일	850	1일
인증심의	1 ~ 8시간	115	1시간
인증서 발급	첫 5매 추가 1매당	50 45	
수입 증빙 관련서류 발급		170	1매
기타 업무		850 115	1일 1시간
시료분석	토양시료, 수질시료, 식물체시료, 생산물시료	소정 소요비용	
기타 관련 비용	철도, 항공, 렌트카, 교통비, 숙박비, 식비	소정 소요비용	

\*\* 상기의 인증수수료는 농가규모, 경작지의 분포, 재배 작목, 축종, 가공품 유무 등에 따라 다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신청서류를 접수할 때에 인증수수료의 1/2을 선납하고, 나머지 잔여금액은 인증여부가 결정된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고 있음. 30일이 경과되어도 납부치 않을 경우 법정 은행이자를 추가로 적용하고 있음

### 3) 지자체의 인증수수료 보조 (자국생산 유기식품의 경우)

○ 독일의 경우 유기농업 생산농가에 대해 유기농산물 인증수수료를 각 주정부에서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인증수수료 + 출장비)

->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州에서는 12만원/ha을 지원하며, 농가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함

○ 그러나 이 같은 보조금 지불은 국내 인증 유기식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외국생산 유기식품 대한 인증 수수료에 대한 보조는 없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가 유기식품 인증 비용의 일부를 인증획득 농가에 대해 보조해 주는 것이 적절 할 듯함.

-> 보조금의 규모는 인증수수료 및 출장비 등 인증소요비용의 30%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적절할 듯

#### 4) 추정 인증수수료 원가 및 현실화 방안

##### (1) 민간인증기관이 제출한 추정 인증수수료

○ 적정수수료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의 기초로 현재의 민간인증단체 원가계산을 참고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일례로 민간인증기관 “홍살림”의 수지분석(2003년도 제출자료)을 참고로 하면 다음과 같음

##### A. 인증 관련 지출운영비 및 인증기관의 수입 추정치를 근거로 한 계산

① 민간인증기관 운영비: 민간인증기관 최소 소요비용 산정(신규인증 연간 300건 처리시)

○ 공통 사항 : 117,000천원

- 인건비 : 상근간사 1인, 상근심사원(2인 이상), 상근 분석담당 1인  
= 90,000,000원

- 사무비 : 5,000,000원

- 잡 비 : 5,000,000원

- 현장지도사 연수회 : 2회 × 1,000,000원

- 운영비 : 5,000,000

○ 신규 인증 : 32,000천원

- 출장비 : 300회 × 100,000원 = 30,000,000원

- 회의비 : 5회 × 400,000원 = 2,000,000원

- 생산과정 조사 : 75,000천원
  - 출장비 : 300회 × 100,000원 = 30,000,000원
  - 잔류농약 분석비 : 300건 × 50% × 300,000원 = 45,000,000원
  
- 유효기간 연장 : 33,000천원
  - 출장비 : 300회 × 100,000원 = 30,000,000
  - 사무비 : 3,000,000원
  
- 합 계 : 257,000천원 / 1건당 소요비용 428,333원 (신규300건 + 연장300건)

- ② 민간인증기관 운영 수입 (300건 인증시)
  - 인증 수수료 : 30,000원/건 × 300건 = 9,000,000원
  - 연장 수수료 : 15,000원/건 × 300건 = 4,500,000원
  - 출장비(신규) : 100,000원/건 × 300건 = 30,000,000원
  - 출장비(연장) : 100,000원/건 × 300건 = 30,000,000원
  - 토양 분석비 : 50,000원/건 × 600건 = 30,000,000원  
(미생물 분석)
  
- 합 계 : 103,500천원 / 1건당 수입 172,500원 (신규300건 + 연장300건)

- ③ 수입 / 지출 대비  
연간 153,500천원 적자 / 1건당 255,833원 적자

B. 민간인증기관 실제 운영비 결산의 사례 (2002년 흙살림 인증사업 결산)

- ① 2002년 인증사업 수입 (347건 처리)
  - 인증 수수료 수입 : 30,000원 × 347건 = 10,410,000원
  - 인증 출장비 수입 : 4,670,400원
  - 토양 미생물 분석 : 14,700,000원
  - 토양 비료 분석 : 13,000,000원
  - 농업 용수 분석 : 3,000,000원
  - 인증 스티커 제작 : 2,024,000원

- 인증 지침서 판매 : 142,000원

합 계 : 47,946,400원

- 인증 1건당 수입 : 138,174원

② 2002년 인증사업 지출

- 인증 출장비 : 2,919,850원
- 인증위원 회의비 : 780,000원
- 분석 용역비 : 4,000,000원
- 우편 발송료 : 679,430원
- 사무용품구입 : 2,115,500원
- 소모품 구입 : 911,300원
- 인증지침서 발간 : 980,000원
- 인증스티커 제작 : 1,935,600원
- 인증기관 홍보용 책받침 제작 : 2,800,000원

합 계 : 17,121,680원

인건비(상근심사원 2명, 상근간사 1명, 분석담당 1명 : 90,000,000원)

포함시 107,121,680원

- 인건비 포함시 인증 1건당 지출 비용은 308,708원

\*\* “흠살림”이 요구하는 인증수수료 현실화에는 31만원의 인증수수료  
인상요구안이 들어 있음

③ 수입/지출 결산(인건비 포함시) : 인증 1건당 170,534원 적자

(2) 인증수수료 현실화와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

○ 상기 추정수수료 원가계산에는 토양, 식물체, 수질, 대기의 시료를 조제

분석할 수 있는 분석시설은 자체 보유하거나, 분석시설을 갖춘 외부기관과 분석업무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고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분석 기자재 구입비용 또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등을 인증수수료 원가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인증기관에 분석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음.

-> 인증기관이 인증을 위해 모든 식물체, 수질, 토양시료에 대한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한 관련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형편임

-> 우리나라에서 이같이 토양 및 수질시료 분석을 의무적으로 모든 시료에 대해 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어 인증수수료 인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민간인증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시료분석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도 한 몫이 되고 있음

○ 조사관이 현장방문조사 또는 인터뷰를 실시할 때 의심이 가는 경우 또는 인증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식물체, 수질,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료채취비용 과 분석비용을 인증을 신청한 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인증수수료에 이를 균등하게 일체 포함하여 모든 인증신청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또한 “흙살림”의 수지분석의 경우 토양미생물분석, 토양비료분석, 농업용수 분석 등의 비용을 받았고, 또한 분석용역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들 분석비 부문을 제외시킨다면 적자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를 위해서는 모든 농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료채취 분석은 지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민간인증기관이 시료분석을 일괄적으로 전 신청농가에 실시하지 않고 의심농가에 대해 선별적으로 실시할 경우 인증수수료 지출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조처는 향후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과 현재 농림부가 구상중인

유기농산물 생산이력조사시스템<sup>16)</sup>을 실시하는 조처와 더불어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유럽 각국에서는 인증기관은 토양, 식물체, 수질, 대기의 시료를 조제, 분석할 수 있는 분석시설은 자체 보유하거나, 분석시설을 갖춘 외부기관과 분석업무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고 있어도 무방함.

-> 따라서 고가의 분석기자재를 열악한 재정규모의 민간인증기관이 갖추고, 분석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애당초 무리한 시도이므로 유럽과 같이 의심이 나는 농가에 한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이 경우 시료채취 및 분석비용을 해당농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해 나가면 상당부분 인증수수료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분석기기를 갖추고 시료 27점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흙살림의 경우 약 2억원이 필요하다고 함. 또한 1건당 17만원의 적자(“흙살림” 2002년의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함.

-> 현행 규정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 실시하는 것과 같은 “의심스러운 경우 시료분석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국내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증기관이 자체 실시한 간이분석결과도 인정하지 않는 실정임.

-> 따라서 매 농가의 시료를 분석기관에 맡겨 분석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현행 규정하에서는 신청농민들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이 조사 및 인증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나는 농가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시료채취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규정을 개정할 경우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인증수수료 및 소요경비는 현행보다 약간 상향 조정된 선에서 인상하는 것이 적절 할 것임

---

16) 유럽에서는 모든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에 대한 생산과정과 가공과정 등에 대한 생산이력조사 역 추적이 가능함

○ 결론적으로 민간인증기관에서는 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인증수수료의 현실화 이전에 작목반과 같은 그룹인증체계의 도입(내부조사제), 확실적인 매 농가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의 지양 등을 통해 인증수수료 비용 발생의 저감을 우선적으로 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인증기관이 책임을 지고 인증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한 책임은 인증기관이 담당하도록 인증표시 우측에 인증기관의 마크와 주소/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하여 시장에서 소비자가 인증기관의 신뢰도도 함께 평가하며 상품을 구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즉, 재배농가와 인증기관이 공동책임을 지고 인증표시를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민간인증기관이 자체 분석한 분석데이터를 신뢰하고 그 인증농산물에 대한 책임인증을 사후에 수거분석을 통해 또는 시장(소비자)의 신뢰성을 통해 민간인증단체에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현행과 같이 공인기관 분석치가 없으면 분석결과를 인정치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의 경우 토양조사 등이 언제나 요구되지 않고 의심나는 경우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의심나는 농가에 한하여 보완적인 시료분석을 민간인증기관의 책임하에 의무화하고 이 같은 분석도 자체 또는 외부 공인분석기관의 분석결과를 민간인증기관의 책임하에 함께 인정해 주는 것이 적절할 듯함.

-> 민간인증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그 인증과정의 공정성 여부와 책임을 농관원이 관리감독을 통해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인증수수료와 관련하여 법령개정(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22조 수수료 등)을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령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①법 제22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수수료 및 출장비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의

수수료 납부방법은 당해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증수수료를 법률로 상한선을 규정하지 말고 민간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 할 듯.

-> 미국의 NOP규정, 독일의 인증수수료 규정 참조

->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민간인증기관이 그때 그때 최저의 인증수수료를 제시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

○ 결론적으로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인증업무 외에 향후 운송업자, 창고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등이 인증을 받게 될 경우 인증수수료 수입은 막대하게 커질 수 있으므로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인증수수료는 상한선만 정해 놓고 민간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3) 적정 인증수수료 인상액

○ 현행 수수료 규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①인증의 신청수수료가 신청자의 사업형태(경종, 시설농업, 축산, 가공, 버섯 등)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농업인의 영농규모에 합리적이지 못함.

② 시장개방에 따른 국외 인증의 경우 외국에 비해 극히 저렴

- 생산자 인증 : 미국 \$150+년간매출액×0.005 + 출장비, 일본 229,000₩  
\* NOP 7 CFR Part 205.642 : 수수료는 인증기관이 별도로 정함
- 취급자 인증 : 미국 \$150 + 연간매출액×0.005 + 출장비 , 일본 229,000₩
- 인증기관 : 미국 \$500 + 출장비, 일본 51,200₩ + 출장비

③ 출장비가 신청자의 인증면적, 생산량 등 심사대상과 관계없이 2일로 규정되어 초과되는 심사일수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또한, 국외인증의 경우 2일만으로는 심사가 불가능 함

- > 일본의 경우 인증심사를 위한 출장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심사에 소요되는 출장비일체를 신청자가 부담하고 있음.
- 각국의 인증수수료는 인증 획득 농산물 판매가의 0.01%에 상당하는 선에서 액수가 책정되고 있음. 독일, 미국 등에서는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 미국은 NOP(미국유기농업법)의 7 CFR Part 205.642에서 인증수수료는 인증기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민간인증기관은 분석기기를 갖추고 시료를 분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인증농가의 인증수수료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나 미국, 캐나다의 경우 민간인증기관이 분석기와 설비를 갖추도록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 인증신청시 제출한 각종 서류 검토와 현장방문조사 등으로 철저히 유기농업 영농기술 실천여부를 검토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1차적인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임. 만일 이 과정에서 의심이 나는 경우에 한하여 토양검사, 수질검사, 식물체검사 등을 계약을 맺은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분석기와 설비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외부의 대학, 연구기관 및 전문 분석센터와의 분석업무 협약을 맺어 필요할 경우 의심나는 시료를 송부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 이 경우 해당농가는 분석설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 비용은 정상적인 인증수수료와는 별개로 간주하여야 할 것임
- 인증수수료 계산은 사무실 운영비, 인증위원위원회 회의비, 인증위원 수당, 조사자 출장비 및 수당 등이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됨
- 이에 근거하여 인증 관련 지출운영비 및 인증기관의 수입 추정치를 가상하여 인증수수료를 추산한 결과, 적정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인증수수료는 정부원가계산 제도(2001, 조달청)에 의한 “종합원가계산<sup>17)</sup>”에 준하여 원가를 계산하였음.

○ 종합원가계산은 인증원가(재료비, 노무비, 인증경비를 포함),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계산하여 총인증수수료 원가를 계산하였으며, 예정인증수수료는 총 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시하였음.

○ 인증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원가비목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계산하였음.

#### 가) 재료비

○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는 인증의 경우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

#### 나) 노무비

(1) 직접노무비는 인증작업에 종사하는 조사관에 노동력에 대가로서 상호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지불경비의 액수임

(2) 간접노무비는 직접 인증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인증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현장 감독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 그러나 인증시스템에서는 간접노무비의 계상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며, 조사관과의 계약에 이미 포함될 수 있는 액수임

#### 다) 인증경비

(1) 인증을 위하여 소비된 인증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인증기관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됨.

---

17) "종합원가계산"은 일정기간에 인증하는 인증품 전체에 대하여 그 총원가를 계산하고 이것을 그 인증기간의 총생산으로 나누어서 인증 원가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분할원가계산(Division Cost Accounting)이라고 함

(2) 인증경비를 계상함에 있어, 그 종류나 금액이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거나 인증하는데

(3) 인증경비의 세비목은 다음과 같음

○ 전력비, 수도광열비: 인증 목적물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

○ 운반비: 인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료운반비

○ 감가상각비: 인증업무에 사용되는 건물 등 유형고정 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계산

○ 수리수선비: 인증업무에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차량 등의 수리수선비

○ 특허권사용료: 인증업무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해 지출되는 비용.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수선비는 제외

○ 기술료: 인증업무에 직접 필요한 노하우 비용(Know-how 비용)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것.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

○ 연구개발비: 인증업무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이연상각하되 그 인증수량에 비례하여 배분계산

○ 지급임차료: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접 사용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를 인증기간에 따라 계산

○ 보험료: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

- 복리후생비: 인증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 등 인증작업 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
- 보관비: 인증업무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
- 안전관리비: 인증업무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
- 소모품비: 인증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
- 여비, 교통비, 통신비: 인증업무 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 전화 사용료, 우편료, 인터넷 연결사용료
- 세금과공과: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 폐기물처리비: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도서인쇄비: 인증업무를 위한 참고도서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 VTR제작비 등
- 지급수수료: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
- 기타법정경비: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

라) 일반관리비

- 인증단체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 제조원가에 재경부장관이 정한 비율(6~14%)을 초과하여 계상치 못하도록 제한

-> 일반관리비=인증수수료와 일반관리비-(광고선전비+대손상각 등)

->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인증원가×100

○ 일반관리비에 인정되는 내역은 임원보수, 급료와 임금, 제수당, 복리후생비, 퇴직금,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수선비, 보관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지급수수료, 조사연구비 등으로 제한하였음

○ 일반관리비에 인정되지 않은 내역은 접대비, 광고선전비, 대손상각비, 기부금, 기밀비, 판매촉진비, 보상금, 시장개척비 등

마) 이윤

○ 인증단체의 이익을 말하며, 인증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20%이내에서 계상하였음

바) 인증수수료의 원가계산

○ 유기농가 뿐만 아니라 운송업자, 창고업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입업자들도 인증을 획득하도록 제도적, 법률적 조치가 보완될 경우에는 민간인증단체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에는 민간인증단체가 자유경쟁에 따라 유기농가의 인증수수료는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법률에서 인증수수료의 금액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상하한선을 20~50만원선으로 정해놓고 민간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인증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가공식품에 대한 새로운 인증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함

○ 유기농산물의 경우 인증수수료는 유기농가의 신선농산물 예상출하액을 기준으로 0.01%수준에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고, 유기가공품에 대한 인증수수료는 가공품 출하 판매액을 기준으로 0.1% 수준에서 받는 것이 적절함.

-> 가공품 인증수수료가 유럽과 미국 인증기관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다음은 인증신청건수를 신규 연간 300건, 연장 연간 300건으로 가정하였을 경우를 상정하고 인증수수료(인증원가+일반관리비+이윤)를 계산한 것임. 인증신청농가수가 300건 이상일 경우 인증원가는 이보다 훨씬 낮아 질 수 있으며, 신청농가수가 300건 이하일 경우 이보다 높아 질 수 있을 것<sup>18)</sup>임

① 조달청의 원가계산에 의한 민간인증기관 인증수수료 (300건 신규인증 + 인증 연장 300건의 경우) 추산

### 인증경비

○ 직접재료비

▽ 해당사항 없음

○ 간접재료비

▽ 해당사항 없음

○ 직접노무비 : 18,600만원

▽급료임금:16,600만원

-상근 간사 1인\*250만원\*12월=3000만원

-상근 사무원 1인\*150만원\*12월=1800만원

-상근 사무보조원 1인\*100만원\*12월=1200만원

-신규인증 신청 (조사관 고용 업무계약<sup>19)</sup>)

18) 그러나 인증신청의 소비자인 유기농민이 선호하지 않는 민간인증단체는 시장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인바 이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음. 모든 인증단체가 지정을 받으면 반드시 명맥을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임. 외국의 경우 대개의 인증단체의 인증신청건수는 약 600~5,000건 내외가 많음.

19) 조사관은 1일에 3농가 내외의 인증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1일 30만원내외의 조사계약업무를 체

300건×10만원=3,000만원

-신규인증 생산과정 조사 (조사관 수시 고용계약)

무작위 1/2회×300건×10만원=1,500만원

-연장인증 신청 (조사관 고용 업무계약)

300건×10만원=3,000만원

-연장인증 생산과정 조사 (조사관 수시 고용계약)

무작위 1/2회×300건×10만원=1,500만원

-인증위원 회의수당

5회×40만원×8명=1,600만원

▽제수당 : 1,500만원

-상근 간사 1인 250만원×300%=750만원

-상근 사무원 1인×150만원×300%=450만원

-상근 사무보조원 1인×100만원×300%=300만원

▽퇴직금 : 500만원

-상근 간사 1인×250만원×100%=250만원

-상근 사무원 1인×150만원×100%=150만원

-상근 사무보조원 1인×100만원×100%=100만원

○ 간접노무비

▽ 해당사항 없음

○ 전력비

▽ 해당사항 없음

○ 수도광열비

▽ 해당사항 없음

○ 운반비

▽ 해당사항 없음

---

결과고 신청농가에 대한 조사업무를 진행하고 조사보고서를 인증단체에 제출

- 감가상각비 : 658만원
  - ▽ 집기류 200만원\*4조\*20%=160만원
  - ▽ 컴퓨터 1조 200만원\*3조\*33%=198만원
  - ▽ 차량 2000만원\*15%=300만원
  
- 수리수선비 : 150만원
  - ▽ 컴퓨터 10만원\*3조=30만원
  - ▽ 차량수리 10만원\*12월=120만원
  
- 특허권사용료
  - ▽ 해당사항 없음
  
- 기술료
  - ▽ 해당사항 없음
  
- 지급수수료
  - ▽ 해당사항 없음
  
- 지급임차료 : 2,300만원
  - ▽ 사무실 임대료 5000만원 보증\*년10%이율=500만원
  - ▽ 사무실 임대료 150만원\*12월=1800만원
  
- 보험료 : 1,260만원
  - ▽ 건강보험 직원 3인\*35만원\*12월=1,260만원
  
- 복지후생비 : 108만원
  - ▽ 후생복리 (점심, 다과 등) : 108만원
  - 직원 3인\*3만원\*12월=108만원
  
- 도서인쇄비 : 44만원
  - ▽ 복사비용 2만원\*12월=24만원
  - ▽ 인증보고서 20만원/년=20만원

- 안전관리비
  - ▽ 해당사항 없음
- 소모품비 (인증조사) : 1,440만원
  - ▽ 전산/컴퓨터 소모품 80만원\*12월=960만원
  - ▽ 기타 사무소모품 40만원\*12월=480만원
- 통신비 (인증조사) : 96만원
  - ▽ 우편료 2만원\*12월=24만원
  - ▽ 전화 3만원\*12월=36만원
  - ▽ 팩스 3만원\*12월=36만원
- 기타 법정경비

### 일반관리비

- 임원보수 : 600만원
  - ▽ 비상근 대표 1인\*50만원\*12월=600만원
- 급료와 임금
  - ▽ 해당사항 없음
- 체수당 : 150만원
  - ▽ 비상근 대표 1인 50만원\*상여금 300%=150만원
- 복리후생비 : 240만원
  - ▽ 임원 1인\*20만원\*12월=240만원
- 퇴직금 : 50만원
  - ▽ 비상근 대표 1인\*50만원\*100%=50만원
- 여비 : 48만원



- ▽ 근거리 여비 1만원\*4회/월\*12월=48만원
- 교통비 : 144만원
  - ▽ 장거리 출장비 6만원\*2회/월\*12월=144만원
- 통신비 (인증심의 및 인증행정) : 144만원
  - ▽ 우편료 2만원\*12월=24만원
  - ▽ 전화 5만원\*12월=60만원
  - ▽ 팩스 5만원\*12월=60만원
- 수도광열비 : 204만원
  - ▽ 수도 3만원\*12월=36만원
  - ▽ 전기 4만원\*12월=48만원
  - ▽ 난방 20만원\*6월=120만원
- 세금과공과 : 84만원
  - ▽ TV수신료 등 2만원\*12월=24만원
  - ▽ 오물세 등 공과금 5만원\*12월=60만원
- 지급임차료
  - ▽ 해당사항 없음
- 감가상각비
  - ▽ 해당사항 없음
- 보험료 : 240만원
  - ▽ 자동차보험 20만원\*12월=240만원
- 차량유지비 : 360만원
  - ▽ 기름 20만원\*12월=240만원
  - ▽ 통행료 10만원\*12월=120만원
- 수선비

▽ 해당사항 없음

○ 보관비

▽ 해당사항 없음

○ 소모품비 : 340만원

▽ 사무용품 구입비 340만원/년

○ 교육훈련비 (인증업무 관련 전문강사 초빙교육) : 200만원

▽ 연수비용 2회/년 \* 50만원 = 100만원

▽ 연수비용 4회/년 \* 25만원 = 100만원

○ 지급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조사연구비

▽ 해당사항 없음

표17. 인증수수료 원가계산서 (단위: 만원)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 증 원 가 비	재 료 비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소계	-		
	노 무 비	직접노무비	18,600	59.7	
		간접노무비	-		
		소계	18,600	59.7	
	인 증 원 가 비	인 증 경 비	전력비	-	
			수도광열비	-	
			운반비	-	
			감가상각비	658	2.1
			수리수선비	150	0.5
			특허권사용료	-	
			기술료	-	
			지급수수료	-	
			지급임차료	2,300	7.4
			보험료	1,260	4.0
			복리후생비	108	0.3
			도서인쇄비	44	0.1
			안전관리비	-	
			소모품비	1,440	4.6
여비, 교통비, 통신비	96	0.3			
기타 법정경비	-				
소계	6,056	19.4			
일반관리비 (11.8)%		2,904	9.3		
이 윤 (13.0)%		3,593	11.5		
총 원 가		31,153	100		

\* 인증기간: 1년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인증신청수: 신규/연장 각 300건, 총 600건/년을 기준으로 계산

② 민간인증기관 운영 수입 (300건 신규인증 + 인증 연장 300건의 경우)

- 인증 수수료 : 30,000원/건 × 300건 = 9,000,000원
- 연장 수수료 : 15,000원/건 × 300건 = 4,500,000원
- 출장비(신규) : 100,000원/건 × 300건 = 30,000,000원
- 출장비(연장) : 100,000원/건 × 300건 = 30,000,000원

합 계 : 7,350만원

(즉 1건당 수입은 122,500원, 연간 신규300건 + 연장300건  
처리시에)

③ 수입 / 지출 대비 (300건 신규인증 + 인증 연장 300건의 경우)

연간 적자액: 인증수수료 31,153만원-7,350만원= -23,803만원

1건당 적자: 1건당 비용 519,216원-수입 122,500= -396,716원

○ 즉 396,716원의 적자를 향후에는 적정수준의 인증수수료 수준으로 인상 조  
치하여주기 위해서 정부는 신규 및 연장 인증수수료 상한액을 최고 45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음

-> 단, 분석(토양, 식물체, 수질)이 필요할 경우, 분석비용은 실비  
를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토록 함

○ 이러한 가정에서의 인증기관의 수지계산을 추산해 해보면 다음과 같음. 이  
경우 민간인증기관 운영 수입 (300건 신규인증 + 인증 연장 300건의 경우)과  
지출은

● 수입 : 27,000만원

▽ 인증수수료 수입

- 인증 수수료 : 450,000원/건×300건=13,500만원
- 연장 수수료 : 450,000원/건×300건=13,500만원

▽ 인증조사 및 출장비

- 인증조사 및 출장비(신규): 100,000원/건×300건=3,000만원
- 인증조사 및 출장비(연장): 100,000원/건×300건=3,000만원

합 계 : 33,000만원 (즉 1건당 수입은 65만원)

○ 이경우의 지출은 상기의 지출상태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수지계산을 다시 해보면 (신규인증 300건 + 인증 연장 300건의 경우)

추가흑자액/년 : 33,000만원-31,153만원=1,847만원

\*\* 이는 각 민간인증기관별로 연간 1,847만원의 추가흑자가 예상되는 수준의 인상수수료 인상액임 (단 300건 신규 및 연장 300건을 예상한 경우)

○ 이같은 추가흑자는 향후 ①국제인증기관으로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거나, ②인증유기농가(신청인)을 위한 교육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추가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위의 몇 가지 조건을 상정하고 계산한 수지계산임. 즉 1) 유럽, 미국, 캐나다와 같이 민간인증기관이 의무적으로 분석기기 및 설비를 갖추지 않도록 규정 개정, 2) 의심이 가는 분석비용은 해당 농가가 부담시키도록 조치, 3) 조사관이 인증기관의 상근고용직원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이해관계나 안면이 전혀없는 조사관이 투입되도록 하는 조치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임

- > 독일 등 유럽에는 유기조사관협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음, 이는 독립적 조사활동이 보장되도록 유도하는 결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음
- > 외부로부터의 조사관 계약을 통해 상근근무에서 비롯되는 고용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도 있음

○ 향후 정부는 상기조건을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인증수수료는 신규와 연장의 경우 최저 하한선 20만원 내지 최고 상한선 45만원으로 인상시킬 필요(평균 33만원)가 있음. 또한 인증조사 및 출장비용을 현행과 같은 실비수준에서 10만원을 부과를 계속 유지토록 허용함으로써, 흑자에 허덕이는 민간인증기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립화를 이룩하게 조치함으로써 활성화의 기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인증수수료의 이같은 최저 하한선 20만원 내지 최고 상한선 45만원(평균

33만원)의 인상은 제3자 민간인증기관의 출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인증기관으로의 도약적인 출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인증수수료는 유기농가간의 경지면적을 다소를 감안하여(즉, 대농인 경우와 소농인 경우를 감안), 다음과 같이 차등 부과케 하는 것도 소농 및 가족농 보호차원에서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평균 경지면적 수준인 1.3ha인 유기인증면적의 인증수수료 100%를 납부케 하고

-> 신청 인증면적이 1ha보다 적은 농가는 75%를 납부케 하며

-> 신청 인증면적이 2ha보다 많은 경우 150%를 납부토록 조치함

#### 14. 친환경농산물(친환경식품)과 유기농산물(유기식품)의 인증업무 분리

- 장기적으로 현행의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 인증체계는 분리되어야 함
  - >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인증마크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혼돈을 겪고 있음
  - > 많은 경우 소비자는 무농약재배가 유기재배보다 더 좋다고 믿거나 같다고 믿고 있음
- 별도의 법률(시행령) 규정을 마련하여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인증근거 또는 친환경식품과 유기식품의 인증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함
- 친환경농산물(친환경식품)과 유기농산물(유기식품)의 표시 로고는 별개로 마련하여 별도의 법률시행과 더불어 시행하는 것이 적절함.
- 중국의 경우 유기식품, 녹색식품, 무공해농산물은 각각 별도의 법률근거에 따라 인증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모든 縣(지자체)에서 일부 친환경농산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 일본의 대표적 민간인증기관의 하나인 AFAS<sup>20)</sup>측에서도 민간인증기관은 유기재배/ 전환기재배 인증부문을 담당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부문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식품의 인증은 지자체 단체장이 담당하고,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인증은 제3자 민간인증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중국의 경우 무공해농산물은 각 성, 시, 현 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인증수수료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비해 중국의 유기식품, 녹색식품은 별도의 인증기관이 담당하며 수수료를 받고 있음

---

20) 일본 민간인증기관 AFAS의 Dokue회장이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전문가로 “일본유기농산물 인증체계”에 대한 특강(2003년 9월)에서 밝힌바 있음

## 15. 인증의 범위 확대

○ 현행 시행령에서는 유기농산물 생산품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유기재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구분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미국, 독일, 영국 등과 같이 생산업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가공업자, 유통업자, 창고업자 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받아 유기인증의 경우 유기농산물, 유기식품을 가공하는 가공업자는 유기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인증을 획득한 후에 유기가공식품을 가공생산하도록 허용하고, 유기농산물, 유기식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자의 경우에도 인증을 획득한 후에야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유통을 담당하도록 허용하여야 함. 창고업자의 경우에도 인증을 획득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의 창고보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 무농약, 저농약 및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가공식품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인증을 획득한 후에야 생산, 가공, 유통, 보관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6. 트레이스어빌리티(생산이력정보제)의 도입에 의한 인증 개선책

### 1) 개념 및 유통네트워크

#### ○ 안전농산물 유통네트워크의 구축

- >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상세한 정부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정부가 부족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차별화한 문제발생시 추적 및 역추적을 통한 원인규명 및 수집 폐기를 통한 식품의 세이프 체인을 구축할 수 있음.
- > 유기식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통됨으로 우선적으로 도입 할 필요가 있음.
- >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매장에서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컴퓨터 화면에 언제, 누가, 어떻게 재배하였으며, 어떤 유통과정을 통해 언제부터 매장에 나와 있었는가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로 유기농산물, 유기식품의 인증체계와 유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 생산농가에까지 컴퓨터망이 잘 구축되어 기반여건은 아주 좋은 편  
이므로 “생산이력정보제”인 트레이스어빌리티를 도입하는 것에는 별반 문제가 없어 보임

#### ○ 품질판정기능에 의한 리스크 관리

- > 농산물의 출하관리를 생산재배이력과 연계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리스크의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비료, 농약 등의 사용기준에 대하여 농협 또는 작목반 등이 자유롭게 생산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농산물의 품질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리스크 축소가 가능함.
- > 또한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브랜드 효과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가능함. 즉 생산이력정보에 의한 영농작업의 의사결정, 일원적으로 관리된 생산이력, 품질정보에 근거한 영농지도의 충실, 생산자의 자기책임의식의 향상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고려한 장래 계획성

- > 롯데번호 발생에 의한 집출하 트레이스어빌리티의 확장(출하전표번호로

대응 가능), 청과물 판매시스템, 지도시스템 등과 같은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의한 확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

○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물류효율화

-> 신선채소의 이력유통시스템의 구축으로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부가적인 효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과 물류의 근본적인 효율화에 있음. 특히 유기농산물 생산이력정보제도 시스템의 도입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와 물류시스템의 대폭적인 효율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음.

○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이력정보제 확인체계 보급

-> 소비자가 원할 경우 소매상 또는 대형마트에서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생산이력정보를 스캐닝하여 즉시 생산자 정보, 생산과정, 운송과정, 보관과정 등에 관련한 제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보급함. 이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에게는 유기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 생산자와 유통상에게는 철저한 상품생산 및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임

2) 향후 과제 및 발전방안

○ 운영주체 및 경비부담

->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 출하단계, 가공단계, 판매단계별 주체가 밀접하게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함. 농산물의 경우, 산지단계에서는 산지영농지도 즉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가공식품에서는 제조메이커가 운영주체가 되는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공급전략을 담당하는 기관이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정보제공으로 인한 비용상승에 대한 부담은 도입초기에는 정체적으로 일정한 지원하에 유기농산물과 같은 도입효과가 큰 품목부터 순서대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농산물 수출시 요구되고 있는 트레이스어빌리티를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기관, 즉 농업인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일선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같은 농업 관련 기관이 연대하여 상호간에 역할분담을 한 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신속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신뢰성 확보

- > 무엇보다도 제공되는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트레이스어빌리티의 정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이를 위하여 운영주체는 생산단계에서는 참여농가에 대한 재배방법, 농약의 사용현황 등의 정기적인 체크를 할 수 있음. 또한 고령화된 농업인을 대신하여 운영주체가 직접 재배정보, 농약사용 등을 기록하고 입력하는 방법도 있음.
- > 그리고 거래처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제3의 기관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ISO와 같은 기관에서 공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또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양 검사, 잔류농약검사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V. 참고문헌

- 손상목 (1995): 주요 유럽 농업선진국들의 환경보전형 지속농업실태와 한국의 접근과제. 국제농업개발학회지 7:138-155
- 손상목, 김영호 (1995): 국제 유기농업 기본규약과 한국 유기농업 실천기술의 비교분석 연구 - 국제 유기농업 기본규약, 환경농업선진국 유기농업 단체 기본규약과 한국형 유기농업의 주요 실천기술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유기농업학회지 4(2):97-136
- 손상목 (1995): 외국의 농업환경 정책방향. 농림수산 환경정책과제에 관한 세미나. pp 119-142, 농림수산환경연구포럼. 중소기업회관 1995.4.18.
- 손상목 (1995): 세계화를 위한 한국 유기농업의 과제. 한국유기농업발전 정책 토론회. PP 25-64, 한국유기농업학회의 4개단체 공동주최. 서울프레스센터 1995.7.5
- 손상목 (1996): 유기농업에 대한 IFOAM 기본규약, EU 규정, FAO/WHO Codex 규격의 비교 분석. 농협중앙회 강당, 한국유기농업학회 1996년도 학술발표회, 1996.12.6
- 손상목, 정길생 (1997): 한국 환경농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술적 및 정책적 접근과제. 유기농업학회지 5(2):13-36
- Sohn,S.M. and Chung, K.S. (1997): Development, Issues and Prospects of Organic Agriculture in Korea.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5(2):71-84
- 손상목, 김영호, 윤지영 (1998): 국제 유기농업 기준제정의 동향과 핵심내용.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1998년도 추계 학술발표대회, 경희대학교, 1998.10.30

- 손상목 (2000): Codex 유기식품규격 내용과 한국 유기경종과 축산의 적응 실천. 한국유기농업학회지 8(3):17-34
- 손상목 (2001): 유럽 유기농업 현황과 유기경종의 이론 및 핵심기술. 친환경 작물생산기술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1년도 한국작물학회 심포지움. 한국작물학회지 46호 별책2호, pp34-58, 대호농어민교육복지센터, 2001/9/28
- Sohn, S.M. and Jung, J.Y. (2001): Government Policy, Implementation, Certification for Organic Farming in Korea. Proceedings of the 5th IFOAM-Asia Scientific Conference, PP54-57, China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IFOAM-Asia, 31 Oct - 4 Nov 2001, Hangzhou/ China
- 손상목 (2002): 유기농업의 핵심 기술내용, 현황 및 향후 유기농업 교육과 연구. 2002년 농업과학 심포지움, 「농업 R & D 자원의 조직화와 분야별 경쟁력 제고」, Pages 484,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한국농업과학협회, 대산농촌문화재단, PP436-463, 서울교육문화회관, 2002/2/20-21
- 손상목 (2002): 독일유기농업의 기본규약과 품질인증제, 기술제도 및 교육.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0(1):1-18
- 이광하 (2003):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http://www.rioa.or.kr/> 학술자료실/유기식품인증)
- 이광하 (2003): 미국의 인증제도와비교. 회의자료
- 이광하, 김준규, 서수철 (2003):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의 발전방향. 회의자료
- 이태근 (2003): 민간인증기관 경영분석. 회의자료

조달청 (2001): 정부원가계산 제도

정진영 (2003): 개인면담. 유기농업협회

조한규 (2003): 개인면담. 자연농업협회

한영숙 (2003): 국제유기식품 인증기관의 구조와 운영 및 분포. 졸업논문. 단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40pages

<http://www.rioa.or.kr>

<http://organic.usask.ca/ORC%20Updates/ORC%20Update%20April03.doc>.

<http://www.anseo.dankook.ac.kr/~ecnet/serve/db15-1.htm>

<http://www.anseo.dankook.ac.kr/~ecnet/serve/data.html>

<http://www.fibl.ch/english/publications/training-manual/pdf/2-2.pdf>

<http://www.ioas.org/ACB%20webpage.htm>

<http://www.ioas.org/pdfs/0307%20FR0503-65%20Applic%20pt3%20-information%202003.pdf>

<http://www.kfda.go.kr/>

<http://www.maf.go.kr/>

<http://www.nags.go.kr/>

[http://www.organic-europe.net/country\\_reports/switzerland/default.asp#3](http://www.organic-europe.net/country_reports/switzerland/default.asp#3)

## 참 고 자 료

### 참고자료 1. Codex유기식품규격의 부속서

#### - [3. 검사 및 인증제도의 최소검사 요건 및 예방조치] 부분을 일부발취-

1. 본 가이드라인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표시한 제품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실행방법을 실천하였음을 확인하기위해 식품유통체계의 전 과정에서 검사수단이 요구된다. 공인인증기관 및 위임기관과 정부당국은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책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적으로 검사기관은 검사계획 아래 수립된 모든 자료와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수검자는 당국 또는 위임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제3의기관이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 A. 생산단위

3. 유기생산의 포장단위, 생산지역, 저장시설 등은 본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는 타 구역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한다. 조제 및 포장작업장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제, 포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산단위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다.
4. 처음 검사하는 때에는 경영자와 공인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 저장, 생산 장소와 조제포장 또는 조제·포장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등 신청한 농장 또는 수집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야생식물을 채집하는 경우 생산자가 부속서1의 제10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3자에 의한 보증
  - 농장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실행수단이 본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확실히 준수하고 있다는 보증
  - 본 가이드라인 제4장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수단을 생산 토지 구획단위 또는 수집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짜
  - 본 가이드라인 제3장, 제4장의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작업을 수행할 것이며, 위반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 제6.9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아들인다는 약속
5. 경영자는 매년 재배포장(가축의 무리)의 분류에 따른 작물(가축)의 생산계획 일정을 공인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인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이 모든 원자재의 본성과 품질, 유래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경영자는 서면으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하는 모

든 농산물의 본성, 수량과 위탁판매자에 대하여도 기록하여야 한다.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물량은 일일 기본물량을 적절히 감안하여야 한다. 농장단위에서 농산물을 자체 조제하는 경우 붙임 B2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7. 경영자는 본 가이드라인 제4.1항의 (b)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투입재를 농장단위에서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8. 공인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은 최소 1년에 1번 농장전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품이 본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료는 금지물질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의심이 가는 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예고없는 불시확인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매번 방문후에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9. 경영자는 공인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이 검사를 위하여 회계장부 및 관련 보조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정보를 검사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10. 본 가이드라인 제1장의 규정에 의한 제품으로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때에는 본 가이드라인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물질이나 제품으로부터 내용물이 오염되거나 대체되지 않도록 수송하여야 하고, 다른 관련법의 규정 또한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품을 생산·조제한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 제품명
- 제품의 유기지위 등

11.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의 생산형태(병행재배)를 경영하는 자는 단위구역에서 생산하는 식물, 식물제품이 제1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도 위의 제 4, 6, 7항과 관련하여 검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위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농장단위에서 생산한 것과 구분할 수 없는 작물인 경우 그러한 작물을 동일 농장단위에서 생산하지 않아야 한다.

당국이 여러 가지형태의 생산금지기준을 완화하였다면, 위임기관은 완화지역에 대하여 생산형태, 주변환경을 특별히 조사하여야 한다. 불시방문으로 수확기간 동안 추가로 검사하거나, 서류를 확인하며, 혼합을 방지하기 위한 생산자의 의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장의 규정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까지 회원국은 비록 구분이 잘 되지 않아도 검사수단이 충분히 실행되고 있다면, 같은 종류를 병행 생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B. 조제와 포장구역

1. 생산자 및 경영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관련된 모든 작업의 전·후에 농산물의 조제·포장과 저장을 위하여 사용된 모든 시설을 나타내는 농장 구역전체의 설명

○ 단위구역에서 실시된 모든 수단들이 본 가이드라인의 규정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서류

생산단위 및 인증기관의 책임자는 서술한 내용과 서류에 서명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본 가이드라인 제4장의 규정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할 것과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본 가이드라인 제6.9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이행을 수락할 것을 경영자가 약속하여야 한다.

2. 기록된 서류는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이 추적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생산단위에 도착할 때 제1장의 규정을 준수한 농산물로서의 유래, 성질, 수량

○ 생산단위에서 반출할 때 본 가이드라인 제1장의 규정을 준수한 제품으로서의 성상, 수량 및 구매자에 관한 사항

○ 그 외 경영과정을 검사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이 요구하는 가공제품의 구성과 가공업체에 배달된 가공보조제, 첨가제, 다른 재료의 수량, 성상, 유래 등에 대한 기타 정보.

3. 본 가이드라인 제1장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제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공, 포장, 저장할 수 있다.

○ 작업과정의 전후에 있어 본 가이드라인 제1장에서 규정한 생산물을 저장하는 구역과 완전히 분리된 지역

○ 작업은 제품생산을 완료할 때까지 일관작업으로 하여야 하며, 본 가이드라인 제1장에서 규정한 제품의 생산이 아닌 유사한 작업으로부터 시간적,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 만약작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된다면, 그러한 사실을 인증기관 또는 위임기관과 합의한 만기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모든 계측은 룯드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본 가이드라인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생산물과의 혼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4. 공인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은 연1회 이상 농장전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료는 금지물질 사용하였을 것으로 의심이 가는 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예고 없는 불시확인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매 방문후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경영자는 공인인증기관 및 위임기관이 검사를 위하여 회계장부 및 관련 보조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정보를 검사기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6. 수송에 관한 사항은 본 부속서A. 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7. 본 가이드라인 제1장의 규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증명서에 관하여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한다.
  - o 필요한 경우 포장 및 컨테이너 마감일
  - o 본 부속서 A. 10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B. 2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명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본 가이드라인 제6장의 생산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제품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유기생산방법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 C. 수입

1. 수입국은 수입업자와 수입유기제품의 검사를 위하여 적합한 검사제도를 제정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2.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Codex가이드라인

### 1. 서론

일반적으로 코덱스(Codex) 또는 CAC(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로 불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1961년 FAO 총회 및 1962년 세계보건총회의 권고에 의해 1962년 FAO/WHO 합동식품규격프로그램(Joint/FAO/WHO Standards Programme)으로 설립된 정부간 기구이며, 2002년도 현재 회원국 수는 165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71년에 가입하였다. Codex는 라틴어로 법령(code), Alimentarius는 식품(food)을 의미하는 데 Codex Alimentarius는 식품법(food code)을 말하는 것이다. 즉,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규격기준을 포함하는 식품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Codex 기준 및 규격은 규격(Standard), 실행규범(Recommended Code of Practice: RCP) 및 지침(Guideline)이 있으며, 또한 농약 및 항생물질 등에 대한 최대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어 있다. 2002년 현재 214개 식품에 대한 규격, 47개 실행규범, 36개 지침이 설정되어 있다.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는 1990년부터 논의하여 왔으며, 이를 1999년의 제23차 총회에서는 식물분야에 2001년의 제24차 총회에서는 축산분야에 대하여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그 동안 Codex 기준 및 규격은 기본적으로 강제적인 성격이 아니라 각 국가에서 이의 적용여부를 수락(Accept)하여 자국의 식품관리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Recommend)하는 성격이었으나, WTO/SPS 협정 제3조(조화규정)에 따라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수역사무국(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OIE),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을 국제기구에서 설정한 기준, 지침 및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간에 이를 조화시켜야 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Codex의 기준·규격은 국가 간에 지켜야 하는 강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즉 통상 문제 발생시 각국은 자국의 식품관련 기준·규격을 Codex 기준 및 규격에 일치시키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위해평가를 기초로 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Codex 유기식품가이드라인』은 유기식품의 무역 또는 통상에서 국제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Codex 문서의 지위에 대한 Codex 총회의 결정을 보면 표준(Standards), 지침(Guidelines) 및 권고(Recommendations)를 구별하지 않으며, WTO회원국이 Codex의 위 문서를 적용하여야 하는 법률적 의무는 없으나, 위 문서를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문서의 종류보다는 그 실질적인 내용에 달려있다고 하여, 집행사회는 모든 규정에 있어서 권고와 강제의 의미상 차이는 WTO협정에 의하면 없는 것임을 각 Codex분과위원회에 통보하였다. Codex의 일반원칙분

과위원회는 상이한 종류의 Codex 문서 의도를 설명하는 적절한 선언적 (preambular) 기술문서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며, WTO/SPS위원회가 Codex문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모든 Codex Procedural manual과 지역규격을 제외한 Codex의 모든 합의된 문서는 국제규격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Codex문서의 중요성이 확인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 2.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의 내용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Codex가이드라인』은 서문과 본문 8장 및 부속서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1. 적용범위 2. 용어의 설명 및 정의 3. 표시 4. 생산규칙 5. 부속서2 허용물질 포함요건 및 국별 물질목록 작성기준, 6. 검사 및 인증제도, 7. 수입, 8. 가이드라인의 재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속서는 1. 유기생산의 원칙, 2. 유기식품 생산에 허용되는 물질, 3. 최소 검사요건 및 문제 예방조치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 가. 서문

서문에서는 유기식품의 생산, 표시에 관하여 합의된 요건을 제시하고자 하며, 가이드라인 제정의 목적은 ①시장에서 일어나는 기만, 사기행위, 또는 제품특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②비유기 농산물을 유기농산물인양 주장하는 행위로부터 유기농산물 생산자를 보호하며, ③생산, 준비, 저장, 운송,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단계가 본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게 하며, ④유기농산물의 생산, 인증, 식별, 표시에 관한 제반 규정에 조화를 유도하고, ⑤수입품과 관련하여 각국의 국내 체계가 국제 체계와 상충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유기식품 통제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⑥각국의 유기농업 체계를 지역적 및 범지구적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지,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부정직한 행위를 막기 위해 회원국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타국 제품에 대하여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타국도 자국 제품에 대해 같은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며, 가이드라인은 유기식품의 생산, 준비, 저장, 운송, 표시, 판매 단계에 적용되는 제반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토질 부양제, 토질 개선제, 병해충 방제제, 식품 첨가제, 가공 보조제의 적정 투입량을 제시하고 있다. 표시(라벨)에 유기농법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인증기관의 감독하에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기”라

는 말은 유기생산 기준에 맞추어 생산하였고 공식 인증기관이 인정한 제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용어이다. 유기농업은 합성비료와 살충제의 사용을 회피함으로써 외부 투입물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유기농업의 일차적 목표는 토양 생물, 식물, 동물, 인간이라고 하는 상호의존적 존재들의 건강과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데 있다. 유기농업은 생물의 다양화, 생물학적 순환의 원활화,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 촉진 등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증진, 향상시키려는 총체적 생산관리 체계이다. 유기농업은 지역 형편에 따라 현지 적용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농장 외부 물자의 투입보다는 관리 방법을 강조한다. 이에 부응하려면 가능한 한 합성물질 사용과 반대되는 재배 방법이나 생물학적,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체계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유기생산 체계는 다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 체계(system) 전체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증진한다. b)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을 촉진한다. c) 토양의 비옥도를 오래도록 유지한다. d) 동식물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 영양분을 대지에 되돌려 줌으로써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e) 현지 농업체계에서는 재생가능한 자원에 의존한다. f) 영농의 결과로 야기되는 모든 형태의 토양, 물,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토양, 물, 대기의 건강한 사용을 조장한다. g) 제품의 유기적 특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단계에서 가공 방법에 신중을 기하면서 농산물을 다룬다. h) 어느 농장이든 전환기간만 거치면 유기농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다.

전환기간은 농지의 이력, 작물/가축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농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소량의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산물은 기존의 유통경로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게 된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행위를 최소화하려면 유통업체와 가공업체를 효과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종제품보다 거래과정에 대한 규제에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유기생산의 원칙

### (1) 식물과 식물제품

가이드라인의 부속서에 규정된 유기생산의 원칙은, 농장(구획농장, 단위농장 포함)의 경우에는 파종에 앞서 최소한 2년의 전환기간, 목초나 영년작물의 경우에는 첫번째 수확까지 최소한 3년의 전환기간이 있어야 한다. 관할기관이나 인증기관은 농장사용 경력을 감안하여(예를 들어 2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전환기간을 가감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환기간은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환기간은 길이에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생산

농장이 검사 대상이 된 후 그리고 본 가이드라인의 생산규칙이 적용되기 시작한 후에 개시할 수 있다. 전체 농장이 한꺼번에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기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농장이 한꺼번에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작은 단위로 분할해야 한다. 유기농법으로 전환된 구역과 전환중인 구역에서는 유기농법과 관행농법을 번갈아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토양의 비옥도와 생물 활동은 ①두과작물, 녹비, 심근성 작물을 다년간 윤작 ②퇴비화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된 유기물질을 토양에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지, 증진시켜야 한다. 구비 등 축산업에서 나온 부산물 가운데 본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생산하는 축산농가에서 나온 부산물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부속서에 규정된 허용물질이라도 작물의 영양공급이나 토질 개선이 정해진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하고, 구비는 유기농장에서 구할 수 없을 경우에만 사용한다. 또한, 미생물이나 식물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여 퇴비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돌가루 (stone meal), 구비, 식물성분으로 만든 생물 활성제(biodynamic preparations)를 토양의 비옥도와 생물활동의 유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병해충이나 잡초는 다음 방법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억제하도록 한다.

- 알맞는 작목과 품종을 선택
- 적절한 윤작
- 기계적인 경운
- 울타리, 보급자리 등을 제공하여 해충 천적을 보호
- 생태계를 다양화.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침식을 막는 완충지대, 농경삼림, 윤작 작물 등을 사용
- 화염을 사용한 제초
- 포식생물이나 기생동물의 방사
- 돌가루, 구비, 식물성분으로 만든 생물 활성제 사용
- 멀칭이나 예취
- 동물의 방사
- 덧, 울타리, 빛, 소리 등 기계적인 수단을 사용
- 수증기 살균(토질의 갱신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작물에 위협이 임박하거나 심각하며, 위의 병해충 및 잡초의 억제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부속서에서 규정한 허용물질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종자나 종묘는 적어도 1세대를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재배한 작물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영년생 작물의 경우에는 2번의 생육기간을 지나야 종자의 1세대를 경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와 같이 처리되지 않은 종자나 종묘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물질이나 다른 물질로 처리된 종자나 종

묘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삼림이나 농업지역 등에서 채집한 자생 식용식물이나 그 일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유기생산물로 간주할 수 있다.

○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검사/인증의 대상으로 뚜렷이 구분된 지역에서 채집

○ 채집지역이 채집 전 3년 동안 허용물질 이외의 다른 물질로는 처리되지 않아야 함

○ 채집 지역 내 자생환경의 안정이 침해받지 않고 종의 유지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채집

○ 같은 제품의 수확, 채집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수집했고, 이 사업자는 신원이 확실하며 채집 지역을 두루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함

## (2) 가축 및 가축 제품

유기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가축은 유기농장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육, 관리해야 한다. 가축은 토양 비옥도를 유지, 개선하며, 방목시에 초지의 식물군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농장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높이고 보완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농장 시스템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으로 유기농장의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가축 생산은 대지와 관련된 활동이므로 초식 가축은 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가축은 야외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전통적인 영농 시스템이 초지 접근을 제약할 경우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가축의 생리 상태, 기상 조건, 대지 상태에 문제가 없고 가축의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가축 밀도는 지역의 사료생산 능력, 가축의 건강, 영양 균형,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한다. 유기축산은 자연번식 방법을 사용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질병을 억제하고, 항생제를 포함하는 화학약품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배제하며, 동물성 사료 예를 들면 고기가루와 같은 육분(肉粉)의 공급을 줄이고 가축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가축 농장에서는 ‘전환기’ 사료 포함하여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생산된 사료를 100% 공급해 주어야 한다. 축산물이 유기상태를 유지하려면 반추동물 사료는 건물중을 기준으로 85%이상, 비반추동물 사료는 80% 이상이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된 유기사료이어야 한다. 농장운영자가 관할기관이나 공인 검사/인증 기관에 위와 같이 유기사료를 100% 공급하여야 하는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료를 확보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예측이 불가능한 심각한 천재, 인재, 일기변화 등인 때는 관할기관이나 공인 검사/인증 기관은 한정된 기간 동안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되지

않은 사료를 일정 비율로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가축은 따뜻한 배려, 책임감, 애정을 가지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번식방법은 유기축산 원칙을 따르되 다음을 고려하여 정한다. 현지 조건과 유기 체계 하에 사육하기 적합한 품종과 계통을 고른다.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가 권장되지만 인공수정도 할 수 있다. 수정란 이식기법이나 번식 호르몬 처리기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유전공학을 사용한 번식기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유기축산 체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면양의 꼬리에 접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뿔 자르기 같은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서 가축의 안전, 건강, 복지 개선에 필요할 경우 이들 가운데 어린 가축의 뿔 자르기 등은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적절한 연령에서 실시하되 경우에 따라 마취를 하는 등으로 가축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전통적인 생산방법인 거세 수소, 거세 토끼 등의 거세가 허용되나 이와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육 조건/환경은 가축의 행동양식을 고려하여 관리하되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다른 가축(특히 유사 품종)과의 어울림, 비정상적인 행동, 부상, 질병 예방 조치, 화재, 필수장비 손상, 필수품 부족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생축의 수송은 부상, 스트레스, 고통 없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할기관은 수송 조건과 수송 시간 한도를 정해야 한다. 가축을 수송할 때에는 전기적 자극이나 안정제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가축의 도살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가축이 야외에서 살 수 있는 기후조건을 가진 지역에서는 축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축사는 사료와 음용수 접근의 용이성, 공기, 먼지, 온습도, 가스가 가축 건강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단열, 냉난방, 환기 시설, 신선한 공기와 자연광의 충분한 공급 다음을 갖추어 가축의 생물학적 욕구와 행동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축은 기후조건이 나쁘거나 건강, 안전, 복지가 위협을 받을 수 있거나 식물, 토양, 수질 보호가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가두어 사육할 수 있다. 축사의 가축밀도 조건은 가축의 품종, 계통, 연령에 걸맞는 편안함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 욕구가 고려되어야 하고, 일어서기, 눕기, 회전하기, 몸 손질하기, 기지개 켜기, 날갯짓 등 모든 자연스런 동작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축사, 우리, 장비, 용기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하여 교차 감염이나 질병 운반체의 증식을 억제한다. 방목지, 노천지, 운동공간은 지역 기후조건과 품종 특성에 맞추어 비바람, 햇빛, 극한 온도로부터 보호한다. 야외(자연·반자연 서식지 등)에서 기르는 가축의 밀도는 토질 악화와 목초의 과도한 섭취를 피할 수 있을 만큼 낮아야 한다.



### (3) 제품의 취급, 저장, 운송, 가공, 포장

유기제품은 가공단계에서도 원래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제작업 및 첨가제, 가공 보조제의 사용을 제한하고 성분의 특성에 맞는 가공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방사선 조사는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 등으로 유기제품에 사용할 수 없다. 해충의 관리통제는 ①해충의 서식처를 파괴, 제거하고 해충이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봉쇄하는 등의 예방적 방법이 해충관리의 일차적인 수단이 되며, ②예방적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하고, ③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관할기관이 허용하는 다른 물질을 사용한다. 단, 취급, 저장, 운송, 가공 시설에서 이들을 사용하는 것을 관할기관이 허용하고 이들이 유기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해충의 발생은 효율적인 생산방법을 사용하여 막아야 한다. 저장소나 운송용기의 경우에는 격벽을 사용하거나 소리, 초음파, 빛, 덩(페르몬 또는 미끼를 사용하는 것), 온도, 기체(탄산가스, 산소, 질소 등), 규조토 등을 사용하여 해충을 막는다. 수확 후의 처리나 검역을 위해 허용되지 않은 살충제를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된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제품의 유기적 특성을 파괴할 수 있다.

가공에는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발효, 훈증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비농산 물질이나 첨가제의 사용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포장재는 생물분해성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거나, 재활용 재질로 만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을 저장, 운송, 취급할 때는 원래의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유기제품과 비유기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유기제품이 유기제품의 생산과 취급에서 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이 안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품 가운데 일부만 인증되는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지 않은 제품을 별도로 저장, 취급하고 두 가지가 뚜렷이 구별되게 한다. 유기제품을 벌크(bulk)로 저장할 때는 관행 제품과 별도로 저장하고 표시도 분명히 한다. 유기제품 저장소와 운송용기는 유기생산에서 허용되는 방법과 재료로 청소한다. 전적으로 유기제품만을 저장하는 장소나 용기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에 앞서 허용되지 않은 살충제나 처리제의 오염을 막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유기식품 생산에 허용되는 물질

토양의 비옥화, 토질개선, 병해충 방제, 가축의 건강, 축산물의 질, 식품의 준비·보존·저장을 위하여 유기체계에서 사용하는 물질은 모두 각 국가에서 규정한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허용물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이 사용

빈도, 목적 등에 대한 사용조건을 정할 수도 있으며,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허용된 물질이라도 오염될 수 있고, 토양이나 농장의 생태계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도록 한다.

#### 라. 최소 검사요건 및 예방조치

유기 표시를 한 제품이 기준에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면 생산과정 전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검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검사원이 모든 기록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사업장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대상 사업자는 검사원이 사업장을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또 제삼자의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1) 생산 구역

유기제품은 생산장소와 저장시설이 비유기 제품과 뚜렷이 분리된 구역에서 생산해야 한다. 생산구역에는 준비나 포장에 사용되는 장소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장소에서는 해당구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준비, 포장해야 한다. 검사를 개시할 때 사업자와 인증기관은 생산구역 및 수거지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 야생식물을 수거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생산자가 제삼자의 보증서를 첨부, 각 생산구역에서 실제로 취하는 조치,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해당농지나 수거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처리한 날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규정된 처벌을 받아들인다는 사업자의 약속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해야 한다.

유기농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매년 인증기관이 정한 날짜 이전에 인증기관에 작물생산 스케줄을 통보하며, 스케줄은 단위 농지별로 나누어 작성하고, 구입한 원료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그 출처, 특성, 수량, 용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판매한 농산물의 특성, 수량, 수취인에 대한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것은 매일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구역에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는 해당구역용 장부에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큰 가축은 개별적으로, 작은 포유동물이나 가금은 군체로, 벌은 벌통으로 구분해 놓아야 한다. 가축과 벌 군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유지해야 하며, 늘 상세하고 업데이트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최소한 1년에 한번씩 생산구역 전체에 대해 물리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허용되지 않는 제품이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곳에서는 시험용으로 해당 제품의 견본을 수집할 수 있다. 생산구역을 방문한 다음에는 항

상 검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또한 필요에 따라 또는 불시에 생산구역을 방문하기도 해야 한다. 사업자는 인증기관이 검사를 위하여 장부나 증빙서류를 살펴보는 것과 저장/생산구역이나 단위농지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사업자는 검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검사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가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개의 생산구역을 운영할 경우, 즉 유기농업과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작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다른 작물도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기농산물 생산구역에서 생산되는 작물과 구별이 어려운 종류는 이들 생산구역에서 생산하지 말아야 한다. 유기가축 사육을 위해서는 한 농장 안의 모든 가축을 규정에 따라 사육해야 한다.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육하지 않은 가축도 유기농장에 둘 수는 있지만 유기 사육한 가축과 뚜렷하게 분리해 놓아야 한다. 가축 생산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도 내에서 생산의 모든 단계와 소비자에 대한 판매 준비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검사를 통해 가축 생산으로부터 처리과정을 거쳐 최종 포장 및 라벨 부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축 및 가축제품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2) 준비 및 포장 구역

유기식품 사업자는 해당 구역에서 관련작업 전후에 농산물의 준비, 포장, 저장에 사용되는 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명, 단위구역에서 실제로 취하는 조치를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보고서에 규정에 따라 운영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규정된 조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업자의 약속을 담아 검사원과 사업자 상호간에 서명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작성·보관하여, 인증기관이 해당구역에 반입된 농산물의 출처, 특성, 수량 및 해당구역을 떠난 제품의 특성, 수량, 수취인과 해당 구역에 반입된 원료, 첨가제, 생산 보조제의 출처·특성·수량, 가공제품의 성분 등 운영과정을 검사하는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참고자료 3.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과정의 주요 관리사항

#### 1. 작물의 재배관리

친환경농산물 재배포장은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는 재배포장의 토양개량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투입하는 유기물 등으로부터 재배포장의 토양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재배포장의 토양은 염류 및 중금속 함량 등 그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직전 토양검정시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유기 및 전환기유기농산물 재배시는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의한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의 지력을 유지·증진시켜야 한다.

#### 2. 비료의 사용

작물 재배시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유기 및 전환기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축산분뇨를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이하 “축분비료”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축분비료의 과다 사용, 유실·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기사료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와 수의약품에 주로 의존하는 공장형농장(Factory Farming)에서 생산되는 축분비료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3 이하를 가급적 사용하여야 하며, 저농약농산물 생산시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2이하를 가급적 사용하여야 한다.

#### 3. 잡초방제

잡초의 방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윤작, 파종밀도 및 파종시기의 조절, 파종전의 경운, 기계적 작업의 경운, 객토, 동물 및 천적을 이용한 제초, 열처리를 비롯한 온도조절 등에 의한 물리적인 제초방법과 비닐멀칭에 의한 방법들이 있으며, 유기·전환기유기·무농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재배포장은 물론 재배포장의 주변에서도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과수재

배에서는 초생재배 등으로 토양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 4. 병해충 방제

친환경농업에서는 토양관리를 통하여 작물을 튼튼하게 키움으로써 병·해충의 침입을 예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예방이나 방제를 위한 방법으로 저항성 품종의 선택,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윤작, 병해충의 저항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작물체 육성을 위한 균형시비, 포장내의 혼작·간작, 공생식물의 재배 등으로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등의 방법 강구하여야 한다. 병해충의 방제를 위해 허용된 자재일 지라도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5. 저장과 수송 관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업자는 유통과정에서 생산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 수송 등 유통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유통업자 및 생산자는 친환경농산물의 저장장소 및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고,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으로 일반농산물에 의한 혼합을 방지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산물을 보관·저장·수송하면서 품위유지 및 병해충 방제 등을 목적으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병해충방제 및 식품보존 등을 위하여 방사선조사를 할 수 없다.

#### 6. 포장재

친환경농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자재가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과 접촉하는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포장재로 사용할 수 없다.

#### 7. 생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유기·무농약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에서 기인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기·무농약농산물 생산 농가는 대기, 수질, 토양 또는 이웃한 포

장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오염을 방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유기·전환기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에 대하여 농약잔류는 허용하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이 생산자의 의도적인 살포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허용하되,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이웃 관행농업의 재배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 구입한 유기질비료 및 기타 재배포장에 투입하는 자재 등에 의한 오염

#### 참고자료 4.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종류 및 사용자제

친환경농산물의 종류(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는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4종류로 분류하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포장의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질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재 및 물질의 종류는 농림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으로는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와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로 구분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 및 전환기유기농산물 생산자재를 농림산물과 축산물로 구분하며 농림산물에서는 ①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와 ②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로 나누고 있다. 축산물에서는 ①유기배합사료 제조용 자재중 단미사료 ②유기배합사료 제조용 자재중 보조사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재로는 관행농업에서 사용되는 토양개량자재 및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3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로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로 규정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저농약농산물 생산의 경우는 사용이 가능한 자재로 무농약농산물과 같이 화학비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용량은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2이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배과정에서 유기합성농약의 살포 횟수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의 2분의 1 이하이어야 하며,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확 3일 전까지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수확 6일전까지 사용하도록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초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므로 사용을 완전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유기농업에 사용이 허용된 자재라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유기농업을 국제적인 기준이 Codex 가이드라인의 규정과는 달리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시급히 개선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 또는 유기농업의 본질이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Codex의 기준과 같이 가

능한 한 외부의 투입자재를 줄이고, 농업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유기농장 또는 친환경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거나,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유기농업에 사용이 가능한 주요 친환경농업자재 64종류에 대하여는 2002년 11월 농촌진흥청에서 자재별 특징, 사용시 주의사항, 적정사용기준 등 표준사용방법을 지도지침을 마련한바 있다.



## 참고자료 5. 綠色식품표준 (GFDC)

### 一. 녹색식품개념

#### 1. 녹색식품

綠色食品이란 전문기관에서 인증하고 녹색식품표지 사용을 허용한 안전하고 오염이 없는 양질 영양식품을 말한다.

#### 2. AA급 녹색식품

AA급 녹색식품이란 生態環境質量이 規定標準에 부합되는 產地로서 생산과정 중에서 그 어떤 有害 化學合成物質을 사용하지 않고 특정한 生産操作 規程에 따라 생산, 가공, 產品質量 및 포장 檢測, 검사하여 特定標準에 부합되고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고 AA급녹색식품표지 사용을 허용 받은 식품을 가리켜 말한다.

#### 3. A급 녹색식품

A급 녹색식품이란 生態環境質量이 規定標準에 부합되는 產地로서 생산과정 중에서 일정한 량의 제한된 化學合成物質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특정한 生産操作規程에 따라 생산, 가공하고 產品質量 과 포장이 檢測, 검사하여 特定標準에 부합되고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아 A급녹색식품표지 사용을 허용 받은 식품을 가리켜 말한다.

### 二. 녹색식품分級표준

#### (一) 녹색식품표준구성

녹색식품표준에는 생산조작규정, 산품표준, 포장표준, 저장과운수표준 및 기타상관표준이 포함되어 하나의 완전한 질량공제표준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녹색식품산지의 生態환경질량표준이란 농업초급산품 혹은 식품주요 원료 생장구

역내에 공업기업의 직접적인 오염이 없고 水域상류내, 上風口에 오염위협을 구성하는 오염원이 없으며 그 구역의 대기, 토양질량 및 관개용수, 양식용수 질량이 모두 녹색식품대기표준, 녹색식품토양표준, 녹색식품수질표준에 부합되어야 하고 또 체계적인 보증조치가 있어 그 구역이 금후의 생산과정중에서 환경질량이 하강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녹색식품 생산조작규정에는 종식업, 목축업, 양식업, 식품가공업의 매개 환질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범 시스템 및 농약, 비료, 식품첨가제, 사료첨가제, 수의약 사용원칙 등이 포함된다.

녹색식품 산품표준은 국제, 국가, 부문, 항업표준을 참조하여 제정하며 일반적으로 현행 표준보다 높거나 같으며 어떤 것은 검측항목을 증가하였다. 녹색식품 산품표준에는 질량과 위생표준 두 개 부분이 포함되는데 그중 위생표준에는 농약잔류, 유해중금속 오염과 유해미생물오염이 포함된다.

녹색식품 산품 포장, 장식은 반드시 <녹색식품표지설계표준수책>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녹색식품표지사용자격을 취득한 단위는 반드시 녹색식품표지를 산품포장 내외에 사용해야 한다. <녹색식품표지설계표준수책>은 녹색식품표지의 표준도형, 표준글체, 도형과 글체의 규범조합, 표준색, 광고용어 및 식품계렬화포장에 쓰이는 표준도형, 번호편성규범 등에 대하여 모두 엄격한 규정을 정하였고 동시에 응용사례를 열거하였다.

녹색식품과 유사한 외국의 유관식품표준을 참조한 기초상에서 우리나라 국정에 결합하여 우리나라는 녹색식품을 AA급과 A급 두가지 류형으로 나누었다.

## (二) AA급 녹색식품표준

### 1. 환경질량표준

녹색식품대기환경질량표준평가는 국가대기환경질량표준 GB3095-82에서 열거한 1급 표준을 채용한다. 논밭 관개용수평가는 국가 논밭 관개 수질표준 GB 5084-92를 채용하고 양식용수 평가는 국가어업수질표준 GB 11607-89를 채용하며 가공용수질 평가는 생활용 수질표준 GB 5749-85를 채용하고 가축가금 용수평가는 국가지면수질표준 GB

3838-88에서 열거한 3류표준을 채용하며 토양평가는 그 토양류형배경치의 산수평균치에 2배표준차를 가한다. AA급녹색식품산지의 각항환경검측수치는 모두 유관표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 2. 생산조작규정

AA급녹색식품은 생산과정중에서 그 어떤 유해화학합성비료, 화학농약 및 화학합성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평가표준은 <녹색식품생산 농약사용준칙>, <녹색식품생산 비료사용준칙> 및 유관지구의 <녹색식품생산조작규정>의 상응한 조령를 채용한다.

## 3. 산품표준

AA급녹색식품에서는 각종 화학합성농약 및 합성식품 첨가제가 모두 검출되지 말아야 하며 기타 지표는 반드시 농업부 A급녹색식품 산품항업표준에 도달하여야 한다.(NY/T268-95 로부터 NY/T292-95 까지)

## 4. 포장표준

AA급녹색식품포장평가는 유관포장재료의 국가표준, 국가식품표식통용 표준 GB 7718-94 및 농업부에서 반포한 <녹색식품표지설계표준수책> 및 기타 유관규정을 채용한다. 녹색식품표지와 글체는 녹색이고 밑색은 백색으로 한다.

### (三) A급 녹색식품표준

#### 1. 환경질량표준

A급녹색식품환경질량평가표준은 AA급녹색식품과 같다. 하지만 평가방법은 종합오염지수법을 채용하고 녹색식품산지의 대기, 토양과 물등 각항환경검측지표는 모두 1를 초과하지 못한다.

## 2. 생산조작규정

A급녹색식품은 생산과정중에서 제정한 화학합성물질을 일정한 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그 평가표준은 <녹색식품생산 농약사용준칙>, <녹색식품생산 비료사용준칙> 및 유관지구의 <녹색식품생산조작규정>의 상응한 조려를 채용한다.

## 3. 산품표준

농업부 A급녹색식품 산품항업표준 (NY/T268-95 로부터 NY/T292-95 까지)를 채용한다.

## 4. 포장표준

A급녹색식품포장평가는 유관포장재료의 국가표준, 국가식품표식통용 표준 GB 7718-94 및 농업부에서 반포한 <녹색식품표지설계표준수책> 및 기타 유관규정을 채용한다. 녹색식품표지와 글체는 녹색이고 밑색은 백색으로 한다.

## 三 녹색식품산지 생태환경질량표준

### (一) 생태환경질량표준

1. 대기환경질량표준 표3-1
2. 논밭 관개수질표준 표 3-2
3. 어업수질표준 표 3-3
4. 가축가금 飲用 수질표준 표3-4
5. 가공용수 질량표준 표 3-5
6. 토양질량표준 3-6, 3-7
7. 생태환경평가 표준

(1) AA급표준: 대기, 수질, 토양의 각항 검측수치가 모두 유관표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2) A급표준: 대기, 수질, 토양의 종합오염지수가 모두 1를 초과하지 못한다.

## (二) 샘플과 검측방법

본 표준에서의 샘플과 검측방법은 <녹색식품산지환경질량현황평가강요>(시행)중의 유관규정을 집행한다.

## 四. 녹색식품생산조작규정

녹색식품생산조작과정표준에는 농약, 비료, 식품첨가제, 獸藥(수의약)과 사료첨가제 사용준칙 및 이룬준칙에 근거하여 화남, 화북, 화동, 서남, 화북, 동북, 서북등 7개 기후 구역에 따라 제정한 매종 산품의 생산조작규정이 포함된다. 그중 부분적 준칙은 아직도 제정돼 있지 않으며 각 기후구역의 녹색식품생산조작규정은 별도로 인쇄한다.

### (一) 綠色食品生産에서의 肥料使用準則

#### 1. 綠色食品生産에서 사용할 수 있는 肥料種類

(1) 農家肥料: 농가비료란 生物物質, 動植物殘體, 排泄物, 生物廢物 等 物質을 대량으로 含有하고 있는 비료를 말한다.

(2) 商品肥料: 商品肥料에는 商品有機肥料, 腐植酸類肥料, 微生物肥料 등이 포함된다.

① 商品有機肥料: 대량의 生物物質, 動植物殘體, 排泄物, 生物廢物 等 物質을 原料로 하여 加工해 만든 商品肥料를 말한다.

② 腐植酸類肥料: 초탄등 부식산류물질을 함유한 비료를 말한다.

③ 微生物肥料: 특정한 미생물균종으로 배양생산한 활성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 제제를 말한다. 여기에는 근류균비료, 질소고정균비료, 린 세균비료, 규산염세균비료, 복합미생물비료등이 포함된다.

④ 유기복합비료: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을 혼합 혹은 화학제작한 비료

⑤ 무기비료: 광물질을 물리 혹은 화학 공업방식으로 제작하고 양분이 무기염 형태로 있는 비료

⑥ 잎면비료: 식물의 잎에 분무하여 흡수이용 될수 있는 비료. 잎면비료에는 화학합성한 성장조절제가 있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미량원소비료, 식물생장보조물질비료 등이 포함된다.

(3) 기타비료: 합성첨가제를 함유하지 않은 식품과 방직공업의 有機 副產品, 그리고 防腐劑를 포함하지 않은 물고기, 소양털廢物, 골분, 아미노산잔여물, 가축가공廢物등 유기물로 만들어 진 비료를 말한다.

## 2) 肥料 使用準則

비료사용은 반드시 충족한 량의 유기물질을 토양에 반환함으로써 土壤肥力과 土壤生物活性을 보존 혹은 증가하여야 한다. 모든 유기 혹은 무기비료, 특히 질소를 많이 함유한 비료는 반드시 환경과 작물에 불량한 後果를 產生하지 않는 使用 方法이어야 한다.

### (1) AA級 綠色食品 肥料使用 準則

① 본 표준에서 규정한 肥料種類만 선택하여 사용해야 하며 기타 화학합성비료를 사용하는것을 금지한다.

② 有害한 도시 쓰레기와 오염된 흙을 사용하지 못한다. 병원의 분변 쓰레기와 유해물질을 함유한 공업쓰레기는 일률로 녹색식품을 생산하는 비료로 하지못한다.

③ 作物植株등을 토양에 반환 혹은 묻는다.

④ 綠肥를 생산하여 사용한다.

⑤ 無害化 요구에 도달한 腐熟 된 人糞과 家畜糞尿를 사용한다. 畝間비료의 최종 사용시기는 수확전 20일이다.

⑥ 미생물 비료는 拌種하거나 基肥 또는 追肥로 사용할 수 있다.

## (2) A級 綠色食品 肥料使用 準則

① 될수록 본 표준에서 규정한 肥料種類를 사용해야 한다. 綠色食品생산에서 꼭 필요하다면 生産基地에서 제한된 량의 부분적 化學合成肥料를 사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窒酸態 질소 비료는 절대 사용하지 못한다.

② 화학비료는 반드시 유기비료와 배합하여 사용해야 하며 유기질소와 무기질소의 비는 1:1이고 최종 追肥는 반드시 수확 30일前에 진행해야 한다.

③ 화학비료는 유기비료, 미생물비료와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 追肥는 반드시 수확 30일前에 진행해야 한다.

④ 도시 생활쓰레기는 無害化 처리를 하여 그 質量이 國家標準에 到達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3) 기타 규정

(1) 綠色食品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농가비료는 그 어떤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든지 반드시 高溫醱酵를 하여 各種 寄生蟲卵과 病原菌, 雜草種子를 죽이고 有害有機酸과 有害氣體를 제거하여 無害化 위생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농가비료는 원칙상에서 當地에서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商品肥料와 新型의 肥料는 반드시 국가 유관부문의 登錄認證과 生産許可를 받은 것이 여야 한다.

(2) 비료 사용으로 하여 土壤, 水源汚染, 혹은 농작물 생장에 영향을 주거나 農產品이 衛生標準에 도달하지 못 할 경우 이런 비료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또 국가 녹색식품발전중심과 성 녹색식품사무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二) 綠色食品生産에서의 農藥使用準則

### 1) 綠色食品生産에서 사용할 수 있는 農藥種類

(1) 生物源 農藥: 生物生體 혹은 生物代謝과정에서 產生된 生物活性物質 혹은 生物體에서 추출한 물질로 病蟲草害를 防治하는 農藥을 말한다.

(2) 微生物源 農藥: 農用抗生藥, 活體 微生物 農藥

(3) 動物源 農藥

(4) 植物源 農藥

(5) 鑛物源 農藥

### 2) 農藥使用準則

#### (1) AA級 綠色食品 農藥使用 準則

① 植物源 살충제, 살균제, 增效劑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② 寄生性, 捕食性 天敵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③ 해충을 잡는 기구에 곤충외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④ 鑛物油乳劑와 植物油乳劑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⑤ 鑛物源 農藥 중에서 硫制劑, 銅制劑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⑥ 제한된 量의 活體微生物農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 진균제제, 세균제제, 병독제제, 방선균, 곤충병원선충등

⑦ 제한된 量의 農用抗生藥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⑧ 有機合成 化學殺蟲劑, 殺菌劑, 除草劑와 植物生長調節劑를 使用하는 것을 嚴禁한다.

⑨ 生物源 農藥 속에 有機合成農藥을 混合하여 만든 各種 製劑를 사용하지 못한다.

#### (2) A級 綠色食品 農藥使用 準則

① 植物源 農藥, 動物源 農藥, 微生物源 農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② 鑛物源 農藥 중에서 硫制劑, 銅制劑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③ 劇毒, 高毒, 高殘留 農藥(혹은 암, 기형, 돌연변이 등을 초래하는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嚴禁한다.

④ 綠色食品생산에서 확실히 필요하다면 生産基地에서 일정한 정도의 부분적 有機合成化學 農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반드시 國家 綠色食品發展中心에서 提示한 農藥을 規定된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a. 반드시 國家 綠色食品發展中心에서 제시한 저독성 농약 혹은 개별적인 중등 독성 농약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國家 綠色食品發展中心에서 提示하지 않은 農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國家 綠色食品發展中心에 보고하여 심사비준 받아야 한다.

b. 유기합성농약이 농산품중의 최종잔류를 엄격히 장악해야 하며 국제상의 최저잔류 제한량표준 혹은 국가표준의 1/2를 채용한다.

c. 최후 농약사용시기는 國家 綠色食品發展中心에서 提示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d. 매종 유기합성농약은 한 개 작물의 생장기간내에 한번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e. 유기합성화학농약을 혼합하여 만든 각종 생물원 농약을 사용할 때 혼합하는 화학농약은 반드시 國家 綠色食品發展中心에서 提示한 농약만을 사용해야 한다.

f. 각종 유전공학 미생물제제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 참고자료 6. 중국 녹색 식품 협회 장정

### 1장 총칙

제 1조 본 협회 중국어 명칭은 <중국녹색식품협회>>이고, 영문명칭은 <China Green Food Association>, 영문 약자는 CGFA이다.

제 2조 본 협회는 우리 나라에서 녹색식품관리, 과학연구, 교육, 생산, 저장과 운수, 판매, 자문 등 활동에 종사는 단위나 개인이 자원적으로 구성된 전국성 비영업성인 사회단체이다.

제 3조 본 협회는 국가 헌법, 법률, 법규와 국사정책 및 사회도덕 규율을 준수하고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녹색식품 사어 발전을 촉진하는데 전력한다.

녹색식품개발의 횡적 경제 연계를 추동하고 녹색 식품 과학연구, 생산, 저장, 운수, 판매, 감측등 방면의 관계를 협조(協調)하며 녹색식품사업의 이론 연구, 인원배양, 사회감독, 정보자문, 과학기술 보급과 복무를 조직하고 정부와 녹색식품식품기업과 사업단위 지간의 교량이 되어 녹색 식품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 수평을 개선 재고하여 신품수출과 외화수입을 증강하여 우리 나라 사회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데 공헌한다.

제 4조 본 협회 업무 주관 단위는 농업부이고 등기 관리 기관은 민정부이며 민정부에서 업무지도와 감독관리를 맡아야 한다.

제 5조 본 협회의 사업 지점은 북경시에 설치한다.

### 제 2장 업무범위

제 6조 본 협회의 업무 범위

- (1) 녹색식품발전에 관한 상관이론을 연구 검토하며 정부 관계 부분에서 녹색식품발전계획과 유관 정책을 제정하는데 참고 의견을 제공한다.
- (2) 녹색식품에 관한 조사 연구를 조직하며 국내외 녹색 식품과 상관 산품에 대한 과학 연구, 생산, 판매 정황과 정보를 요해하고 장악하고 녹색 식품 생산 경영 기업에서 새 기술과 국외 선진 설비를 인입하는데 자문을 제공한다.
- (3) 녹색식품에 관한 국내외 학술 교류와 과학 고찰을 전개한다.
- (4) 녹색식품 새 생산품, 새 공예, 새 기술, 새 포장에 관한 연구와 유상 기술이전을 조직하며 기술자문, 보급과 과학기술 보급등 복무 활동을 전개한다.
- (5) 녹색식품관리부분을 협동하여 연합으로 녹색식품 기술업무 훈련반을 꾸리고 녹색식품 관리 인원의 관리 수평과 생산 기업 인원의 기술 수평을 제고 한다.
- (6) 녹색 식품 생산, 경영, 과학 연구 등 단위들을 조직하여 다채로운 형식, 여러면의 과학분야 간의 학습, 고찰, 교류와 선전 전시 판매 활동을 전개한다.
- (7) 녹색 식품 관리 부분을 협조(協助)하여 녹색 식품 표준을 수정, 제정하여 사회 감독 관리를 가강하고 녹색 식품 지식 소속권을 보호한다

(8) 정부 유관 부분에 회원 단위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며 회원 단위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한다.

### 제 3장 회원

제 7조 본 협회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 회원 2가지 종류로 나눈다.

제 8조 본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본 협회의 장정을 옹호한다.
- (2) 본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 (3) 본 협회 업무 영역내에서 일정한 영향이 있어야 한다.

제 9조 회원 입회 절차

- (1) 입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이사회에서 토론하여 통과한다.
- (3) 이사회 혹은 이사회에서 권한을 수여한 기관에서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 10조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다.

- (1) 본 협회의 선거권, 피선거권과 표결권이 있다.
- (2) 본 협회 활동에 참가 할 수 있다.
- (3) 본 협회의 서비스를 받을 우선권이 있다.
- (4) 본 협회의 사업에 대해 비평 건의권과 감독권이 있다.
- (5) 자원적으로 협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또 탈퇴할 자유가 있다.

제 11조 회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본 협회의 결의를 집행해야 한다.
- (2) 본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 (3) 본 협회에서 맡겨준 사업을 완성해야 한다.
- (4) 규정대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5) 본 협회에 정황을 반영하고 유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6) 사회에 녹색 식품 지식을 선전해야 한다.

제 12조 회원은 탈퇴할 때 본 협회에 서면 통지 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교납해야 한다.

회원이 만일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본 협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자원 탈퇴도 간주 한다.

제 13조 회원이 만일 본 장정을 엄중히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이사회 혹은 상무 이사회에서 표결 통과하여 제명한다.

## 제 4장 조직 기구와 책임자 산생 및 파면(罷免)

제 14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 기구는 회원 대표 대회이고 회원 대표 대회의 직책은 아래와 같다.

- (1) 장정을 제정하고 수정한다.
- (2) 이사를 선거하고 파면한다.
- (3) 이사의 사업 보고서와 재무 보고를 심의한다.
- (4) 종지(終止) 사항을 결정한다.
-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15조 회원 대표 대회는 반드시 2/5이상의 회원이 출석해야 개최할 수 있고 결의는 참가한 회원이 반수 이상 표결 통과해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조 회원 대표 대회는 매 4년 마다 개최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앞당기거나 연기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에서 표결 통과한 후 주관기관에서 심사하고 사회 등기 관리 기관에서 비준 동의 해야 한다.

하지만 연기 시간 최고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17조 이사회는 회원 대표대회의 집행 기구이며 폐회기간 본 협회가 일상 사무를 전개하는 것을 협조하고 회원 대표 대회에 대해 책임진다.

제 18조 이사회의 직책은 아래와 같다.

-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 (2) 회장· 부회장· 비서장을 선거하고 파면한다.
- (3) 회원 대표 대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 (4) 회원 대표 대회에 사업과 재무 정황을 보고한다.
- (5) 회원을 흡수하고 제명한다.
- (6) 사무기구, 대표기구와 실체기구 등 설립을 결정한다.
- (7) 부비서장, 각 기구의 주요 책임 인원 초빙을 결정한다.
- (8) 본 협회 각 기구를 영도하여 사업을 전개 한다.
- (9) 내무 관리 제도를 제정한다.
-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19조 이사회는 반드시 2/3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개최할 수 있고 결의는 반드시 출석한 이사들이 2/3이상 표결 통과해야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제 20조 이사회는 매 2년마다 적어도 한번은 개최해야 하며 정황이 특수할 경우 통신형식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조 본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 사회에서 선거 발생하고 이사회 폐회기간 제 18조 제 1,3,5,6,7,8,9항의 직권을 행사하여 이사회대해 책임진다.

제 22조 상무이사회는 반드시 2/3이상의 상무 이사가 출석해야 개최할 수 있고 결의는 반드시 출석한 상무이사들이 2/3이상 표결 통과해야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제 23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매년 한번씩 개최하며 정황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신형식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4조 본 협회의 회장, 부회장, 비서장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 소질이 좋아야 한다.
- (2) 본 협회 업무 영역내에서 비교적 큰 영향이 있어야 한다.
- (3) 회장, 부회장, 비서장 최고 임기 연령은 70주세를 초과하지 못하며 비서장은 전직으로 한다.
- (4) 신체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견지 할 수 있어야 한다.
- (5) 정치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분이 없어야 한다.
-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25조 본 협회 회장, 부회장, 비서장이 만일 임직 최고 연령을 초과 했을 경우 반드시 이사회에서 표결 통과해야 하며 업무주관기관에서 심사한 후 사회 단체 등기 관리 기관에서 비준해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6조 본 협회 회장, 부회장, 비서장 임기는 4년이다. 회장, 부회장, 비서장 임기는 최고로 2기를 련임 하지 못하며 특수 상황에서 임기를 연장해야 할 경우 반드시 회원 대표 대회 2/3 이상 회원 대표들이 표결 통과해야 하고 업무 주관 기관에서 심사한 후 사회단체 등기 관리 기관에서 비준 동의해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조 본 협회 법정 대표인은 회장이다.

본 협회 법정대표는 기타 단체의 법정 대표인을 맡지 않는다.

제 28조 본 협회 회장은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1) 이사회(혹은 상무이사회)를 소집 주최한다.
- (2) 회원 대표대회, 이사회(혹은 상무이사회) 결의 사항을 검사한다.
- (3) 본 협회를 대표하여 유관 중요한 문건에 싸인한다.

제 29조 본 협회 비서장은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1) 사무 기관의 일상 사업을 주최하고 연도 사업 계획을 조직 실시한다.
- (2) 각 분기기관, 대표기관, 사법 실체기관을 협조(協調)하여 사업을 전개한다.
- (3) 부 비서장과 각 사무기관, 분기 기관, 대표기관 및 사업 실체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 혹은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 참고자료 7. 중국 유기식품 표준 (OFDC)

### 유기(천연)식품표준 (중국 환경보호국 유기식품발전중심,1995)

#### 제1장 총칙

**제1조.** 유기식품표지의 수여사업을 잘 진행하고 그 상품의 질을 보증하고 식품생산자, 가공업자, 판매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상품질량법”, “중화인민공화국상품질량인증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항을 규정한다.

**제2조.** 유기식품은 유기식품증서를 발급하는 기구의 인증을 받고 “유기식품생산과 가공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되는 농부산물, 즉 곡물, 납새, 과일, 차잎, 축산물, 야생천연식물 및 그 가공생산품을 가리킨다. 유기식품의 표지는 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 운수, 판매 등 과정이 “유기식품생산과 가공기술규범”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전문용 표식이며 식품의 상표와 함께 쓰일 수 있다.

**제3조.** 국가환경보호국 유기식품발전중심(이하 유기식품발전중심으로 약함)은 유기식품의 표지와 유기식품증서의 심사와 관리, 표지사용에 대한 감독 등을 책임지며 정기적으로 사회에 유기식품표지의 식품 목록을 공포한다.

**제4조.** 유기식품발전중심에 유기식품표지사용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2장 신청, 심사와 허가

**제5조.** 유기식품표지를 신청하려면 유기식품발전중심에 “유기식품표지신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하다.

1. 영업허가증 혹은 등록증
2. 생산품 집행 표준
3. 상표등록증.

가공업회사는 그 외에 오염물 처리 정황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유기식품발전중심은 신청을 접수 한 후 15일 내로 심사를 하고 회답을 주어야 한다. 농가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촌민위원회나 향 급 정부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제7조.** 유기식품발전중심은 신청을 접수한 후 “유기식품생산가공기술규범”에 근거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심사는 일반적으로 3-6개월이며 유기식품생산전환과정의 생산품은 그 심사기간이 1-2년이다.

**제8조.** 신청인은 심사기간에 적극적으로 심사사업에 협조를 주어야 하며 정확하게 상관 자료들을 만들어 실제 상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생산, 가공, 저장, 운수 등 현장 검사를 받아야 하며 원 자료추적 심사와 생산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심사를 진행하여 “유기식품생산과 가공기술규범”에 부합되는 생산품은 유기식품생산발전중심에서 “유기식품증서”를 발급하며 유기식품표지를 사용하게 한다.

“유기식품생산과 가공기술규범”에 부합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 신청인에게 서면 상으로 통지를 한다.

### 제3장. 표지사용과 감독

**제10조.** “유기식품증서”는 유기식품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증명서이며 유효기간이 1년이다.

**제11조.** “유기식품증서” 소유자는 (아래 소유자라고 약) 유기식품의 상표, 포장, 광고, 설명서 등에 유기식품표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유기식품 표지 도안은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 통일적으로 만들어 제공한다.

증서소유자는 유기식품 표지 사용 시 수요에 의하여 동일한 비례로 확대하거나 축소 할 있으나 변형시키거나 색깔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제13조.** 유기식품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지 아래에 생산품의 증서번호를 적어 넣을 수 있다.

**제14조.** 증서소유자는 증서에 적혀진 상품에만 유기식품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표지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유기식품증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유효기가 되기 3개월 전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며 유기식품 발전중심에서는 유효기가 되기 전에 서면 상 회답을 주어야 하며 유효기가 지난 후에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기식품 표지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 “유기식품증서”의 유효기 내에 아래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 1.증서 소유인이 변경되는 경우
- 2.생산품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3. 생산품 명칭을 변경되는 경우
- 4.새로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제17조.**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는 유기식품 표지 사용과 생산품의 질량에 대하여 추적 심사, 감독을 하여 사용자가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유기식품생산과 가공기술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생산품은 “유기식품증서”를 몰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증서소유자는 유기식품발전중심의 감독과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유기식품발전중심의 요구에 근거하여 장부를 건립하고 생산, 가공, 판매 등 자료를 심사 받아 한다.

### 제4장 신고

**제19조.** 아래 상황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나 소비자는 국가환경보호국에 신고를 야 한다.

- 1.생산품이 신청요구에 부합되거나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 2.유기식품증서를 몰수하는데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 3.규정에 따라 돈을 받지 않은 경우
- 4.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20조.** 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는 요구와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국가환경보호국에서는 조사를 거쳐 증거를 얻고 심사를 거친 후 3개월 내로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2조.** 신고 시 필요한 비용은 실제에 따라서 책임자가 내야 한다.

### 제5장 벌칙

**제23조.** 열립 수를 쓰거나 다른 부정당한 수단을 통하여 “유기식품증서”를 얻은 경우에는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 그 증서를 몰수한다.

**제24조.** 본 규칙의 제12조를 위반하여 인위적으로 표지의 색깔을 변경하거나 표지를 엄중하게 손상을 하였을 경우 혹은 제13조를 위반하는 경우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 그 사용 기한을 변경하거나 또는 불량한 결과를 초래 한 경우에는 증서를 몰수한다.

**제25조.** 본 규칙의 제 14조,15조,1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 “유기식품증서”를 몰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상품질량인증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벌금을 한다.

**제26조.** 가짜 “유기식품증서”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 현 급 이상의 공상관리부문에 보고하여 행위자로 하여 사용을 정지하고 손실을 배상하며 정절이 엄중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한다.

## 제6장 부가

**제27조.** 유기식품증서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비용을 바쳐야 하며 그 비용은 비영리적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용은 국가 물가국의 표준에 근거한다. 재정부 9356문건의 “생산품질인증비용관리실행방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증서신청금액은 신청 비용, 분석검사비용, 검사 인원이 사용하게 되는 각종 비용 등이 포함되며 신청자는 신청되지 못해도 반드시 신청 금을 납부해야 한다.

1)신청 비는 잠시 200원(생산자), 400원(가공업자) 으로 결정 되어 있다.

2)분석검사 비용은 측정하는 항목의 다소에 의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인 검사 표준은 우선 적에 의해서 거둔다.

3)검사 인원의 각종 비용은 국가에서 규정된 표준에 따라 거두며 잠시 50원으로 결정하였다.

(2) 허가를 받은 후 증서를 받는 값으로 2000원을 납부한다.

(3) 유기식품표지관리생산품 판매의 0.5%-1%를 납부한다.

**제28조.** 본 규칙은 유기식품발전중심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9조.** 유기식품표지 사용 관리규칙은 공상행정부문의 규정에 따라 따로 제정한다.

**제30조.** 본 규칙은 허가한 날부터 효과를 발생한다.



## 참고자료 8.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조사에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현재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인증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환경보전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공정거래 실현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독립적인 인증단체로의 발전을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인증기관의 설립도 필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합니다.

본 설문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들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며 다른 어떠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유기농업과 인증업무의 발전을 위해 한 문항씩 천천히 살펴시고 해당되는 번호에 정확히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현행되고 있는 인증업무 및 그 인증기관에 대한 귀하의 의견도 남겨 주시면 본 연구에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유기농업연구소

전화: 041-550-3633, 팩스: 041-568-363

홈페이지 <http://www.rioa.or.kr>



※ 다음은 민간인증기관 활성화에 관한 설문내용입니다.

문항1.

원활한 인증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인증단체 및 관련기관은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인력은? ( )

문항2.

민간인증단체 및 관련기관은 충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인증업무실적 또한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문항3.

귀하가 현재 민간인증업무관련 연구나 실무에 종사하신다면, 현행 인증기관의 인증업무가 많은 애로사항에 직면한다고 보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느끼시는 애로사항은(구체적으로)? ( )

문항4.

현행되고 있는 민간인증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 )

문항5.

현행 민간인증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 )

계속☞

문항6.

민간인증단체 및 관련기관은 엄격하고 차별화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설기자재를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그렇다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시설기자재는?

( )

문항7.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위한 건당 30,000원의 인증수수료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수수료는(건당)? ( )

문항8.

보다 엄격하고 차별화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3자(민간)품질인증기관 및 단체의 활성화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문항9.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농식품인증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고양시키고 수입유기식품 및 가공품에 대한 독립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위한 국제인증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문항10.

인증업무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위원회 인증위원의 엄격한 선정뿐만 아니라 그 후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그렇다면 품질인증위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자격요건은? 예)박사학위소지자+관련실무경력 10년 또는 15년 이상

( )

계속

문항11.

정확한 현장판단능력을 갖춘 인증 조사관의 양성뿐만 아니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그렇다면 인증조사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자격요건은? 예) 학사학위소지자+현장경력 2년 이상인자, 석사학위소지자+현장경력 2년 이상인자

( )

\*\* 귀하께서는 단국대학교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마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설문대상 2 : 소비자단체 및 친환경농산물 담당자

※ 다음은 설문에 응하시는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나 답을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만      세)

2.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3.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중학교 졸업이하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전문대 졸업
- ④ 대학졸업(학사)
- ⑤ 대학졸업(석사)이상

4. 귀하의 직업은?

- ① 전업주부
- ② 제조업
- ③ 상업
- ④ 서비스업
- ⑤ 기타

5. 귀하의 월평균소득은?

- ① 100만원 이하
- ② 100~150만원
- ③ 150~200만원
- ④ 200~300만원
- ⑤ 300만원 이상

계속☞

※ 다음은 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에 관한 설문내용입니다.

문항1.

민간인증단체 및 관련기관은 충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인증업무실적 또한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문항2.

현행되고 있는 민간인증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문항3.

현행 민간인증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 )

문항4.

현재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민간인증을 위한 건당 30,000원의 인증수수료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수수료는(건당)? ( )

문항5.

보다 엄격하고 차별화된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3자(민간)인증기관 및 단체의 활성화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문항6.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품인증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고양시키고 수입유기식품 및 가공품에 대한 독립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위한 국제인증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문항7.

인증업무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위원회 인증위원의 엄격한 선정뿐 만 아니라 그 후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그렇다면 품질인증위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자격요건은? 예)박사학위소지자+관련실무 경력 10년 또는 15년이상

( )

문항8.

정확한 현장판단능력을 갖춘 인증 조사관의 양성뿐만 아니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그렇다면 인증조사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자격요건은? 예) 학사학위소지자+현장경력 2년 이상인자, 석사학위소지자+현장경력 2년 이상인자

( )

문항9.

국가공공기관의 인증업무가 완전히 민간인증기관(단체)로 위탁된다면 인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에 대한 구매도와 신뢰도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그렇다면 귀하의 구매욕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는(구체적으로)?

( )

\*\* 귀하께서는 단국대학교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마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설문대상 3 : 농민

※ 다음은 설문에 응하시는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나 답을 기입해주시길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만      세)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중학교 졸업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 졸업      ④ 4년제 대학졸업 이상

4. 귀하의 영농형태는?

① 유기재배 ② 무농약재배 ③ 저농약재배 ④ 일반관행재배

5. 귀하께서 획득하신 품질인증표시는 무엇입니까?

① 유기재배 ② 무농약재배 ③ 저농약재배 ④ 친환경재배

5. 귀하의 영농규모는? (논      평, 밭      평)

6. 귀하의 주 재배작목은?

① 수도작(벼)  
② 밭농사  
③ 시설재배  
④ 기타 특수작목 또는 축산

7. 귀댁의 연 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1,500만원  
③ 1,500만원~2,000만원  
④ 2,000만원~3,000만원  
⑤ 3,000만원 이상

※ 다음은 민간인증기관 활성화에 관한 설문내용입니다.

문항1.

귀하는 친환경농산물과유기농산물 인증제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문항2.

귀하는 현행 민간인증제도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문항3.

현행되고 있는 민간인증제도는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 )

문항4.

민간인증기준 및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문항5.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증기관 및 단체의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문항6.

보다 엄격하고 차별화된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3자(민간)인증기관의 활성화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문항7.

현재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 민간인증을 위한 건당 30,000원의 인증수수료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적정수수료는(건당)?( )

계속☞

문항8.

생산농산물의 가격경쟁력우위확보를 위해서라면 더 비싼 인증수수료를 기꺼이 납부 하시겠습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문항9.

민간인증기관의 조사관과의 대면 시 강한 신뢰감을 느끼십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문항10.

정확한 현장판단능력을 갖춘 인증조사관의 양성뿐만 아니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아주 그렇다

그렇다면 인증조사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자격요건은? 예) 학사학위소지자+현장경력 2년 이상인자, 석사학위소지자+현장경력 2년 이상인자

( )

\*\* 귀하께서는 단국대학교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마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